발 간 등 록 번 호

보건의료관계법규   (2011.10.28)

2013.1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의료법
1. 의료법
2. 의료법 시행령
3. 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역법
1. 검역법
2. 검역법 시행령
3. 검역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2. 지역보건법시행령
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
2.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1. 혈액관리법
2. 혈액관리법 시행령
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1. 의료법
2. 의료법 시행령
3.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5호, 2011.6.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2009.1.30>

⑤ 삭제<2009.1.30>

⑥ 삭제<2009.1.30>

⑦ 삭제<2009.1.30>

⑧ 삭제<2009.1.30>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⑥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9.1.30>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

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7>

[본조신설 2010.5.27]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30>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0조(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공제사업) ①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0.1.18>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09.1.30>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1.30]
[법률 제9386호(2009.1.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4조 삭제 <2009.1.30>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7.23]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

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09.12.31>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0.7.23>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9조(의료지도원)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7장 분쟁의 조정

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제71조(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관할) ①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73조(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4조(사실 조사 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75조(조정조사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76조(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386호(2009.1.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8조(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79조(한지 의료인)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개정 2009.1.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3조(경비 보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0.7.23>

1.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3.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5.27]

[종전 제88조의2는 제88조의3으로 이동 <2010.5.27>]

제88조의3(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88조의2에서 이동 <2010.5.27>]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

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9.12.31]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30>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09.1.30, 2010.1.18>

제93조 삭제 <2009.1.30>

부칙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

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9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51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35호,2008.10.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06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5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25호,2010.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7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부칙 <제1056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65호,2011.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9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제10785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한다.

③ 생략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1.2.14]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2.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4.20>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행하도록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면허증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뜻과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한다.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시작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共濟) 업무 및 보상 업무와 그 밖에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업무
2. 그 밖에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개

정 2008.2.29, 2010.3.15>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 내용의 변경) ①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개정 2011.1.24]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31조의2(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31조의3(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31조의4(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그 외의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回附)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 심사 및 내용 검토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제36조(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7조(신청서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인 경우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8조(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반려 등을 한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3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보고) 시·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10.3.15>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4.20]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0, 2010.3.15>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4.20]

부칙 <제20292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8호,2009.4.2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22667호,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별표 1] <개정 2009.4.20>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 200 이하	15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187,500
5	300 초과 ~ 400 이하	225,000

6	400 초과 ~ 500 이하	287,500
7	500 초과 ~ 600 이하	325,000
8	600 초과 ~ 700 이하	35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375,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40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425,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437,5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45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462,5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475,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487,5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5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512,5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525,000
20	9,000 초과	537,500

[별표 2] <신설 2009.4.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1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70
나. 조산사, 간호사		50
다.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20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
3. 의료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300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50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2호	
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0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다.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30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5.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100
6.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4호	100
7.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5호	100
8.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3호	300
9. 의료법인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4호	50
1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00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00050호, 2011.4.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2호의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간 분만 실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9>

제4조(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개정 2009.4.29>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면허증 재발급)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제7조(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등록증명 수수료 : 5백원

②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2010.3.19>

④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개정 2010.3.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면허증의 반환)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4.29]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병발증(竝發症)의 발생 가능 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망진단서 등)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내주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 연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2.13]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의료인은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4.29]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개정 2010.3.19>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7(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8(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등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9>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2009.4.29, 2010.3.19>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가정간호)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9>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삭제<2010.1.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9.5>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삭제<2010.1.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9.5>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29>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9.5>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9]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9>

③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④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 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9>

제39조(급식관리) 법 제36조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 :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

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별표 8과 같다.<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09.4.29, 2010.12.30>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종합병원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7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 신청의 이유 및 취지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신청인은 해당 심의기관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 구할 수 있다.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2009.4.29>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취임승낙서

② 삭제<2008.9.5>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29, 2010.9.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법인해산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①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대표자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36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 사유 발생서
2. 분쟁 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71조(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 등) ① 법 제75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조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조사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제72조(보고서식) 시·도지사는 영 제41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분기마다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73조(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5조를 준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이사회 회의록"을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3.19>

1.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하되, 인구·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허가지역에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僻地), 오지(奧地) 또는 도서(島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지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 희망지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시·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5장

② 삭제<2008.9.5>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①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4.29]

부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 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제3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호,200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호,2009.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2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0.3.19>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간호사 국가시험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2. 시험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표 2]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

시험 절차 및 형태 / 내용 / 직종	1차 시험(필기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
	시 험 과 목	평 가 내 용
의 사	가. 의학의 기초(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병리, 주요 증상 및 소견, 진찰과 검사, 건강증진·질병예방, 보건의료관리) 나. 한국어	병력청취, 신체질환,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basic technical skill)
치 과 의 사	가. 치의학의 기초(구강악안면의 구조와 발생, 성장, 기능 및 대사, 병력청취 및 진찰, 구강악안면 부위의 영상, 기능, 병리검사, 구강악안면질환, 형태이상의 진단과 치료, 치과 생체재료의 이해, 공중구강보건과 구강질환의 예방과 교육, 한국치과의료의 이해) 나. 한국어	병력청취, 신체질환,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basic technical skill)
한 의 사	가. 한의학의 기초(인체의 구조, 기능 및 대사, 질병의 발생과 변화, 진찰, 검사 및 변증, 치료기법 및 재료, 한국한의학의 이해) 나. 한국어	병력청취, 신체질환,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학약재관리, 기본 기술적 수기(basic technical skill)

2. 시험방법 등

가. 예비시험의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필기시험,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이 경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나. 1차 시험 중 한국어 과목의 시험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이하 "한국어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자는 한국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한국어시험기관이 발행한 한국어 과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어 과목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는 출신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예비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어 과목에서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나. 예비시험의 2차 시험 합격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 기준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0.1.29>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별표 2의3] <신설 2010.12.1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지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1.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해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
3. 임상시험 지원	○ 「약사법」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약사법 시행규

	칙」 제31조제3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非臨床試驗: 동물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 등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제품 설명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수입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과 국외 훈련(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 또는 사용방법의 변경 등의 경우가 아니면 반복된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

	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사업자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가.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2.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3.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 "거래가 있은 날"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6. 시판 후 조사	○ 「약사법」 제32조, 같은 법 제42조제4항 및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다만, 희귀질환, 장

	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한다) 이하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 이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한다.
7. 기타	○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별표 3] <개정 2010.1.29>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 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0.3.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

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 <개정 2010.1.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환산함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별표 5의2] <신설 2010.1.29>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병 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비고: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1.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檢食)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檢食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8. 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9.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삭제 <2009.4.29>

[별표 8] <신설 2010.1.29>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의료기관 종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종합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병원	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병원: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2)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및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병원 : 구강내과 2) 외과, 성형외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및 치과보존과 3) 소아청소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 소아치과
한방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한방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또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4) 1)에서 3)까지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한방병원: 구강내과 2) 한방소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소아치과
치과병원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치과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또는 치과보존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성형외과 및 정신과 3) 구강내과 또는 소아치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및 소아청소년과 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치과병원: 한방내과, 침구과 2) 소아치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소아과
요양병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
비고: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료과목을 "치과"로 표시한다.	

2.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방요법실을 갖출 수 있다.

2)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방병원·치과병원에 추가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수술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3)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4)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복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양병원에 추가로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2) 관련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의료인 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3조의2제2항 관련)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가. 인증마크의 도안



나. 도안 요령



1)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필름에 의한 투사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의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되어야 한다.

3)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며, 신문·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1) 인증마크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단색도 적용형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마크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인증마크는 Vector Type(*.ai)의 컴퓨터 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

다.

나. 인증마크의 표시 예

의료기관 인증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한다.

<표시 예 1>







<표시 예 2>







<표시 예 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2">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
<tr><td>의료기관의 명칭</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r>
<tr><td>수습생 정원 신청 인원</td><td colspan="2"></td></tr>
<tr><td>수습 시작 예정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위와 같이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성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3">※ 구비서류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td></tr>
</table>

210mm×297mm[신문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 면허증

1. 성 명:	사진 (3cm×4cm)
2. 생 년 월 일:	
3. 근 거:	



「의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 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면허등록대장

작성		담당	

면 허 번 호		면허연월일		사진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 허 근 거	. . . . 졸업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관련 면허 (자 격)	종 류	번 호	취득연월일	시험합격일	합격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사항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5">면허등록대장 □ 정 정
□ 면허증 갱신 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 rowspan="3">사진
(3cm×4cm)</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td></tr>
<tr><td colspan="2">면허종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면허번호</td><td colspan="4">제 호</td></tr>
<tr><td colspan="2">변경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등록 사항(□정정 □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1. 면허증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가로 3cm 세로 4cm)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3.19> (앞쪽)

<table>
<tr><td colspan="6">(　　)면허 재발급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3">사진
(3㎝×4㎝)</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우송주소</td><td colspan="3">□□□ - □□□</td></tr>
<tr><td>면허증
자격증</td><td>종류</td><td></td><td>번호</td><td></td><td>연월일</td><td></td></tr>
<tr><td colspan="2">신청 사유
(해당 사유에 ○표시)</td><td colspan="2">잃어버림,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름 바뀜, 헐어 못씀, 그 밖의 (　)</td><td>수령방법
(○표시)</td><td>우송(　)
직접 인수(　)</td></tr>
<tr><td colspan="7">「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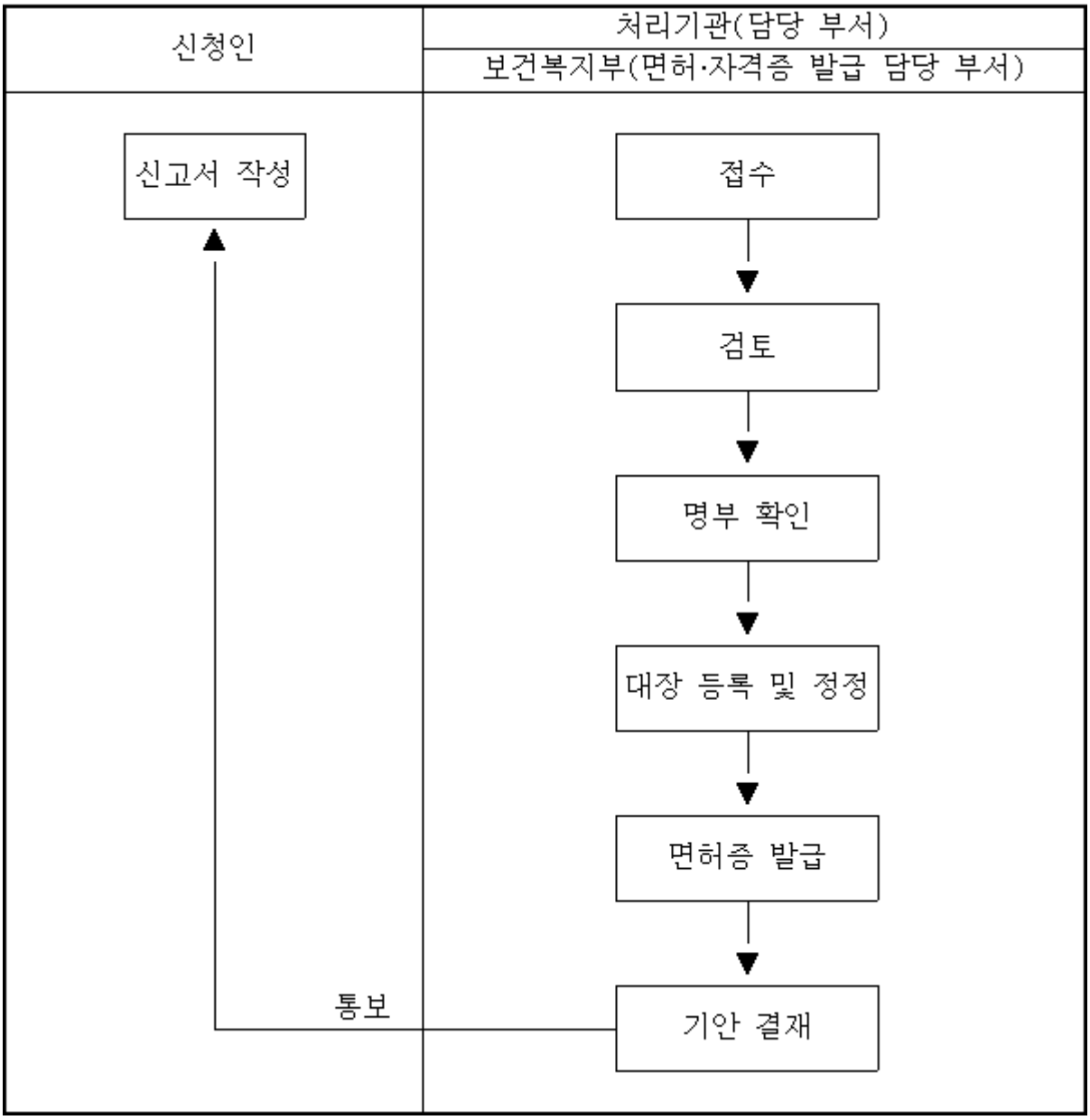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td><td>수수료
면허자격별
수입인지: 2,000원</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7>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 ]남[ ]여
③주민등록번호	-	④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등록 기준지					
⑦ 주 소					
⑧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⑨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⑩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사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 ] 타살 [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서비스사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table>
<tr><td colspan="11">출생증명서</td></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출생아의 부모</td><td>부</td><td>성명</td><td></td><td>연령</td><td colspan="3">년 월 일생(만 세)</td><td>직업</td><td></td></tr>
<tr><td>모</td><td>성명</td><td></td><td>연령</td><td colspan="3">년 월 일생(만 세)</td><td>직업</td><td></td></tr>
<tr><td>2</td><td>산모의 주소</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출생 장소</td><td colspan="9">번지</td></tr>
<tr><td colspan="9">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기타( )</td></tr>
<tr><td>4</td><td>출생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따름)</td><td rowspan="2">출생아</td><td>성별</td><td colspan="3">남 · 여 · 불상</td></tr>
<tr><td>5</td><td>임신기간</td><td colspan="3">주</td><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6</td><td rowspan="2">다태(多胎)</td><td rowspan="2">① 2태
② 3태
③ 태</td><td>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이 출생아의 출산 순위</td><td colspan="5">① 제1아 ③ 제3아
② 제2아 ④ 제4아</td></tr>
<tr><td>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td><td colspan="5">출생 인(남 인,여 인)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td></tr>
<tr><td>7</td><td>산모의 산아 수</td><td colspan="9">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td></tr>
<tr><td>8</td><td>출생아의 신체 상황</td><td colspan="3"></td><td colspan="2">몸무게</td><td colspan="3">□.□□kg</td></tr>
<tr><td>9</td><td>출생아의 건강 상황</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11">위와 같이 증명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table>
<tr><td colspan="11">사산(사태) 증명서
No. _____</td></tr>
<tr><td rowspan="2">1</td><td rowspan="2">사산아의 부모</td><td>부</td><td>성명</td><td></td><td>연령</td><td colspan="3">년 월 일생(만 세)</td><td>직업</td><td></td></tr>
<tr><td>모</td><td>성명</td><td></td><td>연령</td><td colspan="3">년 월 일생(만 세)</td><td>직업</td><td></td></tr>
<tr><td>2</td><td>사산아 부모의 주소</td><td colspan="9">번지 호</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사산 장소</td><td colspan="9">번지 호</td></tr>
<tr><td colspan="9">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②~⑤의 명칭) ⑦ 기타</td></tr>
<tr><td>4</td><td>사산연월일</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td><td colspan="2">성별</td><td colspan="2">남 · 여 · 불상</td></tr>
<tr><td>5</td><td>임신기간</td><td colspan="5">주</td><td colspan="2">혈액 검사</td><td colspan="2">1. 수 2. 불수</td></tr>
<tr><td rowspan="2">6</td><td rowspan="2">다태</td><td rowspan="2">① 쌍태
② 삼태
③ 태</td><td colspan="3">다태 출산 중의 이 출생아의 출산 순위</td><td colspan="4">① 제1아 ③ 제3아
② 제2아 ④ 제4아</td></tr>
<tr><td>다태의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td><td colspan="6">출생 인(남 인, 여 인)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태)</td></tr>
<tr><td>7</td><td>사산의 종류</td><td colspan="9">① 자연사산 ② 인공임신중절 ③ 기계적 ④ 약제적
④ 기타</td></tr>
<tr><td>8</td><td>자연사산의 원인</td><td colspan="9"></td></tr>
<tr><td>9</td><td colspan="2">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td><td colspan="8">① 의학적 이유에 의한 것(병명)
② 의학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td></tr>
<tr><td colspan="11">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297㎜

신문용지 54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4.7>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 법
				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조제 시 참고 사항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 · 수정 · 확인 · 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0.1.2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0.1.29>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① 수 임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② 위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0.3.19>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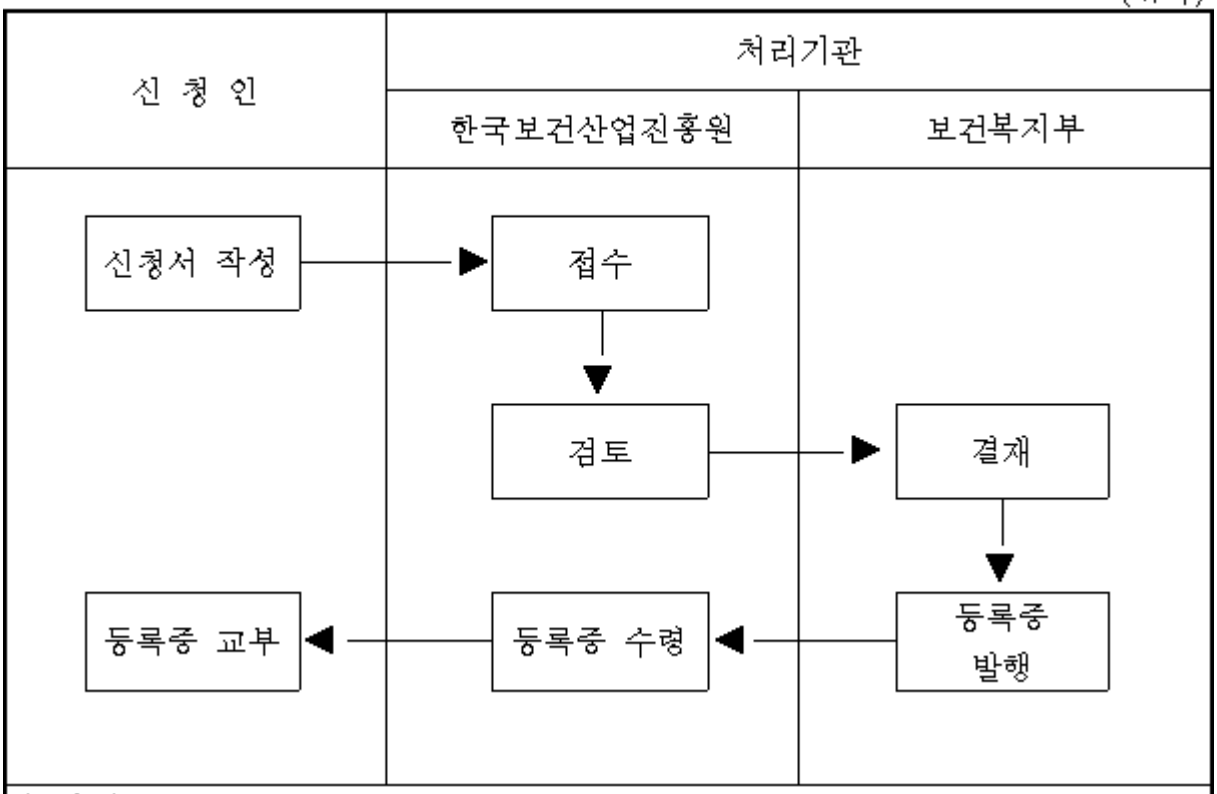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5서식] <개정 2010.3.19>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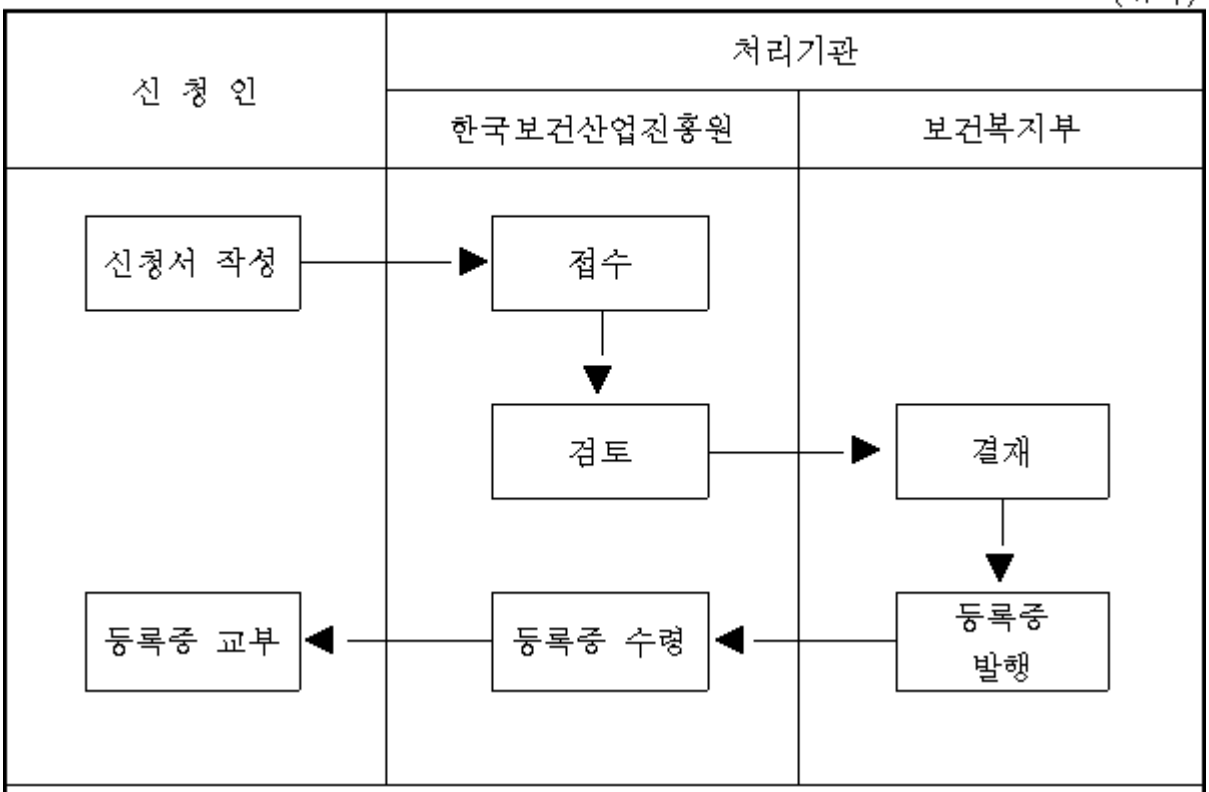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6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7호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8서식] <개정 2010.3.19> (앞쪽)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등록자 (개인사업자는 제외)	명칭(상호)				
	소 재 지	(전화:)			
재 발 행 사 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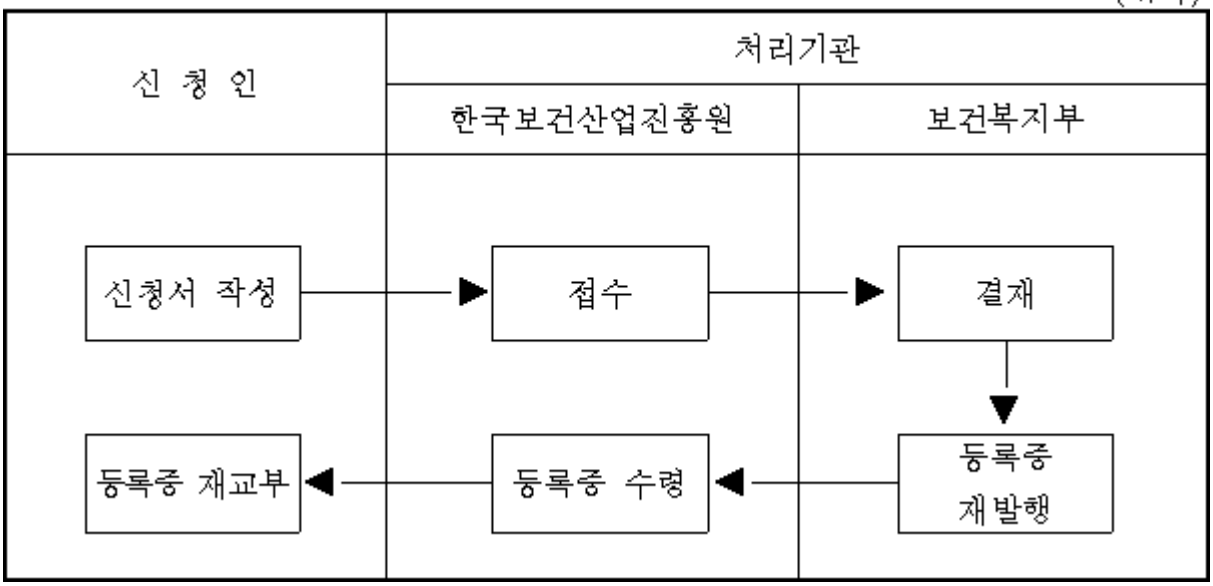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1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table>
<tr><td colspan="5">보수교육면제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
<tr><td rowspan="4">면제
신청자</td><td>① 성명</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 면허종류</td><td></td><td>④ 면허번호</td><td colspan="2">제 호</td></tr>
<tr><td>⑤ 소속 기관</td><td colspan="4"></td></tr>
<tr><td>⑥ 기관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⑦ 면제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주실 것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앙회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 예산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210㎜×297㎜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 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1. 변경 내용				
당초		변경		
2. 변경 사유				

210㎜×297㎜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류		면 허 번 호	제 호

귀하는 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함

년 월 일

(중앙회장) (인)

190㎜×268㎜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V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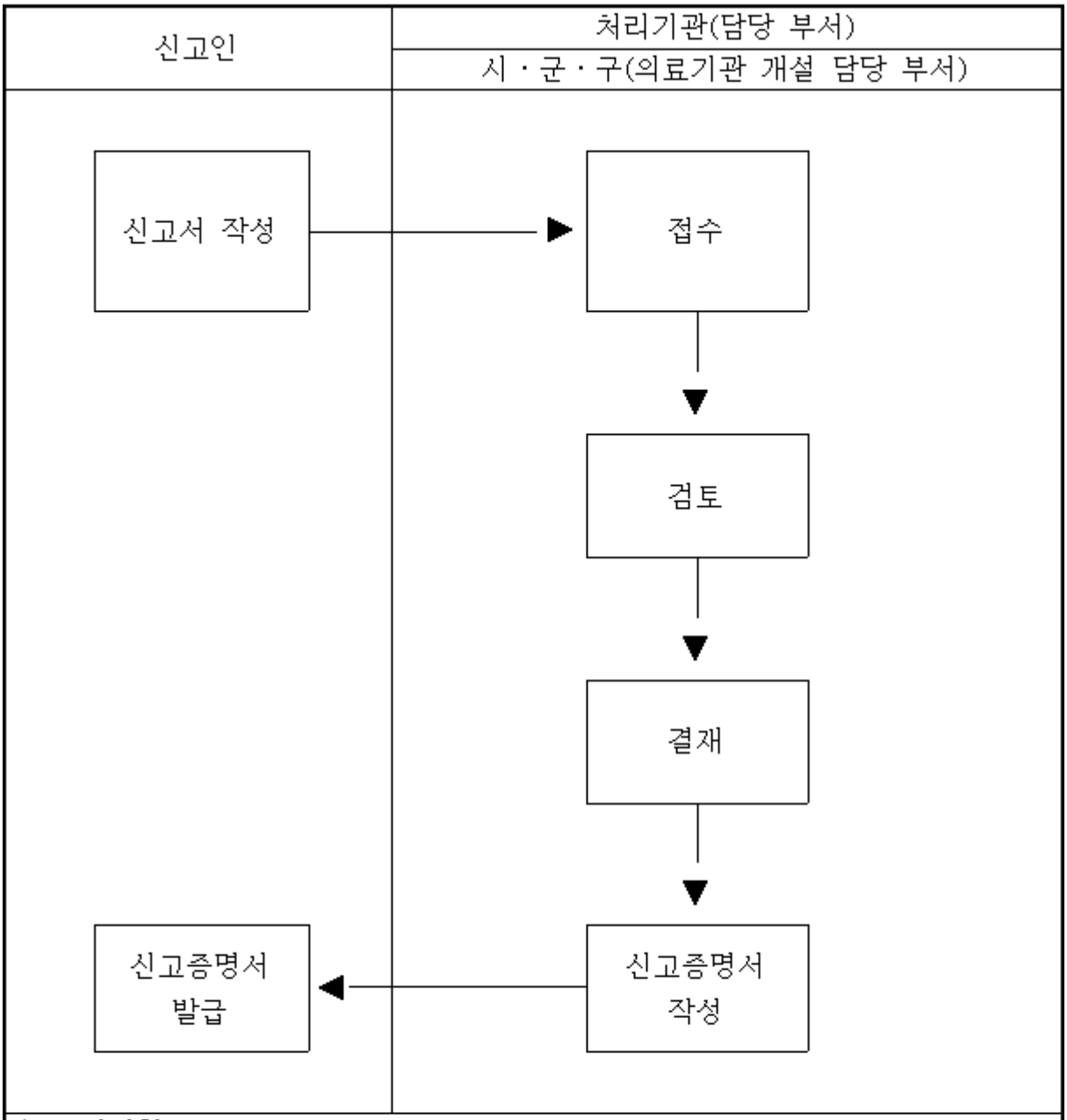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유의사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1.29>

제 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0.1.29>

제 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V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신청인(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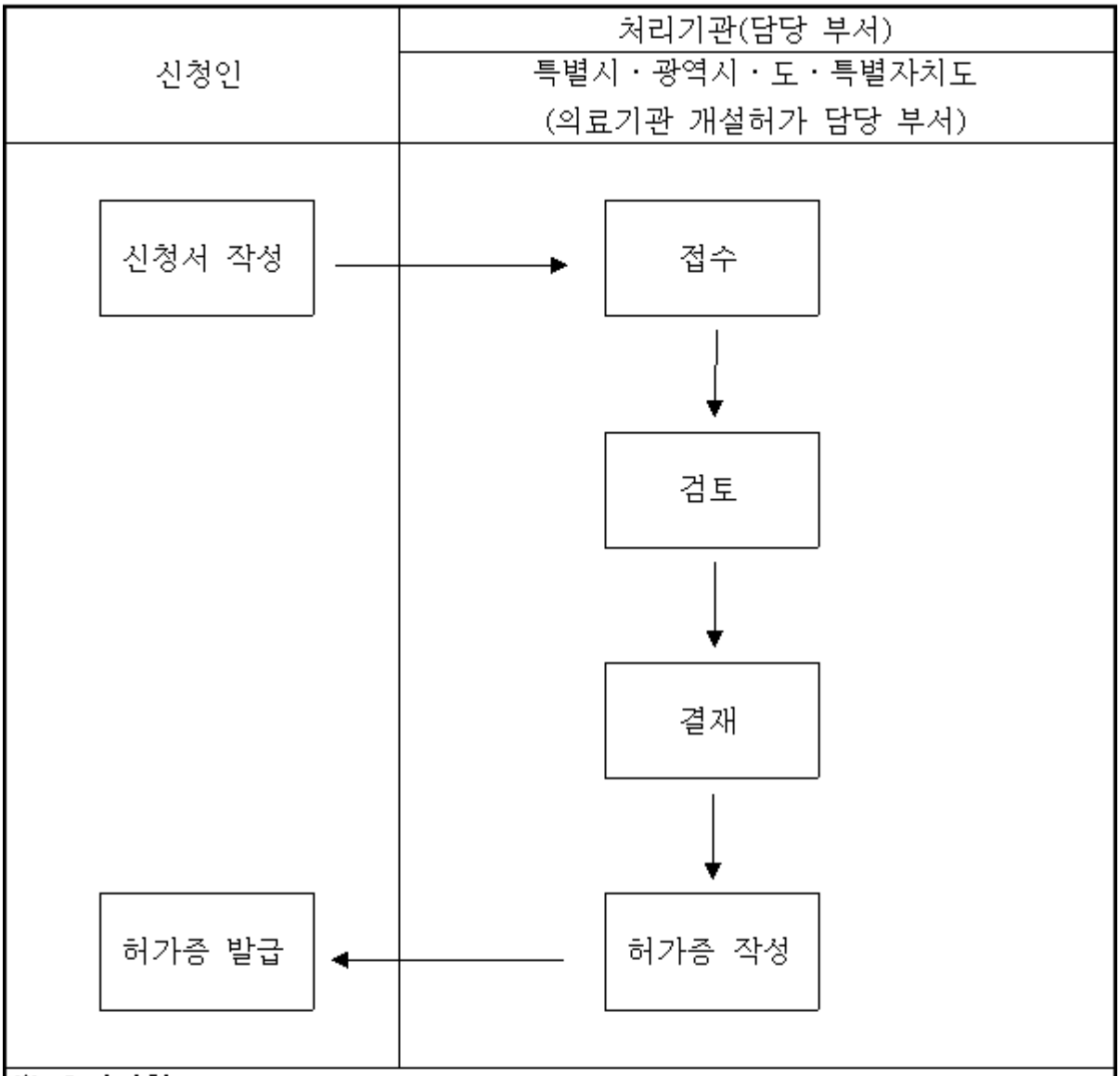
신청인_____(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29>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규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0.1.29>

제 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규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190㎜×268㎜[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29> (앞쪽)

의료기관 □ 휴 업 □ 폐 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① 개 설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③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일자	년 월 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기관 휴업 등 신고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보건과·의약과 또는 보건소
수 수 료	없 음		
유 의 사 항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별지 제19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진료기록 보관계획서</td></tr>
<tr><td>개 설 자</td><td>성명(법인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의 료 기 관</td><td>명칭</td><td></td><td>종류</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보 관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보 관 장 소</td><td colspan="4"></td></tr>
<tr><td>보관책임자</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1.29> (앞쪽)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고(청)인 (개 설 자)	명 칭			
	소 재 지		종업원 수	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의 료 기 관	명 칭		종 류	
	소 재 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진 료 과 목			
	진료 대상자 범위			
규 모	종 업 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 원 실	실	병 상	병상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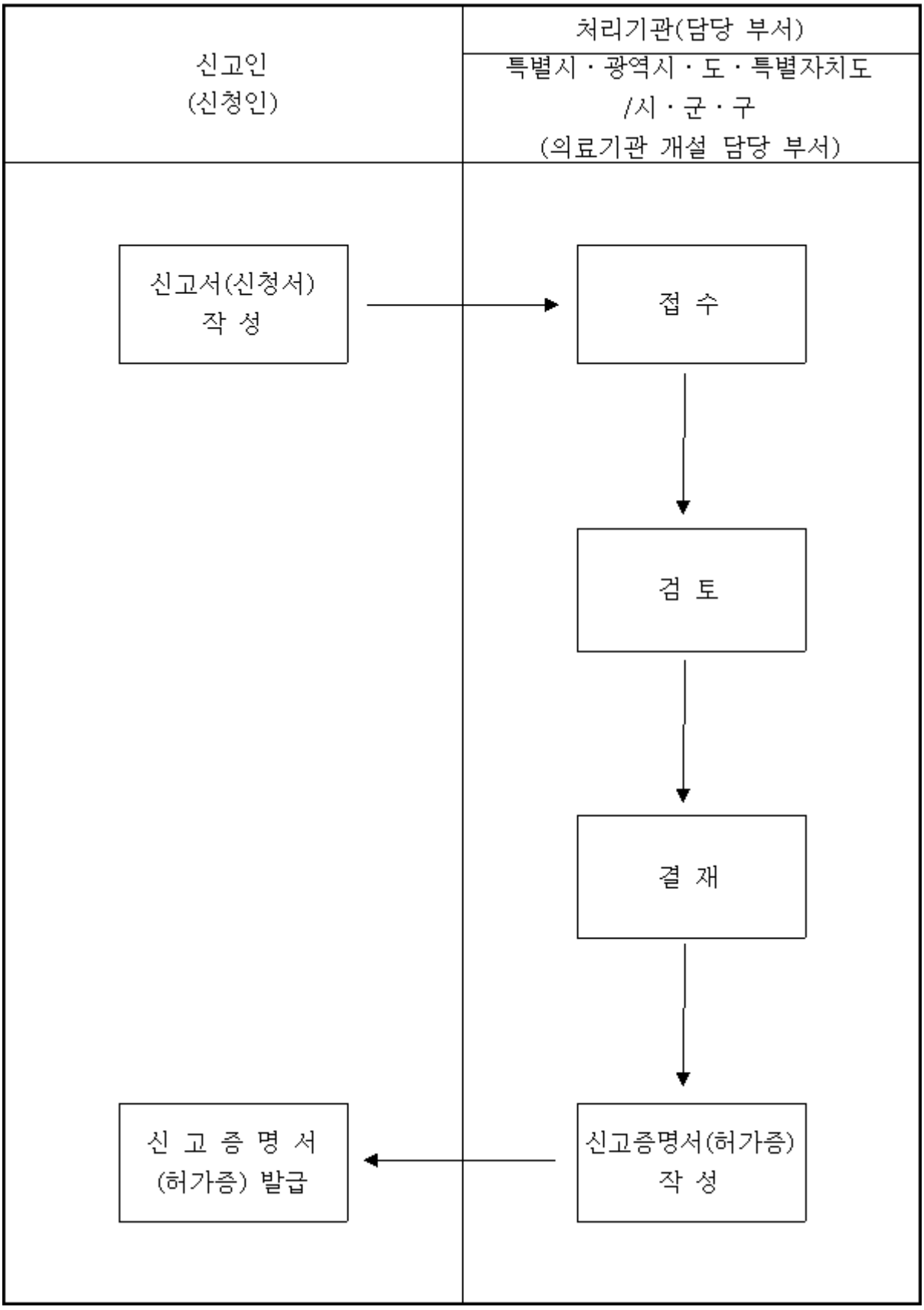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구비서류	수수료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지 방 자 치 단 체 조례로 결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table>
<tr><td colspan="4">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td><td>처리기간
30일
이내</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성 명
(법인명)</td><td></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의료기관명</td><td></td><td>전화번호
팩스번호</td><td>☎
팩스</td></tr>
<tr><td>주 소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E-mail</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심의</td><td>광고내용</td><td colspan="3"></td></tr>
<tr><td>광고매체</td><td></td><td>광고제작사</td><td></td></tr>
<tr><td>광고기간</td><td colspan="3">20 . . ~ 20 . . (회)</td></tr>
<tr><td rowspan="3">재심의</td><td>재심 신청 대상</td><td colspan="3"></td></tr>
<tr><td>재심 신청 사유</td><td colspan="3"></td></tr>
<tr><td>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td><td colspan="3">20 년 월 일</td></tr>
</table>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의료광고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 이유 및 취지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4.29> (앞쪽)

부대사업 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부대사업	업 종		사업의 형태(직영, 임대·위탁 여부)	
	명 칭			
	의료법인명			
	주소(소재지)			
신 고 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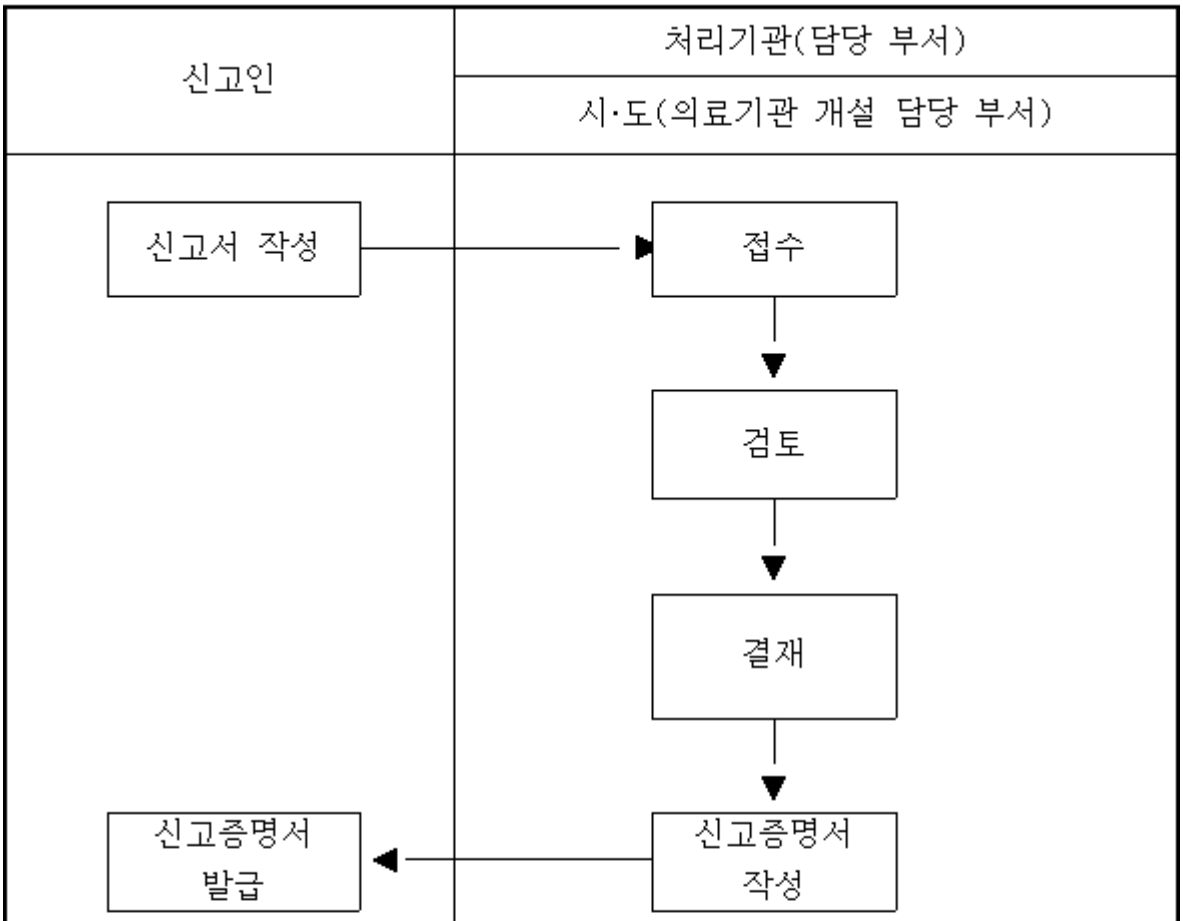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유의 사항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장 개설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 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부대사업장	명칭		업종	
	소재지			
	의료법인명		개설신고일자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1.2.10>

(○○년도 ○○분기)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연번	인증신청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일	조사 계획 통보일	현지조사		인증등급 결정		이의신청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 교부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종별	대표자			조사 기간	조사결과	위원회 개최일	인증 등급	제기 여부	처리 결과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11.2.10>

(○○년도 ○○분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이의신청인			이의신청 내용	처리현황			이의신청위원회 심의현황		처리결과 통보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종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결과	심의일	심의결과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11.2.10>

의료기관 [ ] 인증 [ ] 재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희망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인증일자

그 밖의 의견	

「의료법」 제58조의3제6항,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기관 운영현황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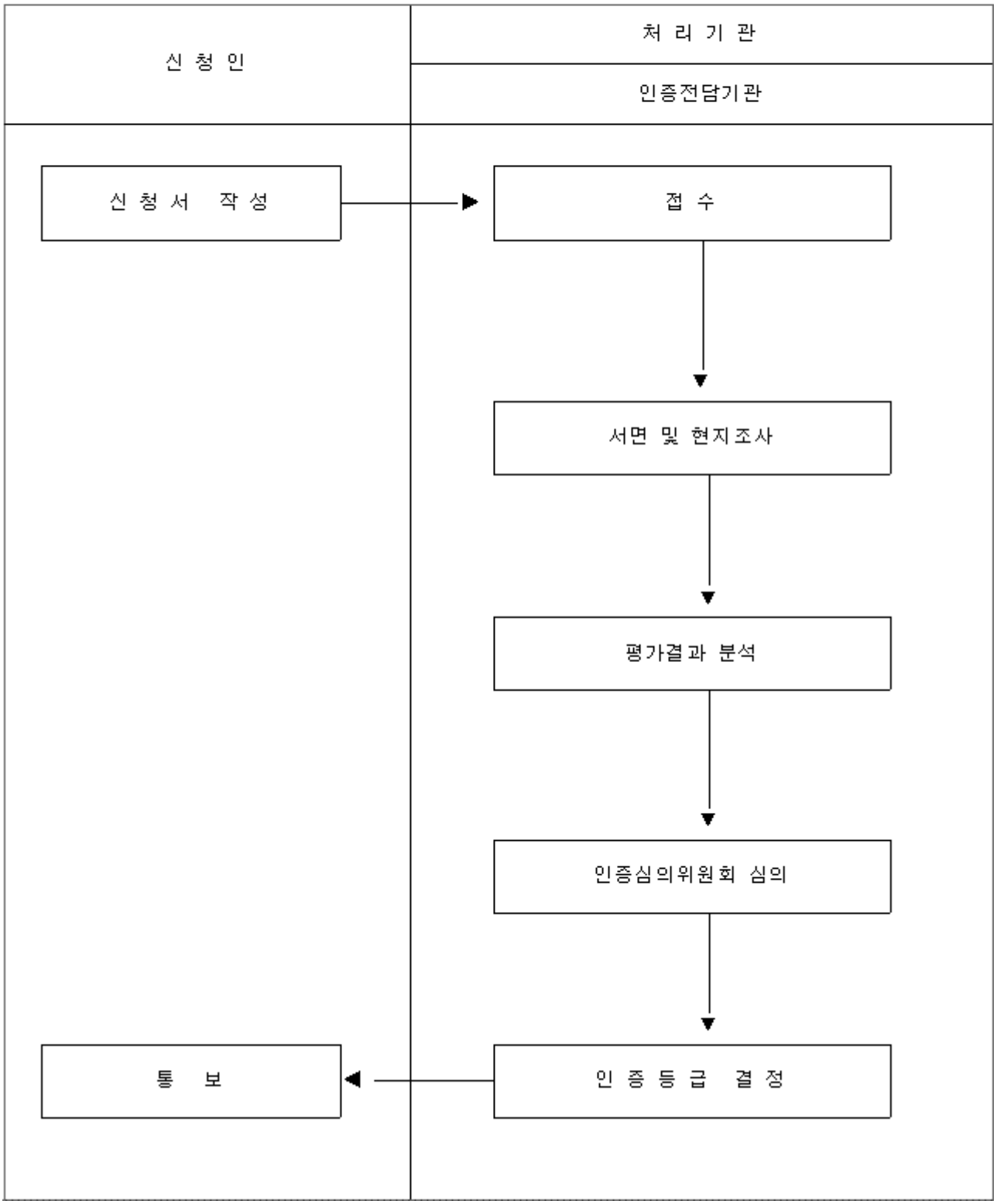
1.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 표시를 하십시오.
2. 희망 조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3. "그 밖의 의견" 란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나 사유 등 인증 조사기간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운영현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 인턴·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기타 진료 시설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중환자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 기타 (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 (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소아청소년과	[ ] 신경과	[ ] 정신과
	[ ] 피부과	[ ] 외과	[ ] 흉부외과	[ ] 정형외과
	[ ] 신경외과	[ ] 성형외과	[ ] 산부인과	[ ] 안과
	[ ] 이비인후과	[ ] 비뇨기과	[ ]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 ] 치과	[ ] 응급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영상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병리과	[ ] 결핵과
	[ ] 핵의학과	[ ] 한방과	[ ] 건강관리과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입원환자			-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	

월평균 분만 실적			일평균 수술 실적		
	총 건 수	건		총 수술 건수	건
	제왕절개	건		전신마취 수술 건수	건

최근 1년간 다빈도 입원환자 진단명 우선순위 (10가지)	질병코드 (KCD)3자리
1.	
2.	
3.	
4.	
5.	
6.	
7.	
8.	
9.	
10.	

최근 1년간 다빈도 수술명 우선순위(10가지)	수술코드 (ICD9CM)
1.	
2.	
3.	
4.	
5.	
6.	
7.	
8.	
9.	
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쪽)

5.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분 류		인원수(전일근무자 수 환산기준, full time equivalent)					
		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전 문 의							
레지던트							
인 턴							
일 반 의							
일반	조 산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중환자실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응급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약 사							
한 약 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영 양 사							
사 회 복 지 사							
행 정 · 사 무 직							
기능 고용 및 기타							
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6. 응급의료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의	명
	타과 전문의	명
레지던트	응급의학 레지던트	명
	타과 레지던트	명
인턴 및 일반의		명
24시간 근무 여부		[ ] 예 [ ] 아니오

구분	의사명	전문과목	연차	응급실 근무기간	근무일수
전문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레지던트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쪽)

7. 시설 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구 분	건물구분	층수	위치	비고
응 급 실				
수 술 실				
회 복 실				
중환자실 1				
중환자실 2				
중환자실 3				
신생아실				
분 만 실				
격 리 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				
약 제 실				
영 양 과				
내시경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폐기물처리장				

병동명	건물구분	층수	위치	주요 진료과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쪽)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 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 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 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 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 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 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 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 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 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 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 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 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 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인력현황

1. 모든 인력현황은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전일근무자 수(full time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응급의료인력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2. "인원수 계" 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 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입니다.
4. "임시직" 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입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당 의료기관의 고용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수를 적습니다.
5. "용역직" 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급여)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수를 적습니다.
6. "파견직" 은 파견 온 직원은 'OO명' 으로 적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 '-(마이너스)OO명' 으로 적되, 총 직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간호사" 의 경우 "일반" 에는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응급실(센터)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원 전체 간호인력을 적고,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응급실" 에는 각각 해당 간호인력을 적습니다.
8. "간호사" 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간호조무사" 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며, "기타" 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간호보조인력을 적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인 경우는 주 업무 위주로 1인으로 적습니다.
9. "행정·사무직" 은 총무과(기획, 홍보), 관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하고, "기능고용 및 기타" 는 일반기술[영선(의공), 전기, 시설 등] 및 일반업무[통신(교환), 청소, 경비안내, 운전, 주차, 세탁 등] 등을 적습니다.
10. "응급의료인력" 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이외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응급정보망(NEDIS) 자료를 이용합니다.

□ 시설현황

1.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별로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건물명을 적고, 층수와 위치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중환자실이 다수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 중환자실 명칭을 적습니다.
3.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건물명, 층수, 위치 및 주요 진료과목을 적습니다.
4. 필요 시 용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의료기관 현황			인증 조사기간	이의신청 처리현황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 교부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종별	대표자		제기여부	처리결과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대장

번호	인증 신청일	의료기관 현황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교부		비고
		의료 기관명	소재지	종별	대표자		일자	교부방법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신설 2011.2.10>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자	기관명(종별) 및 대표자
	주소

②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내용 (여백부족시 별지사용)

③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의료법」 제5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 소 :

통보를 받은 자와의 관계: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증전담기관의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인증전담기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9서식(1)] <신설 2011.2.10>

제 호

(인 증 마 크)

의료기관 인증서

(인증등급:)

1. 의료기관명:
2. 의료기관 종류: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유효기간:

위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2)]

No._____

(인증마크)

ACCREDITATION CERTIFICATE

Organization :

Chief Executive :

Location :

Validation Period :

This certificate is granted in recognition of the achievement of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in Healthcare service and a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are, patients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Clause 1, Article 5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 .

_____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0서식]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 의료기관	의료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홈페이지
	소재지 (㉾ -)	

연락처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증명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3.19>

사 진	의료지도원증

번호 제 호

소속:

직위:

성명: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인)

○ ○ 도 지 사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5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성 명 (명 칭)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소재지)		④ 환자와의 관계	
환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성 명 (명 칭)			
	⑨ 주소(소재지)			
	⑩ 담당 의사 성명			

「의료법 시행령」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사유 발생서	없음
2. 분쟁 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첨부함)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 담당 의사 성명은 피신청인이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적는다.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의료분쟁 조정조사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 성명(명칭)</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소(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피신청인</td><td>④ 성명(명칭)</td><td colspan="3"></td></tr>
<tr><td>⑤ 주소(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의료법」 제75조에 따라 위 당사자 간의 의료분쟁을 뒷면과 같이 조정함.

년 월 일

시·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인)</td></tr>
</table>

190㎜×268㎜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년 월 일

발신: (인)

___분기 의료분쟁 조정신청 처리 상황보고서

구 분 / 의료인별	신청 건수		조정 건수		반려 건수		기각 건수	
	① 금회	② 누계	③ 금회	④ 누계	⑤ 금회	⑥ 누계	⑦ 금회	⑧ 누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간 호 사								
조 산 사								
기 타								

190㎜ ×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3.19>

접수번호 제 호				처리기간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 면허증 · 자격증 갱신 신청서				7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제 호	면허(자격)일자	년 월 일	
갱 신 사 유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한지 의료인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5장	수입인지 2,000원
	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외국인이나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 발행) 및 여권 사본 6. 소속 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계인--------절---------취---------선-----------

접수번호	제 호	면허증(자격증) □발급 · □갱신 접수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9] [법률 제10442호, 2011.3.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3.25]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①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국토해양부차관
4. 소방방재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2009.6.9, 2010.1.18>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8.6.13, 201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서비스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

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법률 제9305호(2008.12.3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목개정 2011.8.4]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전문개정 2011.8.4]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8.4>

[본조신설 2002.3.25]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8.4]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제목개정 2011.8.4]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①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2조(지도의사) ①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2.8.5]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에 따른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1.8.4]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③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제6147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

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77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4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 의료법 제25조 ”를 “ 「의료법」 제27조 ”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8648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4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05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및 운영 현황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다.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마.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바.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한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의 10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지역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의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5.24, 2006.6.12, 2008.2.29, 2008.6.11, 2010.3.15>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소방방재청의 소방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시민단체"라고 한다)를 대표하는 자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8.2.29, 2010.3.15>
1. 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의 변경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4.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지역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계획의 변경
3. 지역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

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2. 미수금 대불심사와 대불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불심사와 대불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①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19조(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1조(대불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정보센터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8.6.11>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관계전문기관을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10.29, 2009.12.14, 2010.3.15>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본조신설 2008.6.11]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11]

부칙 <제17883호,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0호,2004.5.24>(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93호,2006.5.30>(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제19513호,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0>생략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06호,2006.12.29>(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79호,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816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5호,2008.10.2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226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2호,2009.12.14>(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87> 까지 생략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 수입금액(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단위 : 원)
1	50 이하	30,000
2	50 초과 ~ 100 이하	45,000
3	100 초과 ~ 200 이하	6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75,000
5	300 초과 ~ 400 이하	90,000
6	400 초과 ~ 500 이하	115,000
7	500 초과 ~ 600 이하	130,000
8	600 초과 ~ 700 이하	14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150,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16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170,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175,0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18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185,0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190,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195,0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2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205,0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210,000
20	9,000 초과	215,000

[별표 2] <개정 2010.3.15>

과태료부과기준(제29조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1호	200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2호	200
3. 법 제39조 또는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4. 법 제51조제3항, 법 제53조 또는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4호	150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5호	150

비 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00018호, 2010.9.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개정 2008.6.13>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8.6.13>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정보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제9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불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미수금 대불의 청구방법)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제14조(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 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15조(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정보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월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정보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월별·관할지역별·이송기관별로 운영실적·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1>

②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②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6.13>

1.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2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제31조(자격증의 반납)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된 자격증을 당해 응급구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33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정보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3]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3]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2006.7.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7.3>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구급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8, 2006.7.3>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응급환자이송업자가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①이송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8.6.13, 2010.9.1>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삭제<2008.6.13>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7조 삭제 <2008.6.13>

부칙 <제239호,2003.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중인 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호,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표 2] <개정 2010.3.19>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실시방법

가.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별표 3] <개정 2010.3.19>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관련)

구 분	이 송 료	이송중 응급처치료
일반구급차	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20,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800원 추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 (10km 이내) : 50,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1,000원 추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그 이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전국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일 것

[별표 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전담의료기관이어야 하고, 그 시설 또는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실 및 수술실중 대수술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검사실·방사선실·중환자실 및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 설	개 수	단위면적(㎡)	총면적(㎡)	비 고
환자분류소	1	30	3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 할 것
소 생 실	2	20	40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	1	20	20	·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응급환자 진료구역	1	165	165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촬영실 ·필름현상실	 1 1 1	 30 60	 30 60	
수 술 실 ·대수술실 ·소수술실	 1 1	 50 40	 50 40	
중환자실의 병 상	20	10	200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	30	4.3	130	
회의실 및 도서실	각 1	각 60		·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 및 실습기구를 완비할 것
원무행정실	1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사당직실	1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호자 대기실	1	100	100	·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응급의료 정보센터	1	130	130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설치하되, 교환실·기계실·행정실·근무대기실 및 소장실 등 정보센터의 운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구급차와 의료기관간의 유·무선통신망을 확보할 것
주차장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 30,000명 이상 :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6인 이상 2.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 20,000~29,999명 :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이상을 포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5인 이상 3.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 10,000~19,999명 : 응급의학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4인 이상	
간호사 ·15인 이상	
응급구조사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기타 인력 ·청원경찰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주) 상기의 인력은 응급의료진료구역의 전담인력이어야 하며, 종합병원내 타 부서의 업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장비기준

장비명	소생실	응급실	검사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제세동기(除細動機)	1	1			2
인공호흡기	1	1			3병상당 1
주입기(infusion pump)	1병상당 1	3병상당 1			1병상당 1
이동 X-선 촬영기	1				
초음파검사시 (심초음파 가능한 장비)	1				
식 도 위 내 시 경	1				
산부인과진찰대		1			
환자감시장치	1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이동환자감시장치	1				
부착형흡인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blood warmer)	1				1
보 온 포 (가온·냉각기능공유)	1				1
C T 촬 영 기				1	
일반 X-선 촬영기				1	
혈 액 성 분 검 사 기 (C B C 검 사 기)			1		
혈 액 화 학 검 사 기			1		
동맥혈가스분석기			1		

요 성 분 검 사 기			1		
혈 액 은 행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외상센터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응급진료실	환자분류소	1	30	3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 생 실	2	20	40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	1	20	40	·소생실 전면에 간호사실 설치
	응급환자 진료구역	1	165	165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촬영실	 1 1	 30 60	 30 60	
	수술실 및 처치실	1	40	40	
응급진료실외의 장소	수 술 실	1	50	50	·외상환자 전용으로만 이용할 것
	중환자의 병상	10	10	100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	30	4.3	130	
	회의실 및 도서실	1	60	60	
기타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수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의학 전문의 3인 이상 ·일반외과 전문의중 외상외과 전담의 3인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가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외상외과 전담의는 일반외과 상임 레지던트가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외상응급환자 치료요청을 하는 경우 2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할 것
간호사 ·15인 이상	
응급구조사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기타 인력 ·청원 경찰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 비	소 생 실	응 급 실
제 세 동 기	1	1
인 공 호 흡 기	1	1
주 입 기 (Infusion Pump)	2	3병상당 1
이 동 X - 선 촬 영 기	1	
C T 촬 영 기	1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가능한 장비)	1	
산 부 인 과 진 찰 대	1	
N_2O 마 취 기	1	
환 자 감 시 장 치	1	5병상당 1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	1	
부 착 형 흡 인 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 온 포 (가 온 ·냉 각 기 능 공 유)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상센터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응급진료실	환자분류소	1	30	3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 생 실	2	20	40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 호 사 실	1	20	20	·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환 부 세 척 실	1	20	20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	1	165	165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 사 선 실 ·일반촬영실	1	30	30	
	수 술 실 및 처 치 실	1	40	40	
응급진료실외의 장소	수 술 실	1	60	60	·화상환자 전용으로만 이용하고, 중환자실과 인접되게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병 상	8	10	80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	30	4.3	130	
	멸균처치실의 병상	2	16	32	·화상처치용 침상 및 멸균시설
	화상처치실	1	60	60	·샤워기 및 소용돌이꼭지(Whirlpool tab)가 설치되어 있을 것
	회 의 실 및 도 서 실	1	60	60	
기타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일반외과 전문의 1인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가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15인 이상	
응급구조사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기타 인력 ·청원경찰 4명 이상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 비	소 생 실	응 급 실
제 세 동 기	1	1
인 공 호 흡 기	1	1
주 입 기 (Infusion Pump)	2	3병상당 1
이 동 X - 선 촬 영 기	1	
C T 촬 영 기	1	
산 화 질 소 (N_2O) 마 취 기	1	
환 자 감 시 장 치	1	5병상당 1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	1	
부 착 형 흡 인 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 온 포 (가 온 ·냉 각 기 능 공 유)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심혈관 센터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응급진료실	환자분류소	1	30	3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 생 실	2	20	40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	1	20	20	·소생실 전면에 설치
	응급환자 진료구역	1	165	165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 사 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심초음파실	1	20	20	·소생실 옆에 위치할 것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1	30	30	
	수술실 및 처치실	1	40	40	
응급진료실외의 장소	수 술 실	1	50	50	·종합병원의 수술실로 갈음할 수 있음
	중환자실의 병 상	10	10	100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	30	4.3	130	
	혈관촬영실	1	60	60	·응급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장검사실	1	60	60	·심초음파·부하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을 것
	회의실 및 도서실	1	60	60	
기타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의학 전문의 2인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 3인 이상 ·소아과 심장전문의 1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가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15인 이상	
응급구조사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기타 인력 ·청원경찰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 비	소 생 실	응 급 실
제 세 동 기	1	1
인 공 호 흡 기	1	1
주 입 기 (Infusion Pump)	2	3병상당 1
이 동 X - 선 촬 영 기	1	
C T 촬 영 기	1	
심 초 음 파 검 사 기	1	
환 자 감 시 장 치	1	5병상당 1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	1	
부 착 형 흡 인 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 온 포 (가 온 ·냉 각 기 능 공 유)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독극물센터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응급진료실	환자분류소	1	30	3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 생 실	2	20	40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	1	20	20	·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응급환자 진료구역	1	165	165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위 세 척 실	1	20	20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 할 것
	고압산소실	1	50	50	
	검 사 실	1			·시설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촬영실	 1 1	 30 60	 30 60	
	수술실 및 처치실	1	40	40	
응급진료실외의 장소	중환자실의 병 상	10	10	100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	30	4.3	130	·30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독극물 정보센터	1	60	60	
	회의실 및 도서실	1	60	60	
기타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의학 전문의 3인 이상 ·중독전담의 2인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도는 중독전담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15인 이상	
응급구조사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기타 인력 ·청원경찰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 비	소 생 실	응 급 실
제 세 동 기	1	1
인 공 호 흡 기	1	1
주 입 기 (Infusion Pump)	2	3병상당 1
이 동 X - 선 촬 영 기	1	
C T 촬 영 기	1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검사 기능)	1	
산 부 인 과 진 찰 대	1	
산 화 질 소 (N_2O) 마취기	1	
환 자 감 시 장 치	1	5병상당 1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	1	
부 착 형 흡 인 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 온 포 (가 온 ·냉 각 기 능 공 유)	1	
고 압 산 소 탱 크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관련)

1.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환 자 분 류 소	1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응 급 환 자 진 료 구 역	1	110	110	·최소 20병상 이상을 확보한 것
검 사 실	1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 사 선 실 ·일반촬영실	1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
처 치 실	1	15	15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1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것
원 무 행 정 실	1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 사 당 직 실	1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 호 자 대 기 실	1			·2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주 차 장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

1. 위의 개수·단수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10인 이상	

다 . 장비기준

장 비 명	기 준
제 세 동 기	1
인 공 호 흡 기	1
주 입 기 (Infusion Pump)	5병상당 1
이 동 X - 선 촬 영 기	1
초 음 파 검 사 기	1
산 부 인 과 진 찰 대	1
환 자 감 시 장 치	5병상당 1
이 동 환 자 감 시 장 치	1
부 착 형 흡 인 기	1병상당 1
부 착 형 산 소 (Wall O_2 unit)	1병상당 1
급 속 혈 액 가 온 주 입 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 온 포	1
C T 촬 영 기	1
일 반 X - 선 촬 영 기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주) CT촬영기는 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8조제1항관련)

1.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 설 내 용	개수	단위면적 (㎡)	총면적 (㎡)	비 고
응급환자진료구역	1	55	55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한 것
검 사 실	1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처 치 실	1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원 무 행 정 실	1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함
의 사 당 직 실	1			·의사 1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 호 자 대 기 실	1			·1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주 차 장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 위의 개수·단수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이며, 검사실의 경우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 력	비 고
의 사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	·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5인 이상	·24시간 응급실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 근무할 것

다. 장비기준

장 비 명	기 준
제 세 동 기	1
인 공 호 흡 기	1
주 입 기 (Infusion Pump)	5병상당 1

산부인과진찰대	1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
부착형흡인기	1병상당 1
부착형산소 (Wall O_2 unit)	1병상당 1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1
일반X-선 촬영기	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9]

응급의료시설 시설·인력 등의 기준(제23조제1항관련)

1. 의료기관 외부에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내에 다음 각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별표 10]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관련)

구분	내용	기준	비고
시설	1. 강의실 겸 옥내실습실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교육생수+16.5㎡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사고현장 실습장 ·수난구조 실습장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갖출 것 ·수영장을 갖출 것	
	3.책상 및 의자	교육생수에 맞는 수	
	4. 화장실	적정한 수(남녀로 구분된 수세식용)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시설 및 조명·전기시설		
장비	1. 마네킹	교육생 2명당 1개	
	2. 부목	〃	
	3. 고정장치	〃	
	4. 기도유지장치	교육생 5명당 1개	
	5. 산소투여장치	〃	
	6. 심폐소생술용 장치	〃	
	7. 자동제세동기	〃	
	8. 자동심폐소생기	〃	
	9. 자동인공호흡기	〃	
	10. 지혈장치	〃	
	11. 슬라이드 및 빔프로젝트	1세트	스크린 등 장비일체
	12. 비디오	1세트	화면 등 장비일체
	13. 구급차	교육생 20명당 1대	일반구급차
인력	1.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도의사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수 400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전임출강계약서를 제출할 것
	2. 전임강사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수 200명당 1인 이상	중등학교 이상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양성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자, 전임출강계약서를 제출할 것
	3. 조교	교육생 10명당 1인 이상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소유자
기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적정한 야외 및 실내공간과 시설		

[별표 11]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과 목			시간표		
			계 (시간)	강의 및 실습 (시간)	실무수습 (시간)
응급의학 과 목	기 본 응급처치학 총 론	1. 응급의료의 개요	5	5	
		2. 환자구조 및 운반	20	20	
		3. 기본응급처치술	15	15	
		4. 대량재해 응급의료	10	10	
		소 계	50	50	
	기 본 응급처치학 각 론	1. 심폐정지	20	20	
		2. 순환부진	10	10	
		3. 의식장해	15	15	
		4. 출 혈	10	10	
		5. 일반외상	15	15	
		6. 두부·경추손상	15	15	
		7. 기도·소화관이물	5	5	
		8.대사상·체온이상	5	5	
		9.감염증·면역부진	5	5	
		10.급성복통	5	5	
		11.화학손상	5	5	
		12.산부인과질환	10	10	
		13.신생아질환	10	10	
		14.정신장해	5	5	
		15.창 상	10	10	
		소 계	145	145	
기본 응급환자 관리학	1. 환자평가		5	5	
	2. 환자관리		10	10	
	소 계		15	15	
응 급 의료장비 응 운 영	1.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10	10	
	2.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10	10	
	3. 무선통신방법		3	3	
	4. 기록의 작성 보관		2	2	
	소 계		25	25	
관련법령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5	5	
	2. 의 료 법		3	3	
	소 계		8	8	
계			243	243	
실무수습	1. 구급차 동승실습		50		50
	2. 응급의료기관 실습		50		50
	소 계		100		100
총 계			343	243	100

[별표 12] <개정 2010.3.19>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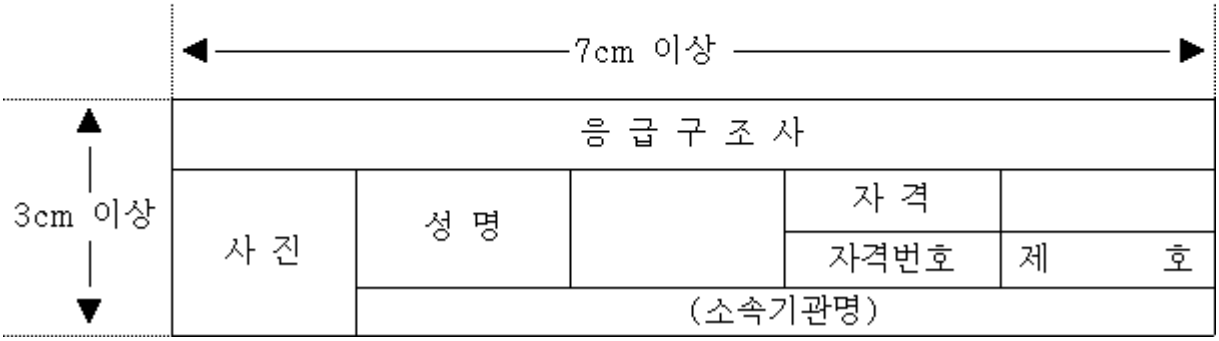
2.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2조관련)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별표 15]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

1.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 등의 차량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08.12.31>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2항관련)

1. 특수구급차

구 분	내 용
의료장비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나.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치 다.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라.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마. 쇼크방지용 하의(MAST) 바.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 사. 자동제세동기 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통신장비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만, 소방서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소방용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구급차

구 분	내 용
의료장비	가.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다. 기도확보장치
구급의약품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1. 구급차 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 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 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 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8]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2.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4.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			
가. 응급구조사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6.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7.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8.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9.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10. 의료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11.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12.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법 제5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13.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의 관리, 응급구조사의 표시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월
14. 응급구조사 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15.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16.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월
17.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양 벌)	업무정지 7일 (양 벌)	업무정지 15일 (양 벌)
18.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19. 의료기관·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0.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21. 응급구조사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후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22. 구급차등이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기록을 이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23.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24.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5.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26.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27.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8. 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29.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30. 구급차운용자가 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별지 제1호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은 _____입니다.

2.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하였을 때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위의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이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 고려하여야 합니다.

6. 환자인 저(또는 법정대리인)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저(또는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위의 응급의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응 급 의 료 종 사 자 _____(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응급환자진료의뢰서</td></tr>
<tr><td>환 자 명</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보 호 자</td><td>성 명</td><td></td><td>주 소</td><td colspan="2">(전화 :)</td></tr>
<tr><td>도 착 시 간</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td></tr>
<tr><td>응급처치시간</td><td colspan="5">일 시 분 ~ 일 시 분</td></tr>
<tr><td>응급처치전
환자상태</td><td colspan="5"></td></tr>
<tr><td>응급처치후
환자상태</td><td colspan="5"></td></tr>
<tr><td>응급처치사항</td><td colspan="5"></td></tr>
<tr><td>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시각</td><td colspan="5">년 월 일 시 분</td></tr>
<tr><td>이송결정이유</td><td colspan="5"></td></tr>
<tr><td>송부서류등</td><td colspan="5"></td></tr>
<tr><td>이송구급차</td><td colspan="5">차량번호 : 동승 응급의료종사자 :</td></tr>
<tr><td>담당의사소견
기 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의료기관
담당의사 면허번호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수료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시·도 지 사 [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
</td><td colspan="8">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td></tr>
<tr><td rowspan="2">청구
기관</td><td>요양기관번호
(이송업허가)</td><td colspan="2"></td><td>기관명</td><td></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d>주민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응급
환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d>우편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대불
청구
내역</td><td rowspan="2">대불청구액
①+②</td><td rowspan="2">응급진료비
①</td><td rowspan="2">이송처치료
②</td><td colspan="4">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등보내역</td></tr>
<tr><td>접수
번호</td><td>심사
차수</td><td>묶음
번호</td><td>명세서
일련
번호</td></tr>
<tr><td>원</td><td>원</td><td>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대불금
수령계좌</td><td>예금주</td><td></td><td>은행명</td><td></td><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미수금
발생
사유</td><td colspan="8"></td></tr>
</table>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기관: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없음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영수증 1부

3. 공통서류

-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또는 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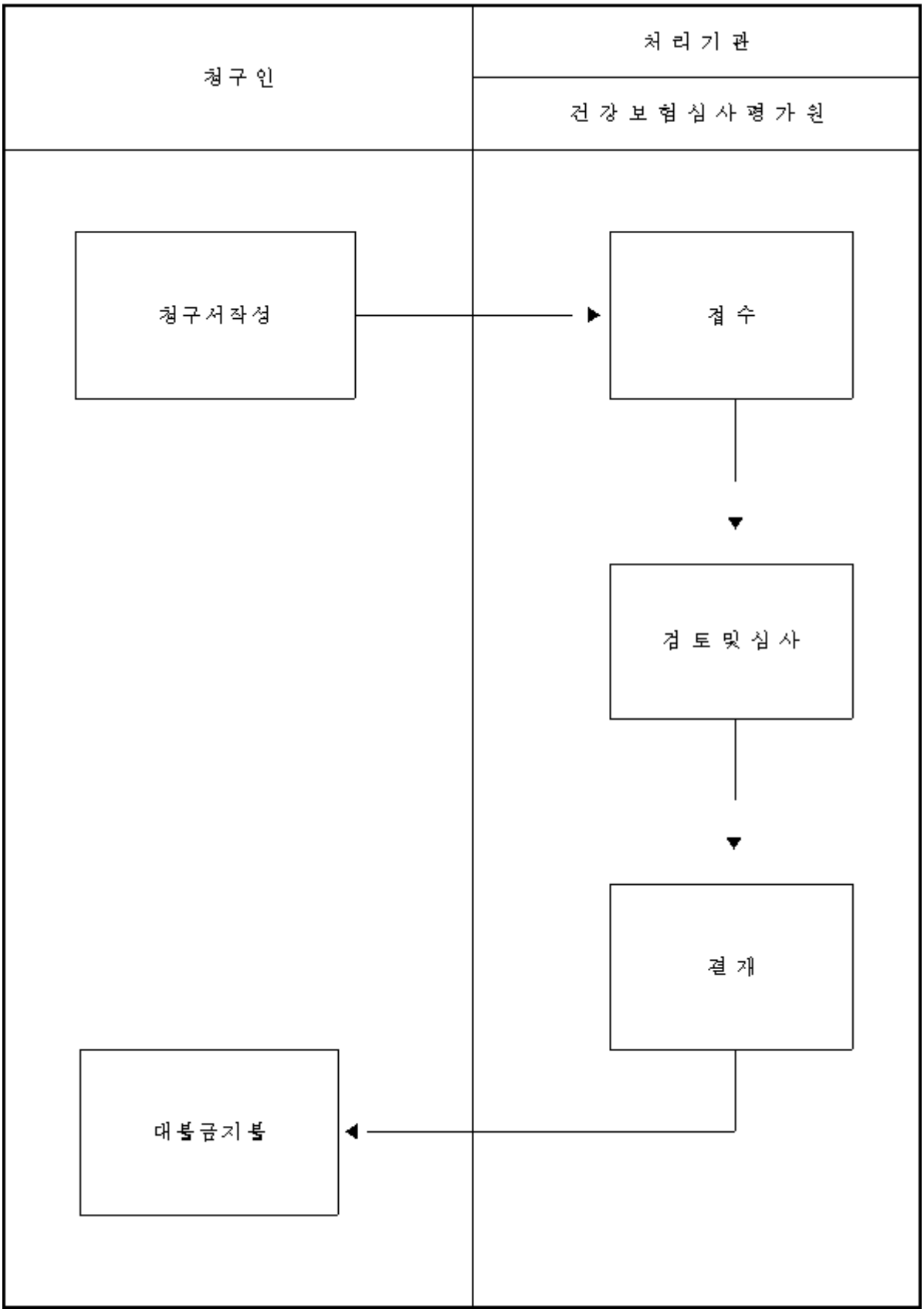
(주)

1. 접수번호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등보내역란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기관이 심사하여 등보한 진료비(약제비)심사결과 등지서상의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이송처치료영수증</td></tr>
<tr><td>영 수 증 번 호</td><td colspan="5"></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업소명(사업장명)</td><td colspan="2"></td></tr>
<tr><td>사 업 장 소 재 지</td><td colspan="2"></td><td>대 표 자 성 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구 급 차 종</td><td colspan="2" rowspan="2">□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td><td>차 량 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운 전 자 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차량주행계</td><td colspan="2">_____ km~_____ km</td><td>이송거리</td><td colspan="2">_____ 에서
_____ 까지 ___km</td></tr>
<tr><td>①기본요금
10km 이내</td><td>□20,000원
□50,000원</td><td>②10km 초과시</td><td colspan="3">_____km× 800원=
_____km× 1,000원=</td></tr>
<tr><td>③구급차에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경우</td><td>10,000원</td><td>이송처치료총액
①+②+③</td><td colspan="3"></td></tr>
<tr><td>보 호 자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이송중 처치내용 :</td></tr>
<tr><td colspan="6">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인]

※ 이 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td></tr>
</table>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3.19> (앞 면)

<table>
<tr><td colspan="6">□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4">의 료
기 관</td><td>명 칭</td><td colspan="2"></td><td>개설허가일자</td><td colspan="2"></td></tr>
<tr><td>개설허가번호</td><td colspan="2"></td><td>허가병상수</td><td colspan="2"></td></tr>
<tr><td>전 문 과 목</td><td colspan="5"></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의사면허
번 호</td><td></td></tr>
<tr><td colspan="7">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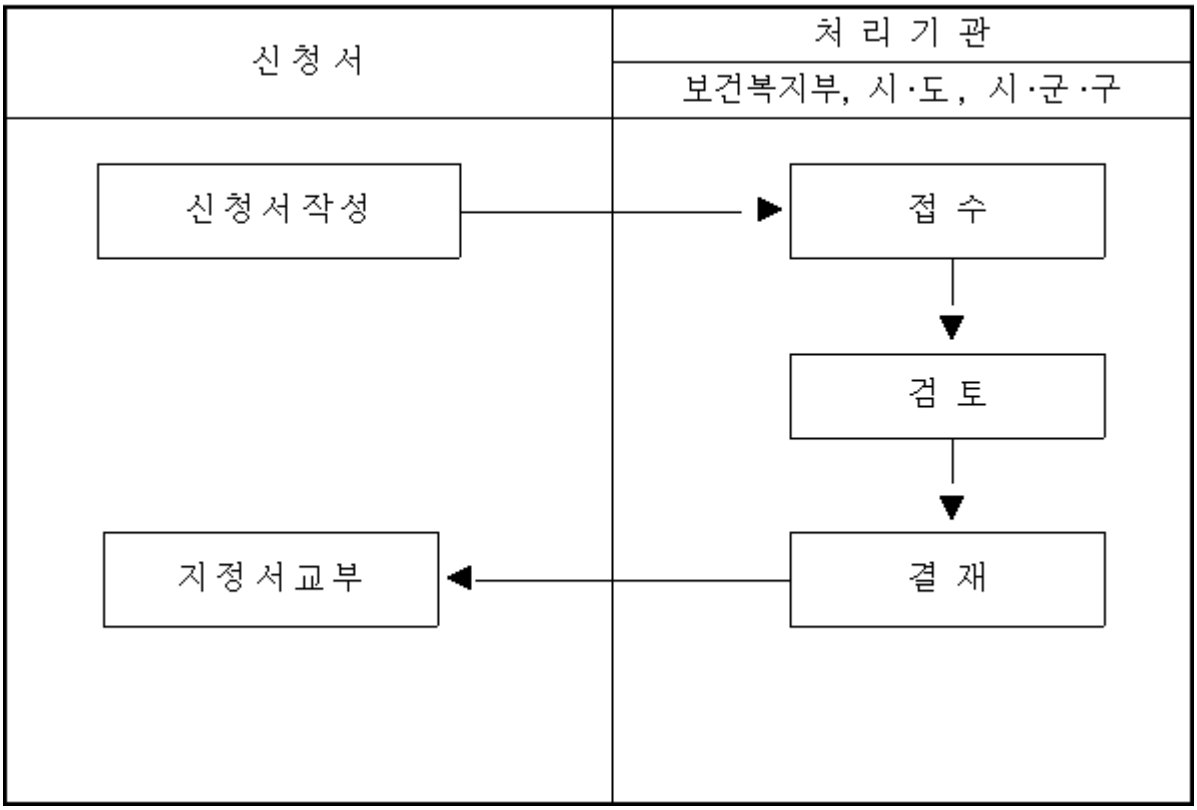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3조제5항·제16조제3항·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3.19>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실적보고서
(_____ 년 _____월)

1.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안내전화(1339) 운영실적 (월계/연간누계, 건)

구 분	운 영 실 적										오인 및 장난 등
	계① (②+③+④+⑤)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②	병원 안내 ③	구급차등 출동						기타 상담 ⑤	
				소계 ④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	민간이송기관 등	112 순찰대	보건소 또는 군 등		
일 반 인	/	/	/	/	/	/	/	/	/	/	/
119구급대	/	/	/	/	/	/	/	/	/	/	/
의료기관	/	/	/	/	/	/	/	/	/	/	/
이송단체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계	/	/	/	/	/	/	/	/	/	/	/

2. 관할구역내 의료기관 현황 :
○응급의료기관 총 개소(종류별 :)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개소, 병원 개소, 의원 개소
3. 무선통신망 운영실적 (관할무선국 총 개, 고정국 개, 기지국 개, 육상국 개)
○
4. 전산망 운영실적
○
5. 기타 활동실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응급의료정보센터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97mm×210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6">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서</td><td>처리기간
15일</td></tr>
<tr><td rowspan="4">의료기관</td><td>명 칭</td><td colspan="2"></td><td>개설허가일자</td><td colspan="2"></td></tr>
<tr><td>개설허가번호</td><td colspan="2"></td><td>허가병상수</td><td colspan="2"></td></tr>
<tr><td>전 문 과 목</td><td colspan="5"></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d>의사면허번호</td><td></td></tr>
<tr><td colspan="7">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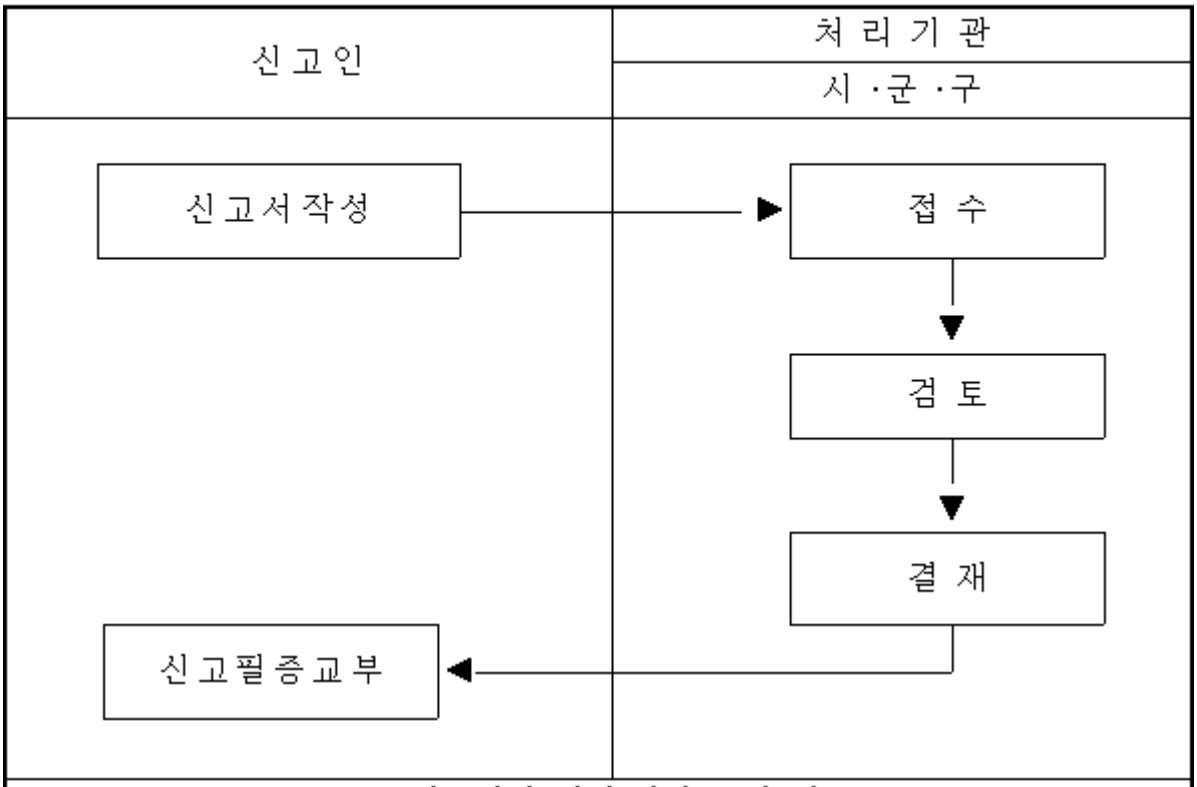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응급의료시설 시설·인력 등의 기준

1. 의료기관 외부에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처치병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3. 24시간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4. 의료기관내에서 다음과 같은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일반 X-선 촬영기
   ②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5">(1급·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td><td>작 성</td><td></td><td>담 당</td><td></td></tr>
<tr><td>부여번호</td><td colspan="6"></td><td rowspan="3">사 진
3cm×4cm</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부여근거</td><td colspan="5">졸업
. . 제 회 응급구조사자격시험 제 호</td></tr>
<tr><td rowspan="15">관련면허
(자 격)</td><td>종 별</td><td>번 호</td><td>취득연월일</td><td>시험합격일</td><td colspan="2">합격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210mm×148mm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행정처분사항등		
년 월 일	내 용	기록자의 성명(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2.13>

제 호

제 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진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 거: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19> (앞 면)

(1급·2급)응급구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대조필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격번호			자격일자	년 월 일
신청사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구조사(1급,2급)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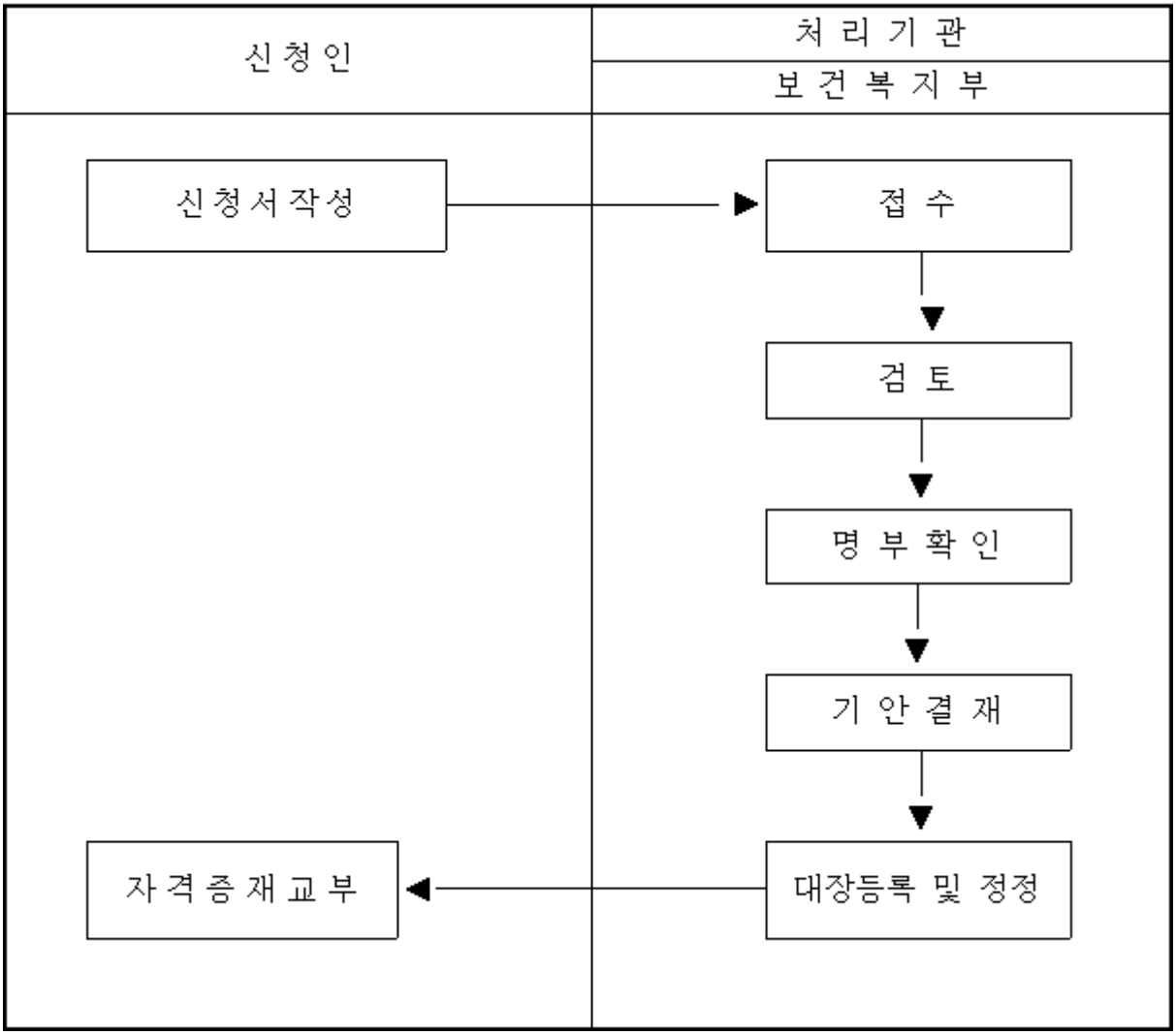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000원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주소지로 할 것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4">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
<tr><td rowspan="4">면제
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자격등급</td><td></td><td>자격번호</td><td>제 호</td></tr>
<tr><td>소속기관</td><td colspan="3"></td></tr>
<tr><td>기관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면제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년도 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줄 것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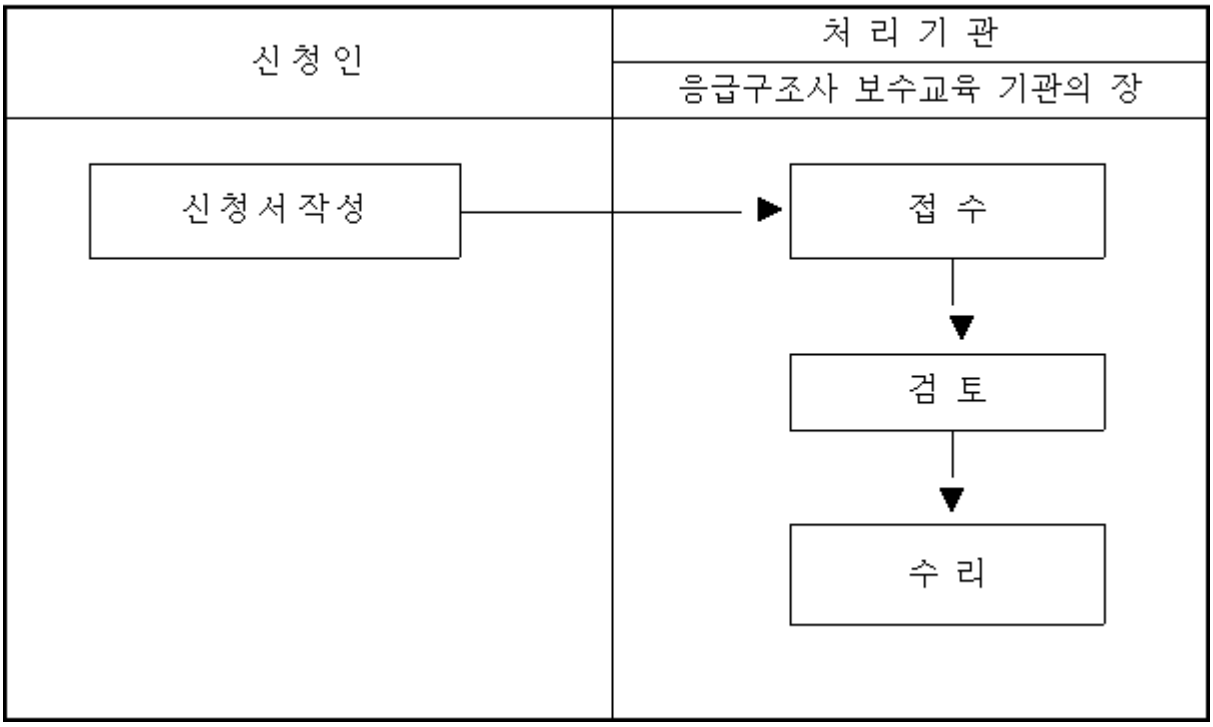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등 급		자격번호	제 호
주 소			
소 속 기 관			
기관소재지			

귀하는 년도 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전과정을 수료하였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함.

년 월 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명)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08.6.13>

응급장비(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신고인	설치기관의 명칭		전화		팩스	
	소 재 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설치·양도·폐기·이전 일자: . . .			연면적: ㎡			

응급장비의 내용

용도: 상태: □ 신품 □ 중고품

연번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국 및 제조사

응급장비 배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양도·폐기·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08.6.13>

응급장비 등록대장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table>
<tr><td rowspan="2">1. 설치 기관</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개설자 성명</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2. 관리 책임자 현황</td><td></td><td>의사</td><td>간호사</td><td>응급 구조사</td><td>간호 조무사</td><td>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자</td><td>기타</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성명</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3. 응급장비의 설치 현황(총 설치 대수: 대)</td></tr>
<tr><td>연번</td><td>제품 및 모델명</td><td>제조 번호</td><td>제조 연월일</td><td>제조국 및 제조사</td><td colspan="3">설치 장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첨부서류: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 시 제출된 서류</td></tr>
</table>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10.3.19>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구비시설 수/관리책임자 수, 개/명)

구분		설치대상 기관														설치대상 외 기관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다중이용시설								
관할 구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6">출동 및 처치기록지</td></tr>
<tr><td colspan="6">응급의 정도 긴급( ) 응급( ) 비응급( )
revised trauma score (pediatric trauma score) : _____</td></tr>
<tr><td>환 자 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보호자성명</td><td colspan="2"></td><td>환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환자발생장소</td><td colspan="5"></td></tr>
<tr><td>환자발생시간</td><td colspan="2"></td><td>현장도착시간</td><td colspan="2"></td></tr>
<tr><td>환자발생구분</td><td colspan="5">사고 재해 급성질환 만성질환의 급속악화 기타( )</td></tr>
<tr><td>환자발생의
구체적사유</td><td colspan="5"></td></tr>
<tr><td>현장및이송간
주요응급처치</td><td colspan="5"></td></tr>
<tr><td>(지도)의사
지시내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출동및처치
응급의료
종 사 자</td><td>소 견</td><td colspan="4"></td></tr>
<tr><td>소속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자 격 ·면 허
종 류</td><td colspan="2">□의사 □간호사,
□(1급, 2급)응급구조사
□기타( )</td><td>성
명</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년 월 일</td></tr>
<tr><td colspan="6">환자인수병원 응급의료종사자 직종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table>
<tr><td rowspan="6">출 동
상 황</td><td>출동요청시간</td><td>구급차 출동시간</td><td>구급차 현장도착시간</td></tr>
<tr><td>일 시 분</td><td>일 시 분</td><td>일 시 분</td></tr>
<tr><td>출동요청자/기관</td><td>요청자 전화번호</td><td>요 청 내 용</td></tr>
<tr><td></td><td></td><td></td></tr>
<tr><td>출동거리(km)</td><td colspan="2">이송병원선정사유</td></tr>
<tr><td></td><td colspan="2">환자의 뜻, 최근거리기관, 정보센터의 지시,
기타( )</td></tr>
<tr><td colspan="4">주증상 및 병력</td></tr>
<tr><td>주 증 상</td><td colspan="3"></td></tr>
<tr><td>현 병 력</td><td colspan="3"></td></tr>
<tr><td>과 거 병 력</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역학적 관찰</td></tr>
<tr><td colspan="4">○생체징후(Vital Sign) ○동공크기 및 동광반사(Pupil Size & Light Reflex)
<table><tr><td>시간</td><td>:</td><td>:</td><td>:</td></tr><tr><td>혈압</td><td>/</td><td>/</td><td>/</td></tr><tr><td>맥박</td><td></td><td></td><td></td></tr><tr><td>호흡</td><td></td><td></td><td></td></tr></table><table><tr><td>구 분</td><td>우 측</td><td>좌 측</td></tr><tr><td>동공크기</td><td>□정상 □축동
□산동</td><td>□정상 □축동
□산동</td></tr><tr><td>동광반사</td><td>□반응 □무반응</td><td>□반응 □무반응</td></tr></table>○의식상태</td></tr>
<tr><td colspan="4">기타사항</td></tr>
</table>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9.1> (앞 면)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주사무소)					
구급차 및 영업구역(시·군·구 단위)		별 첨			
(지 도) 의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전 화 번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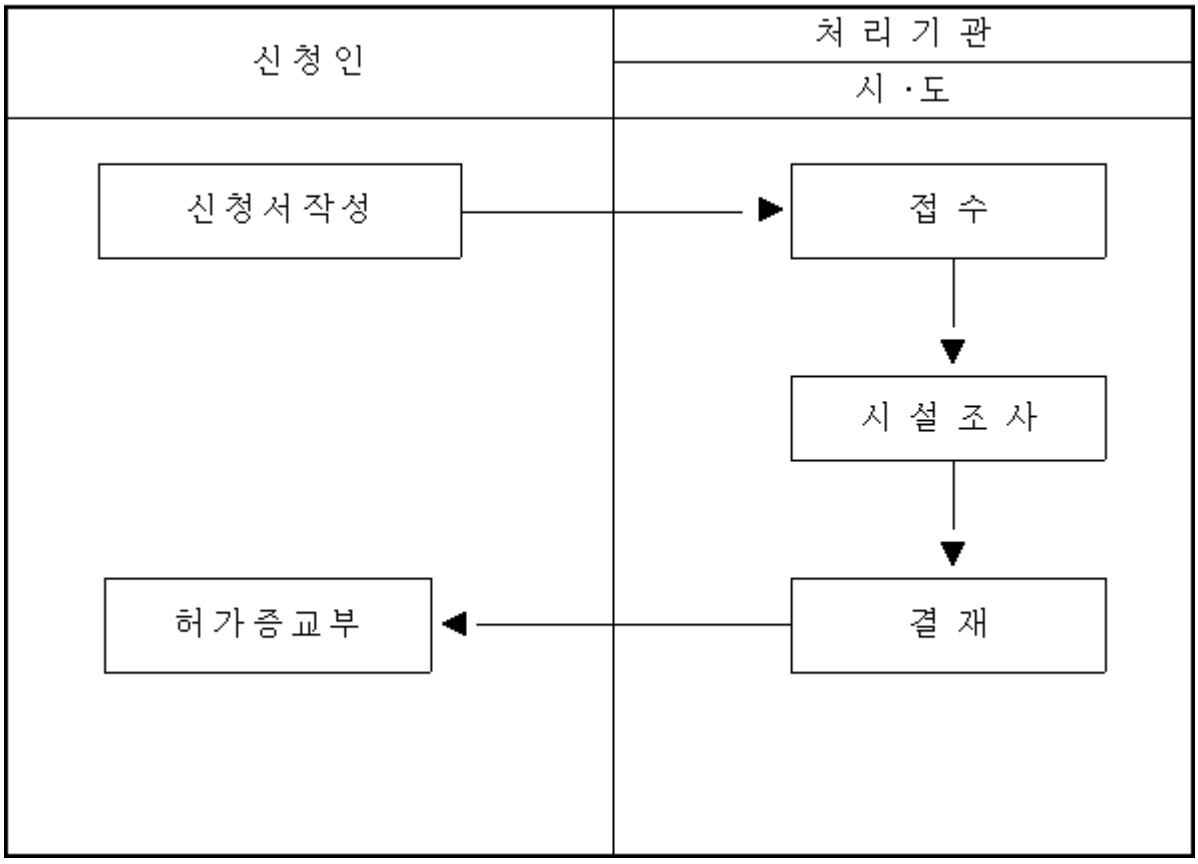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20,000원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명 칭 :

소 재 지 :

허가조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지 사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허가사항변경 및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6">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td></tr>
<tr><td colspan="6">1. 영업허가신청</td></tr>
<tr><td>업 소 명</td><td colspan="2"></td><td>개 인</td><td colspan="2"></td></tr>
<tr><td>영업허가번호</td><td>제 호</td><td>허가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영 업 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사 업 장</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대 표 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 colspan="3"></td></tr>
<tr><td>영 업
허가조건</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2.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td></tr>
<tr><td>년 월 일</td><td>내 용</td><td>기재자</td><td>년 월 일</td><td>내 용</td><td>기재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3. 업소규모 등

업 소 규 모		종 업 원 수	
대 지 면 적		총 원	
건 물 면 적		응급구조사	
구 급 차 수			

(지도)의사 선임(변경)신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번호	소속기관	선임·변경구분	수리일자

비 고

4. 행정조치사항

년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 재 자

5.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 서 번 호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및 기 간	기 재 자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table>
<tr><td colspan="4">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 신 고 서</td><td>처리기간
변경허가 : 15일
신 고 : 3일</td></tr>
<tr><td>대표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업소명칭</td><td></td><td>허 가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5">변 경 사 항</td></tr>
<tr><td colspan="2">구 분</td><td>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변경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중 위와 같이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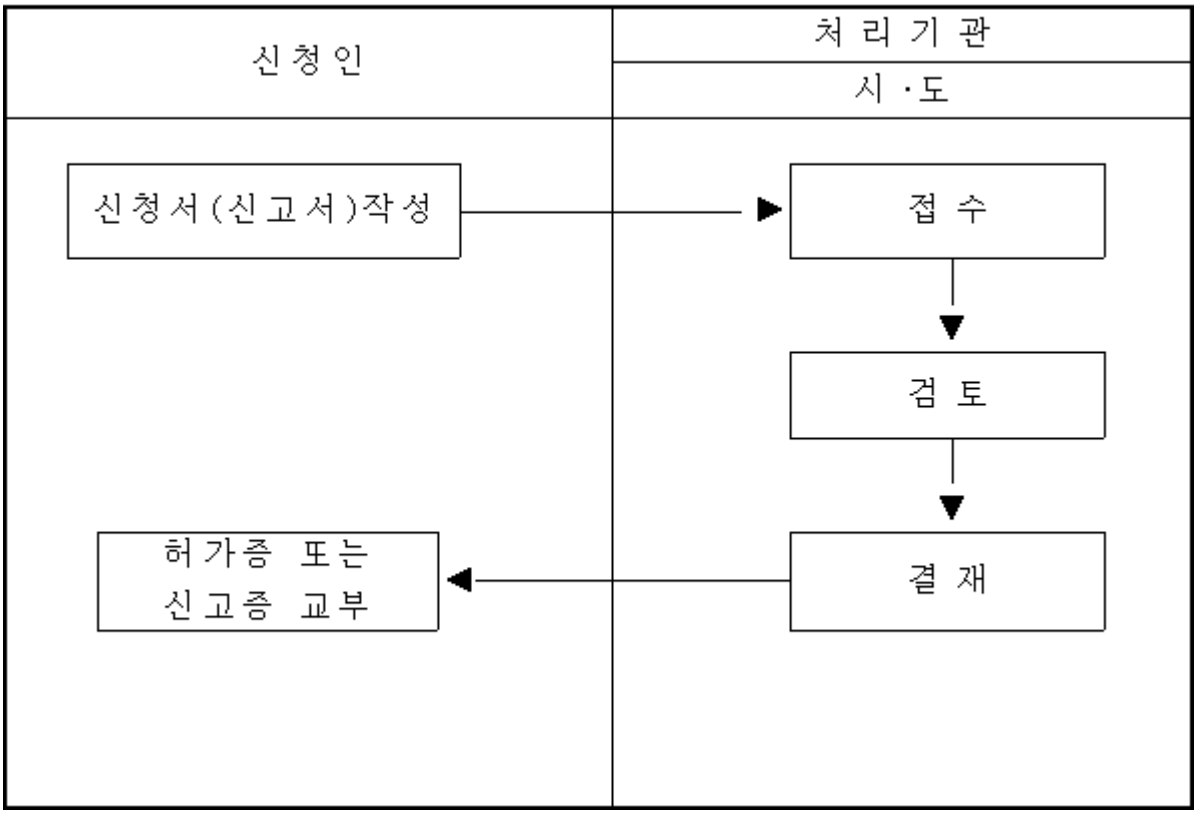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 사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업 소 명 :

소 재 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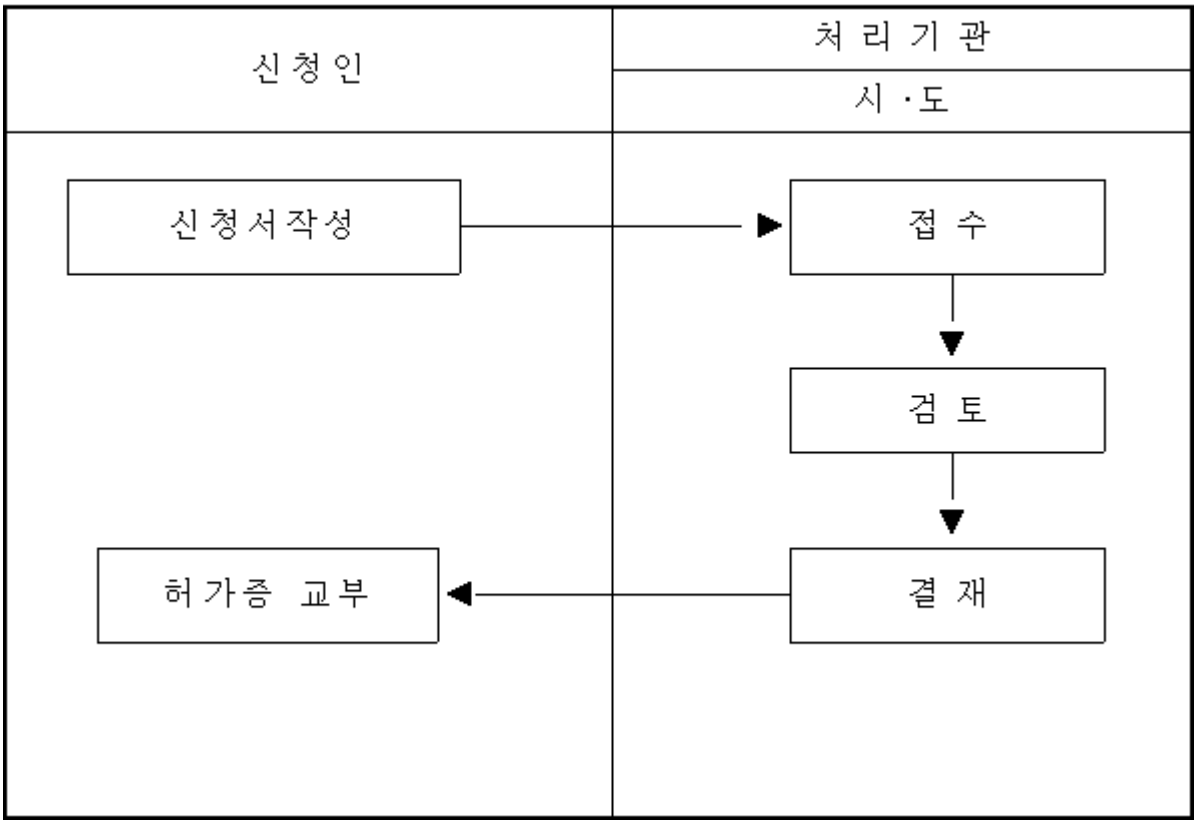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2호서식]

<table>
<tr><td colspan="4">☐ 휴 업
응급환자이송업의 ☐ 폐 업 신고서
☐ 재 개 업</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2">신고인</td><td>① 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영업소</td><td>④ 종 류</td><td colspan="3"></td></tr>
<tr><td>⑤ 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⑥재개업(폐업)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2">⑦ 휴 업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⑧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휴업
☐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 사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9.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영업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발생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구비 서류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번 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 간	근 거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18>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읍장 또는 면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

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20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의 판단 및 의사결정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4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방역관 등) 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2010.1.18>

②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방역관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 직무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검역위원)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62조(예방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

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른 의사의 배치 및 의료업자 등의 동원을 위한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의사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2011년도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전염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본다.

제9조(기생충질환 검사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른다.

제10조(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으로 본다.

제11조(예방접종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본다.

제12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 본다.

제1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예방시설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 신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본다.

제1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받은 교육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방역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으로 본다.

제18조(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의 명의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로 본다.

제19조(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사람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 전염병 ”을 각각 “ 감염병 ”으로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 인수공통전염병 ”을 “ 인수공통감염병 ”으로 한다.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 전염병 ”을 각각 “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전염병환자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 전염병예방법 ”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로, “ 전염병의 ”를 “ 감염병의 ”로 한다.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 전염병환자 ”를 “ 감염병환자 ”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 전염병환자 ”를 “ 감염병환자 ”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 전염병예방 ”을 “ 감염병 예방 ”으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바목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 전염병환자 ” 를 “ 감염병환자 ” 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 ” 로 한다.

제14조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 ”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 로, “ 전염병의 ” 를 “ 감염병의 ” 로 한다.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 전염병환자 ” 를 “ 감염병환자 ”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전염병환자 ” 를 “ 감염병환자 ”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 전염병환자 ” 를 “ 감염병환자 ” 로 한다.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3조제1항, 제67조제7호,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3항 전단 및 제7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3호·제19호, 제11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전단,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6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직업·감염병명·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지·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군·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및 소속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그 소속 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하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제28조(손실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7조의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든 비용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전염병질환 ”을 “ 감염병질환 ”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 전염병예방 ”을 “ 감염병예방 ”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 전염병예방 ”을 “ 감염병예방 ”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 (전염병에 관한 조치) ”를 “ (감염병에 관한 조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 전염병 ”을 각각 “ 감염병 ”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전염병 ”을 “ 감염병 ”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 (전염병의 예방) ” 을 “ (감염병의 예방)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 전염병 ” 을 각각 “ 감염병 ” 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 (전염병 발생 보고 등) ” 을 “ (감염병 발생 보고 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 「전염병예방법」 제5조 ” 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 ” 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 인수공통전염병 ” 을 “ 인수공통감염병 ” 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 전염병질환 ” 을 “ 감염병질환 ” 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 ” 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 으로 한다.

<17>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 「전염병예방법」 ” 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 전염병 ” 을 “ 감염병 ” 으로 한다.

<2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1)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

상으로 실시한다.

2)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5) 1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역학조사 시에는 대변검체를 채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장채변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1)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수영장·온천·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

2)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험 종류	검체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
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3)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4)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1)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한다)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한다)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2)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3)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이 병원·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1)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 사항 :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가족사항, 주소, 연락처

나) 과거력 : 출생력, 발달력, 과거 병력, 이전 예방접종력

2)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임상 경과 파악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의무기록 확인과 담당 의사의 면접

나) 보호자 면접을 통한 환자 경과 파악

다)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의무기록 확인

라) 주요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내용 및 결과

나. 기록 및 자료수집

1) 역학조사반이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록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접종 백신 관련 사항

① 접종 여부 및 접종일

② 접종 백신의 이름, 제조번호, 제조회사, 유효기간

나) 백신 보관 상태

① 장기 보관 냉장(동)고와 임시 보관 냉장고의 운영 여부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② 온도 측정 방법(외부에서 온도 확인 가능 여부)과 측정 기록 확인

③ 백신 외의 다른 물건과 공동 사용 여부

④ 냉장(동)고 고장 혹은 정전 유무 및 정전 시 대책

⑤ 냉장(동)고 주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장비 여부

다) 접종 과정 파악

① 접종자, 접종장소, 접종부위, 접종방법

② 접종과정의 재현

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조사

①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반응 유무 확인과 분석

②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사례 유무 및 발현 빈도 조사

마) 접종기록 등 관련 기록의 관리 상태

① 백신 수불(受拂) 대장

② 백신 국가검정성적서

③ 백신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④ 예방접종약품보관냉장고점검표

⑤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여부 및 결과 확인

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명부 확인

⑦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실적보고 확인

2) 역학조사관은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하여 백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1. 자가치료의 방법

가. 자가치료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독립된 방)에 있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자가치료가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다.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마. 간병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바.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가치료의 절차 등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가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대상자의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3. 입원치료의 방법

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나.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다.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라.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마.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바.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

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원치료의 절차 등

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다.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라.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00032호, 2010.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홍역
2. 결핵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2.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5군감염병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2. 지정감염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실험실 진단 결과 등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정보 등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각종 문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동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수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 6개월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예방접종 실시대장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시·도지

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정관 및 임원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갖출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 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통지) 법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소독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

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대상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제46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로 한다.

⑥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예방접종약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⑩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⑪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프시타키(*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 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혈청형 H5N1, H7N7)

버.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별표 2]

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제1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1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2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3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喀痰),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
   가. 제4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5. 제5군감염병
   가. 제5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병변조직, 뇌척수액, 객담 등 검체에서 충란/충체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6. 지정감염병
   지정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膿),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별표 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예방접종의 종류	임 상 증 상	예방접종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댑(Tdap)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7일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5. 국소 부위 통증을 동반한 심한 부종	7일 이내
	6.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7. 39℃ 이상 발열	2일 이내
	8.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그 밖의 중추신경계 증상	21일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5.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6.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7.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경구용(經口用) 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灰白髓炎)	35일 이내
	면역 기능 정상자	1년 이내
	면역 기능 이상자	기한 없음
	2. 제1호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cm 이상)	1년 이내
	2. 접종 부위 국소 종양	6개월 이내
	3.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4. 전신 파종성 비씨지(BCG) 감염증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 폴리오(주사용)·B형간염·수두·인플루엔자 또는 장티푸스(경구용 및 주사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 신고대상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티에이피(DTaP)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준 수 사 항	비고
1.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Strain명),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할 것	필수
2. 고위험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性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 등)으로 보존할 것	필수
3. 고위험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하나의 보존상자에 혼합하여 보존하지 않으며,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한 고위험병원체 전용 보존상자에 보존할 것	필수
4.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필수
5. 고위험병원체 보존구역의 출입 제한조치를 하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지정할 것	필수
6. 고위험병원체 보존장비의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권장

[별표 5]

소독의 대상(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서족(鼠族)이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별표 6]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 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8시간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감염병명	제1군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급성	[ ]산모	[ ]주산기)
	제3군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1기 [ ]2기 [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확진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 중 [ ]검사 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입원 여부	[ ]외래 [ ]입원 [ ]기타
추정 감염 경로	[ ]집단감염환자와 접촉 [ ]개별감염환자와 접촉 [ ]불확실함 [ ]접촉 없었음	추정 감염 지역	[ ]국내 [ ]국외(국명:) (체류기간:)
사망 여부	[ ]생존 [ ]사망-사망 원인(원사인 기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비고(특이사항)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진단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의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 환자, 만성 B형간염 및 병원체보유자 중 산모와 주산기 감염자만 신고합니다.
3.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사인을 기준으로 사망 원인을 기록하여 신고하며,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로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출생 체중(kg)
	[ ] 선천성 기형
	[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뇌증 혹은 뇌염 [ ]경련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 ]알러지 반응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발열 [ ]관절염 [ ]골염 혹은 골수염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 ]생명 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
		3. 모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약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 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림프선염(화농성 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개월~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이)에 나타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 부종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남
  · 통증·발적·부종·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일~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며,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길리안 바레(Guillain-Barre)증후군: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 뇌 증(腦症)
예방접종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① 간질발작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
(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뇌 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경 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② 천명(쌕쌕거림)
③ 안면 부종 또는 전신 부종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쌕쌕거림)과 호흡곤란
② 후두 연축/부종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전신 부종)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 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가축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발생 농가 주소		
신고사항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발생 마릿수
			폐사 마릿수
	발견일(또는 죽은일)		
	그 밖에 가축 또는 애완동물 사육 현황		
	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의 질병 발생 여부 등)		
질병명	[ ] 탄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 광견병 [ ] 기타( )		
농장 출입 및 물품 현황	가축 소유자의 다른 농장 운영 및 농장 간 가축이동 여부 ※세부 사항:		[ ] 해당 [ ]해당 없음
	농장도구의 인근 농장 공동사용 여부 ※ 세부 사항:		[ ] 해당 [ ]해당 없음
	농장주 및 근무자 이동사항		
	수의사(서비스) 관계자 현황		
	인근 농장과 장비 교환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농장주 방역규정 준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신고(보고) 일시	신고(보고)자	병명	발병일	감염병환자등			주소	주요 증세	조치 결과
				성명	성별	연령			

297mm×210mm(보존용지(2급)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 아래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	피접종자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접종일	접종 기관	접종기관 전화번호	증상 발생일	진단일	②이상반응 내용	③ 접종 백신명 (LOT번호)	보고일
	성명	① 나이	성별											

작성방법

① 난은 2세 이하의 경우에는 개월(2개월, 15개월 등)로 기록합니다.

② 난은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보고하며 신고된 모든 건수에 대해 기록합니다.

③ 난은 동시 접종 백신명을 제조번호와 함께 모두 기록합니다. (예: DPT(99-221), OPV(99-443)

* 보건소 자체 발생 건도 함께 기록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활동기간: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배경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역학조사반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역학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병원체 명칭	종속명	
		보통명	
	병원체 특성		
	병원체 검사방법		분리일
역학정보	기원		
	검체명		
	분리경위, 역학정보		
보존 및 배양	폐기	[ ]3개월 이내 폐기함	[ ]3개월 이내 폐기하지 않음
		보존목적	
	배양계획	[ ] 해당	[ ] 해당 없음
		예상 수량	
		배양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송부기관	기관명		
	관리책임자 (대리인)	성명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일련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1. 이동대행계약서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없 음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송부기관	송부기관명		국가명
	주소		

고위험 병원체 취급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시설	안전등급	[ ] BL1 [ ] BL2 [ ] BL3 [ ] BL4	
		주소		
		시설등록번호		

	일련번호	병원체명	특성	포장형태(단위)	수량	비고(용도 등)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1부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없 음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신청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송부기관	송부기관명		국가명	
	주소			
고위험 병원체 취급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시설	안전등급	[ ] BL1 [ ] BL2 [ ] BL3 [ ] BL4	
		주소		
		시설등록번호		

	일련번호	병원체명	특성	포장형태(단위)	수량	반입허가번호
고위험 병원체						

허가조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직인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 신청(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 ]허가 [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송부기관	송부기관명		국가명	
	주소			
고위험 병원체 취급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시설	안전등급	[ ] BL1 [ ] BL2 [ ] BL3 [ ] BL4	
		주소		
		사설등록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사항에 대한 [ ]변경허가 [ ]변경을(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송부기관	기관명		국가명
	관리책임자	성명	직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인수 장소	

	일련번호	반입 허가번호	병원체명	HS코드	포장형태 (단위)	수량	인수 예정일	수송 방법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1부. *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인수대행계약서 2. 운반경로 · 운반수단 · 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없 음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송부기관	기관명		국가명	
	관리책임자	성명	직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인수 장소	

	일련번호	반입 허가번호	병원체명	HS코드	포장형태 (단위)	수량	인수 예정일	수송 방법
고위험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직인

유의사항

* 신청인은 고위험병원체 인수 완료 시 인수신고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인수한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기관 정보	취급기관명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소속 / 직위
	안전관리자	성명	소속 / 직위

병원체명	관리번호	최초 취득일	용도[1]	보존 장소	보존상태	전부 폐기일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용도: 배양 및 제조, 시험 및 진단, 연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고위험병원체를 전부 폐기한 경우, 폐기 후 6년간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種)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도 [ ]상반기 [ ]하반기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속/직위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속/직위	전화번호

	일련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포장형태(단 위)	수량	변동 사유	보존상태	보존 장소
고위험 병원체 보존 현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예방접종증명서

1. 성 명 : (성별:)
2. 생년월일 :
3. 주 소 :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 관 명)

우 -	주소	전화 ( ) -	팩스 ( ) -
(①부서명)	(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신

제 목 **( )월 예방접종 실시대장**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상세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자녀구분	보호자 성명	④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접종명	⑤ 접종차수	백신 제조번호	백신 제조회사	⑥ 접종방법	⑦ 접종부위	접종일시	접종자	예진 의사명	비고

작성방법

①, ②: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록

③: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에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를 기록

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에 기록

⑤: 예방접종 차수를 기록

⑥: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 방법을 기록

⑦: 삼각근(좌, 우), 대퇴부 전외측(좌, 우), 상완 외측면(좌, 우) 등 접종 부위를 기록

297㎜× 210㎜(보존용지(2종) 7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제 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활동기간: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배경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질병관리본부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피해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 예방접종피해 관련 당사자와 관할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소재지:
3. 의료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4. 주소:
5.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개설 연월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시설	명칭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운영 방법
	사업 개시 예정 연월일
	설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정관 및 임원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예방시설	명칭			
	소재지			
	설치 목적			
	운영 방법		병실 수	
	수용 능력		총 수용 인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치료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 ]병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				
사유				
진단(접종) 일시				
진단(접종) 기관명(보건소명)				
진단(접종) 기관(보건소)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예방접종)을 명함.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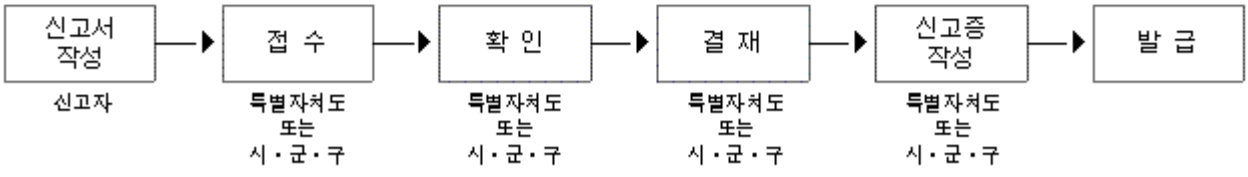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2. 교육이수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제 호

소독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 호:

3.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 내용

일 자	내 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기타(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휴 업
소독업의 [ ]재개업 신고서
[ ]폐 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재개업·폐업 일시	휴업기간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독실시대장

일련번호	소독일	시설명	소재지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손실 발생기간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사실확인	보상금액 결정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진료비	간병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진 료 확 인 서

진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질병명 또는 주요 소견			
진료일수	외래 일		
	입원 일		

의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의료보험 비급여액

위와 같이 진료하였음을 확인함.

의료기관의 명칭
소 재 지
개설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사망 [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보상금 산정	→	결 정	→	지 급
신청인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본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19] [법률 제0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2008.2.29, 2010.1.18>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의 수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26>

1.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소유·관리·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디아세칠모르핀,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소유·관리·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마(대마초를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2.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조(마약류취급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허가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7, 2010.1.18>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제7조(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1. 사망한 때 :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허가관청은 제4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③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제10조(구입서·판매서) ①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정비) ①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사용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허가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2010.1.18>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제목개정 2008.3.28]

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4조(광고) 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10.1.18>

[제목개정 2002.12.26]

제16조(봉함) ①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18조(마약류수출입업자) ①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④제2항의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8.3.28>

제19조(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 또는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제21조(마약류제조업자) ①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3.28>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마약 등의 제조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4조(마약류원료사용자) ①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3.28>

제25조(마약류의 원료사용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6조(마약류도매업자) ①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26>

제27조(마약의 도매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①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0조(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제31조(마약투약의 기록)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때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연령,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기록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연령·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대마초 재배의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③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④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기타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제18조·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①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26>

③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제목개정 2002.12.26]

제5장 마약류중독자

제39조(마약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0.1.18>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

은 12월 이내로 한다.<개정 2004.1.20, 2008.3.28,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3.28, 2010.1.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3.28, 2010.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폐기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제43조(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제44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부정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재배·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마약류감시원) ①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②마약류감시원의 자격·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

②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26, 2008.3.28>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제조·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2008.3.28>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6>

⑤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26>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2.12.26]

제7장 보칙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8]

제52조(마약류관계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 기타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3조(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5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의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5.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1항제1호·제2호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서 또는 판매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4.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0.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7호·제11호 내지 제15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1. 제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3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0.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0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11.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3.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를 저장한 자
16.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제58조 및 제59조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60조 내지 제64조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단순위헌, 2010헌가45, 2010.9.3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3.28]

부칙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면허·허가·지정·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대마관리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수입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로, 마약제조업자·마약제제업자·마약소분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제조업자로, 한외마약제제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도매업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매업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도매업자로, 마약취급학술연구자·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연구자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자로 면허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품목·마약제조품목·마약제제품목·마약소분품목의 허가,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품목·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광역시·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마약 명예지도원·향정신성의약품 명예지도원 또는 대마명예지도원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종전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법률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제50조제3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으로 한다.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률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24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9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9> 까지 생략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9.8] [대통령령 제23095호, 2011.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2008.9.23>

제2조(마약 등)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6, 2008.9.23>

②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7과 같다.

④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신설 2003.7.30>

[제목개정 2003.7.30]

제3조(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①법 제3조제3호 단서, 동조제4호 단서 또는 동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 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6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향정신성의약품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1.16, 2008.9.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③법 제3조제8호 단서 또는 동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마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 수출입 또는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 삭제 <2003.7.30>

제5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2011.2.1>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참작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등을 참작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8.25]

제7조(구입서·판매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 및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 삭제 <2003.7.30>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마약의 투약)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3.7.30]

제13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2.1>

제14조(행정처분 및 명령)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에 의

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증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의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7조(마약류감시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1.1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약학관련 학과 또는 법학관련 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1년이상 약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7.30>

1.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적어 넣고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비자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의약관련 협회·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마약류관련 수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③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연임은 관련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법 제5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②법 제5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3.7.30]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9.23]

제20조(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 ①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식품위생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수출입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수출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20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법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21조(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몰수마약류의 처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공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로 지정되어 몰수마약류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23조(신고·고발)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5.11.16, 2008.9.23>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벌금액·추징금액과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2종이상의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30, 2008.9.23>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 양도의 승인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5.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6.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 및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와 대마초 재배보고의 접수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0.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2.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해촉 및 그 운영
1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14.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01.1.27]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8.9.23]

부칙 <제16884호,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제4조중 "마약법 제50조제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마약법 제50조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0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431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8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5호,2005.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4호,2006.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029호,2008.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질피페라진 및 감마부티로락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벤질피페라진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

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감마부티로락톤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605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5 - 메오 - 밉트(5 - MeO - MiPT) 등 21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 - 부탄디올(1,4 - 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65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타펜타돌(Tapentadol) 등

9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별표 8 (1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로 추가된 물질[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95호,2011.8.25>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1.1.27>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순번	품 명	화 학 명
1	아세토르핀(Acetorphine)	3-*O*-acetyltetrahydro-7*α*-(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ipavine 또는 O^3-acetyl-7,8-dihydro-7*α*-[1(R)-hydroxy-1-methylbutyl]-O^6-methyl-6,14-*endo*ethenomorphine 또는 6,7,8,14-tetrahydro-7*α*-(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ipavine-3-acetate 또는 5-acetoxy-1,2,3,3a,8,9-hexahydro-2*α*-[1(R)-hydroxy-1-methylbutyl]-3-methoxy-12-methyl-3,9a-etheno-9,9b-iminoethanop-henanthro[4,5-bcd]furan
2	벤질모르핀 (Benzylmorphine)	3-Benzylmorphine
3	코카인(Cocaine)	Methyl ester of benzoylecgonine
4	코독심(Codoxime)	Dihydrocodeinone-6-carboxymethyloxime
5	데소모르핀 (Desomorphine)	Dihydrodeoxymorphine 4,5-epoxy-3-hydroxy-N-methylmorphinan
6	디히드로모르핀 (Dihydromorphine)	
7	에크고닌(Ecgonine)	
8	에토르핀(Etorphine)	Tetrahydro-7*α*-(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ipavine 또는 7,8-dihydro-7*α*-[1(R)-hydroxy-1-methylbutyl]-O^6-methyl-6,14-*endo*etheno-morphin 또는 1,2,3,3a,8,9-hexahydro-5-hydroxy-2*α*[1(R)-hydroxy-1-methylbutyl]-3-methoxy-12-methyl-3,9a-etheno-9,9b-imino-ethanophenanthro-[4,5-bcd]-furan
9	헤로인(Heroin)	Diacetylmorphine
10	히드로코돈(Hydrocodone)	Dihydrocodeinone

11	히드로모르피놀 (Hydromorphinol)	14-Hydroxydihydromorphine
12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Dihydromorphinone
13	메칠데소르핀 (Methyldesorphine)	6-methyl-*delta*-6-deoxymorphine
14	메칠디히드로모르핀 (Methyldihydromorphine)	6-Methyldihydromorphine
15	메토폰(Metopon)	5-Methyldihydromorphinone
16	모르핀(Morphine)	
17	모르핀-엔-옥사이드 (Morphine-N-Oxide)	
18	미로핀(Myrophine)	Myristylbenzylmorphine
19	니코디코딘(Nicodicodine)	6-nicotinyldihydrocodeine 또는 Dihydorcodeine-6-nicotinate
20	니코모르핀(Nicomorphine)	3,6-dinicotinylmorphine 또는 Morphinedinicotinate
21	노르모르핀(Normorphine)	Demethylmorphine 또는 *N*-demethylatedmorphine
22	옥시코돈(Oxycodone)	14-hydroxydihydrocodeine 또는 Dihydroxycodeinone
23	옥시모르폰(Oxymorphone)	14-hydroxydihydromorphinone 또는 Dihydro-14-hydroxymorphinone
24	테바콘(Thebacon)	Acetyldihydrocodeinone 또는 Acetyldemethylodihydrothebaine
25	테바인(Thebaine)	
26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Acetyldihydrocodeine)	
27	코데인(Codeine)	3-Methylmorphine
28	디히드로코데인 (Dihydrocodeine)	
29	에칠모르핀(Ethylmorphine)	3-Ethylmorphine
30	니코코딘(Nicocodine)	6-nicotinylcodeine 또는 6-(pyridine-3-carboxylic acid)-codeine ester
31	노르코데인(Norcodeine)	*N*-demethylcodeine
32	폴코딘(Pholcodine)	Morpholinylethylmorphine 또는 *β*-4-morpholinylethylmorphine

33	모르핀 메소프로마이드 및 코데인-엔-옥사이드의 하나인 특히 모르핀-엔-옥사이드유도체를 포함한 기타 5원자가 니트르겐 모르핀 유도체	
34	디히드로에트르핀 (Dihydroetorphine)	

[별표 2] <개정 2011.2.1>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1	아세틸메사돌 (Acetylmethadol)	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2	알릴프로딘(Allylprodine)	3-allyl-1-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3	알파세틸메사돌 (Alphacetylmethadol)	*Alpha*-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4	알파메프로딘 (Alphameprodine)	*Alpha*-3-ethyl-1-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5	알파메사돌(Alphamethadol)	*Alpha*-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6	알파프로딘(Alphaprodine)	*Alpha*-1,3-d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7	아닐레리딘(Anileridine)	1-*para*-aminophen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2-(*p*-aminophenyl)-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8	벤제치딘(Benzethidine)	1-(2-benzyl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9	베타세틸메사돌 (Betacetylmethadol)	*Beta*-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10	베타메프로딘 (Betameprodine)	*Beta*-3-ethyl-1-methyl-4-propionoxypiperidine
11	베타메사돌(Betamethadol)	*Beta*-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12	베타프로딘(Betaprodine)	*Beta*-1,3-d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13	베지트라마이드 (Bezitramide)	1-(3-cyano-3,3-diphenylpropyl)-4-(2-oxo-3-propionyl-1-benzimidazolinyl)-piperidine
14	클로니타진(Clonitazene)	(2-*para*-chlorbenzyl)-1-diethylaminoethyl-5-nitrobenzimidazole

15	덱스트로모라마이드 (Dextro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l)butyl]morpholine 또는 *d*-3-methyl-2,2-diphenyl-4-morpholi-nobutyryl-pyrrolidine
16	디암프로마이드 (Diampromide)	*N*-[2-(methylphenethylamino)-propyl]p-ropionanilide
17	디에칠치암부텐 (Diethylthiambutene)	3-di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18	디메녹사돌(Dimenoxadol)	2-dimethylaminoethyl-1-ethoxy-1,1-di-phenylacetate 또는 2-dimethylaminoethyl-ethoxydiphenylacetate 또는 Dimethylamin-oethyldiphenyl-*a*-ethoxy-acetate
19	디메페프타놀 (Dimepheptanol)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20	디메칠치암부텐 (Dimethylthiambutene)	3-dim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21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Dioxaphetyl butyrate)	Ethyl-4-morpholino-2,2-diphenylbutyrate
22	디펜옥시레이트 (Diphenoxylate)	1-(3-cyano-3,3-diphenylprop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2,2-diphenyl-4-(4-carbethoxy-4-phenylpiperidino)butyronitrile
23	디피파논(Dipipanone)	4,4-diphenyl-6-piperidine-3-heptanone
24	에칠메칠치암부펜 (Ethylmethylthiambutene)	3-ethylm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25	에토니타젠(Etonitazene)	1-diethylaminoethyl-2-*para*-ethoxybenzyl-5-nitrobenzimidazole
26	에톡세리딘(Etoxeridine)	1-[2-(2-hydroxyeth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27	펜타닐(Fentanyl)	1-phenethyl-4-*N*-propionylanilinopiperi-dine
28	푸레치딘(Furethidine)	1-(2-tetrahydrofurfuryl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29	히드록시페치딘 (Hydroxypethidine)	4-*meta*-hydroxyphenyl-1-meth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

		methyl-4-(3-hydroxy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30	이소메사돈(Isomethadone)	6-dimethylamino-5-methyl-4,4-diphenyl-3-hexanone
31	케토베미돈(Ketobemidone)	4-*meta*-hydroxyphenyl-1-methyl-4-propionylpiperidine 또는 4-(*m*-hydroxyphenyl)-1-methyl-4-piperidyl ethyl ketone 또는 1-methyl-4-*meta*hydroxyphenyl-4-propionyl-piperidine
32	레보메소르판(Levomethorphan)	(-)-3-methoxy-*N*-methylmorphinan
33	레보모라마이드(Levo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l)butyl] morpholine 또는 *l*-3-methyl-2,2-diphenyl-4-morpholino-butyryl-pyrrolidine
34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3-hydroxy-*N*-phenacylmorphinan
35	레보르파놀(Levorphanol)	(-)-3-hydroxy-*N*-methylmorphinan
36	메타조신(Metazocine)	2'-hydroxy-2,5,9-trimethyl-6,7-benzomorphan 또는 1,2,3,4,5,6-hexahydro-8-hydroxy-3,6,11-trimethyl-2,6-methano-3-benzazocine
37	메사돈(Methadone)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ne
38	메사돈 제조중간체(Methadone Intermediate)	4-cyano-2-dimethylamino-4,4-diphenylbutane 또는 2-dimethylamino-4,4-diphenyl-4-cyanobutane
39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2-methyl-3-morpholino-1,1-diphenylpropanecarboxylic acid 또는 1,1-diphenyl-2-methyl-3-morpholino-propanecarboxylic acid
40	모르페리딘(Morpheridine)	1-(2-morpholino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41	노라시메사돌(Noracymethadol)	(±)-*alpha*-3-acetoxy-6-methylamino-4,4-diphenyl-heptane

42	노르레보르파놀 (Norlevorphanol)	(-)-3-hydroxymorphinan
43	노르메사돈(Normethadone)	6-dimethylamino-4,4-diphenyl-3-hexanone 또는 1,1-diphenyl-1-dimethylamino-ethyl-2-butanone 또는 1-dimethylamino-3,3,-diphenyl-hexanon-(4)
44	노르피파논(Norpipanone)	4,4-diphenyl-6-piperidino-3-hexanone
45	페치딘(Pethidine)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46	페치딘 제조중간체 에이 (Pethidine Intermediate A)	4-cyano-1-methyl-4-phenylpiperidine 또는 1-methyl-4-phenyl-4-cyanopiperidine
47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 (Pethidine Intermediate B)	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Ethyl-4-phenyl-4-piperidinecarboxylate
48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 (Pethidine Intermediate C)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49	페나독손(Phenadoxone)	6-morpholino-4,4-diphenyl-3-heptanone
50	페남프로마이드 (Phenampromide)	*N*-(1-methyl-2-piperidinoethyl)propionanilide 또는 *N*-[2-(1-methylpiperid-2-yl)ethyl]propionanilide
51	페나조신(Phenazocine)	2'-hydroxy-5,9-dimethyl-2-phenethyl-6,7-benzomorphan 또는 1,2,3,4,5,6-hexahydro-8-hydroxy-6,11-dimethyl-3-phenethyl-2,6-methano-3-benzazocine
52	페노모르판(Phenomorphan)	3-hydroxy-*N*-phenethylmorphinan
53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1-(3-hydroxy-3-phenylprop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phenyl-3-(4-carbethoxy-4-phenylpiperidine)-propanol
54	피미노딘(Piminodine)	4-phenyl-1-(3-phenylaminoprop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55	피리트라마이드(Piritramide)	1-(3-cyano-3,3-diphenylpropyl)-4-(1-piperidino)-piperidine-4-carboxylic acid amide 또는 2,2-diphenyl-4-[1-(4-carbamoyl-4-piperidino)]butyronitrile

56	프로헵타진(Proheptazine)	1,3-dimethyl-4-phenyl-4-propionoxyaz-acycloheptane 또는 1,3-dimethyl-4-phe-nyl-4-propionoxy-hexamethyleneimine
57	프로페리딘(Properidine)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isopropyl ester
58	라세메소르판 (Racemethorphan)	(±)-3-methoxy-*N*-methylmorphinan
59	라세모라마이드 (Race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l)butyl]morpholine 또는 dl-3-methyl-2,2-diphenyl-4-morpholi-nobutyryl-pyrrolidine
60	라세모르판(Racemorphan)	(±)-3-hydroxy-*N*-methylmorphinan
61	트리메페리딘 (Trimeperidine)	1,2,5-tr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62	프로피람(Propiram)	*N*-(1-methyl-2-piperidinoethyl)-*N*-2-pyridylpropionamide
63	드로테바놀(Drotebanol)	3,4-dimethoxy-17-methylmorphinan-6*β*,14-diol
64	디펜옥신(Difenoxin)	1-(3-cyano-3,3-diphenylpropyl)-4-ph-enyl-isonipecotic acid
65	알펜타닐(Alfentanil)	*N*-[1-(2-(4-ethyl-4,5-dihydro-5-oxo-1*H*-tetrazol-1-yl)ethyl)-4-(methoxy-methyl)-4-piperidinyl]-*N*-phenylpropan-amide
66	티리딘(Tilidine)	(±)-ethyl-*trans*-2-(dimethylamino)-1-phenyl-3-cyclohexene-1-carboxylate
67	프로폭시펜(Propoxyphene)	(±)-1,2-diphenyl-2-propionoxy-3-me-thyl-4-dimethyl amine
68	아세틸-알파-메칠펜타닐 (Acetyl-*alpha*-methyl-fentanyl)	*N*-[1-(*α*-methylphenethyl)-4-piperidyl] acetanilide
69	알파-메칠펜타닐 (*Alpha*-methylfentanyl)	*N*-[1-(*α*-methylphenethyl)-4-piperidyl] propionanilide
70	3-메칠펜타닐 (3-Methylfentanyl)	*N*-(3-methyl-1-phenethyl-4-piperidyl) propionanilide
71	서펜타닐(Sufentanil)	N-[4-(methoxymethyl)-1-[2-(2-thie-nylethyl]-4-piperidyl]-propionanilide

72	피이피에이피(PEPAP)	1-Phenethyl-4-phenyl-4-piperidinol acetate
73	엠피피피(MPPP)	1-Methyl-4-phenyl-4-piperidinol propionate
74	레미펜타닐(Remifentanil)	
75	타펜타돌(Tapentadol)	3-[(1R,2R)-3-(Dimethylamino)-1-ethyl-2-methylpropyl]phenol

[별표 3] <개정 2011.2.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1	4-브로모-2,5-디메톡시암페타민 (4-bromo-2,5-dimethoxyamp-hetamine)	4-bromo-2,5-dimethoxy-*a*-methy-lphenethyl amine
2	2,5-디메톡시암페타민 (2,5-dimethoxyamphetamine)	2,5-DMA
3	4-메톡시암페타민 (4-methoxyamphetamine)	PMA
4	5-메톡시-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	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5	4-메칠-2,5-디메톡시암페타민 (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6	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 (3,4-methylenedioxyamphet-amine)	
7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 (3,4,5-trimethoxyamphetamine)	
8	부포테닌(Bufotenine)	5-hydroxy-N,N-dimethyltryptamine
9	디에칠트립타민 (Diethyltryptamine)	DET
10	디메칠트립타민 (Dimethyltryptamine)	DMT
11	디엠에이취피(DMHP)	3-(1-,2-dimethylheptyl)-hydroxy- 7,8,9,10-tetrahydro-6,6,9-trimethyl-6H-dibenzo[b,d]pyr

	엘에스디-25(LSD-25)	
15	메스카린(Mescaline)	3,4,5-trimethoxyphenethylamine
16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N-methyl-3-piperidyl benz-ilate)	
17	파라헥실(Parahexyl)	3-hexyl-1-hydroxy-7,8,9,10-tetr-ahydro-6,6,9-trimethyl-6H-dibenzo[b,d]pyran
18	페이오트(Peyote)	
19	싸이로시빈(Psilocybin)	*o*-phosphoryl-4-hydroxy-N,N-di-methyltryptamine
20	싸이로신(Psilocyn)	4-hydroxy-N,N-dimethyltryptamine
21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 (티씨피, 피에취피, 피시이 등) [Phencyclidine analogues(TCP, PHP, PCE, etc)]	TCP : 1-[1-(2-thienyl)cyclohexyl] piperidine PHP : PCPY : 1-(1-phenylcyclohe-xyl)pyrrolidine PCE : N-ethyl-1-phenylcyclohexyl-amine
22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	(RS)-2-(methylamino)-1-phenyl-propan-1-one and its analogues
23	에트립타민(Etryptamine)	3-(2-aminobutyl)indole
24	4-엠티에이(4-MTA)	*α*-methyl-4-methylthiophenethyla-mine
25	크라톰(Kratom)	
26	5-메오-딥트(5-Meo-DiPT)	5-methoxy-N, N-diisopropyltyptamine
27	5-메오-밉트(5-MeO-MiPT)	5-methoxy-N-methyl-N-isopropyltryptamine
28	5-메오-디엠티 (5-MeO-DMT)	5-methoxy-N,N-dimethyltryptamine
29	밉트(MiPT)	N-methyl-N-isopropyltryptamine
30	5-메오-에이엠티 (5-MeO-AMT)	5-methoxy-*α*-methyltryptamine

	[JWH-018 and its analogues(JWH-073, JWH-250, etc)]	JWH-250 : 2-(2-methoxyphenyl)-1-(1-pentylindol-3-yl)ethanone
35	에이취유-210(HU-210)	1,1-dimethylheptyl-11-hydroxytetrahydrocannabinol
36	씨피-47497 및 그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C9 homologues of CP-47497)	(Z)-3-[4-(1,1-dimethylheptyl)-2-hydroxyphenyl]-cyclohexanol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

[별표 4] <개정 2011.2.1>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1	암페타민(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2	덱스암페타민 (Dex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3	레브암페타민 (Lev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4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2-methylamino-1-phenylpropane
5	하이드록시암페타민 (Hydoxyamphetamine)	dl-*p*-hydroxy-*α*-methyl-phenethylamine
6	메칠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methyl-2-phenyl-2-(2-piperidyl)acetate
7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3-methyl-2-phenylmorpholine
8	메크로콰론(Mecloqualone)	2-methyl-3-(2-chlorphenyl)-4(3H)-quinazolinone
9	메타콰론(Methaqualone)	2-methyl-3-*o*-tolyl-4(3H)-quinazoli-none
10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1-(1-phenylcyclohexyl)piperidine
11	펜프로포렉스(Fenrproporex)	N-2-Cyanoethylamphetamine
12	케치논(Cathinone)	(-)-*α*-aminopropiophenone
13	2,5-디메톡시-4-에칠-암페타민	DOET dl-2,5-dimethoxy-4-ethyl-*α*-dimeth-yl phenylethylamine
14	엠디엠에이(MDMA)	dl-3,4-methylenedioxy-N,*α*-dimethyl-phenylethylamine
15	페네틸린(Fenetylline)	dl-3,7-dihydro-1,3-dimethyl-7-(2-[(1-methyl-2-phenylethyl)amino]ethyl)-1H-purine-2,6-dione
16	엔-에칠-암페타민	dl-N-ethyl-*α*-methylphenylethylamine
17	펜캄파민(Fencamfamin)	dl-N-ethyl-3-phenylbicyclo(2,2,1)-h-eptan-2-amine
18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N-benzyl-N,*α*-dimethylphenethylamine
19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20	지페프롤(Zipeprol)	*α*-(*α*-methoxybenzyl)-4-(*β*-methoxy-p

		henethyl)-1-piperazineethanol
21	2씨-비(2C-B)	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22	아민엡틴(Amineptine)	7-[(10,11-dihydro-5H-dibenzo[a,d]c-ycloheptene-5-yl)amino]heptanoic acid
23	살비아 디비노럼 (Salvia Divinorum)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24	케타민(Ketamine)	2-(2-Chl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25	디메칠암페타민 (Dimethylamphetamine)	1-phenyl-2-dimethylaminopropane 또는 2-dimethylamino-1-1phenylpropane
26	2씨-아이(2C-I)	2, 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27	벤질피페라진	Benzylpiperazine, N-Benzylpiperazine,1-Benzylpiperazine, 1-phenylmethyl piperazine 또는 4-Benzylpiperazine
28	엠씨피피(mCPP)	1-(3-chlorophenyl)piperazine
29	티에프엠피피(TFMPP)	1-(3-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30	엠이오피피(MeOPP)	1-(4-methoxyphenyl)piperazine
31	엠디비피(MDBP)	1-(3,4-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32	2씨-디(2C-D)	2,5-dimethoxy-4-methyl-phenethylamine
33	2씨-이(2C-E)	2,5-dimethoxy-4-ethyl-phenethylamine
34	2씨-티-2(2C-T-2)	2,5-dimethoxy-4-ethylthiophenethylamine
35	2씨-티-7(2C-T-7)	2,5-dimethoxy-4-propylthiophenethylamine
36	엠비디비(MBDB)	3,4-methylenedioxy-α-ethyl-N-methylphenethylamine
37	엠디디엠에이(MDDMA)	3,4-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38	엠디이에이(MDEA)	3,4-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39	비케이-엠비디비(bk-MBDB)	β-keto-N-methyl- 3,4-benzodioxolyl butanamine; Butylone
40	엠비지피(MBZP)	1-benzyl-4-methylpiperazine
41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 (p-fluorophenyl) piperazine)	1-(4-fluorophenyl)piperazine

[별표 5]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다만, 바르비탈산 유도체와 치오바르비탈산 유도체 및 이의 분자화합물을 포함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1	아로바르비탈(Allobarbital)	5,5-diallylbarbituric acid
2	알페날(Alphenal)	
3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5-ethyl-5-(3-methylbutyl) barbituric acid
4	아프로바르비탈(Aprobarbital)	
5	바르비탈(Barbital)	5,5-diethylbarbituric acid
6	부라로바르비탈(Brallobarbital)	
7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5-*sec*-butyl-5-ethylbarbituric acid
8	부탈비탈(Butalbital)	5-allyl-5-isobutylbarbituric acid
9	부타리로날(Butallylonal)	
10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5-butyl-5-ethylbarbituric acid
11	싸이크로바르비탈(Cyclobarbital)	5-(1-cyclohexene-1-yl)-5-ethylbarbituric acid
12	싸이크로펜토바르비탈(Cyclopentobarbital)	
13	엔아릴푸로피말(Enallylpropymal)	
14	에트아로바르비탈(Ethallobarbital)	
15	헵타바르비탈(Heptabarbital)	
16	헵토바르비탈(Heptobarbital)	
17	헥세탈(Hexethal)	
18	헥소바르비탈(Hexobarbital)	
19	메타아비탈(Metharbital)	
20	메토헥시탈(Methohexital)	
21	메칠페노바르비탈(Methylphenobarbital)	5-ethyl-1-methyl-5-phenylbarbituric acid
22	나아코바르비탈(Narcobarbital)	
23	네알바르비탈(Nealbarbital)	
24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5-ethyl-5-(1-methylbutyl)barbituric acid

25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5-ethyl-5-phenylbarbituric acid
26	페타아비탈(Phetharbital)	
27	프로바르비탈(Probarbital)	
28	프로파리로날(Propallylonal)	
29	프로필바르비탈(Propylbarbital)	
30	스피로치오바르비탈 (Spirothionbarbital)	
31	테트라바르비탈(Tetrabarbital)	
32	치오펜탈(Thiopental)	
33	빈바르비탈(Vinbarbital)	
34	바로타룸(Barotalum)	
35	디베랄(Diberal)	
36	도르모비트(Dormovit)	
37	이도부탈(Idobutal)	
38	레포살 (Reposal, chlordiazepoxide)	7-chloro-2-(methylamino)-5-phenyl-3*H*-1,4-benzodiazepine-4-oxide
39	비닐비탈(Vinylbital)	5-(1-methylbutyl)-5-vinylbarbituric acid
40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al)	
41	시그모달(Sigmodal)	
42	펜테날(Pentenal)	
43	엘도랄(Eldoral)	
44	치아미랄(Thiamylal)	
45	크로르헥사돌(Chlorhexadol)	(2-methyl-4-(2,2,2-trichloro-1-hy-droxyethoxy)-2-pentanol)
46	구루테치미드(Glutethimide)	2-ethyl-2-phenylglutarimide
47	리저직산(Lysergic acid)	9,10-didehydro-6-methylergoline-8*β*-carboxylic acid
48	리저직산 아마이드 (Lysergic acid amide)	9,10-didehydro-6-methylergoline-8*β*-carboxamide
49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2-methyl-2-propyl-1,3-propanediol dicarbamate
50	메치푸리론(Methyprylon)	3,3-diethyl-5-methyl-2,4-piperidine-dione
51	썰폰디에칠메탄 (Sulfondiethylmethane)	

52	썰폰에칠메탄 (Sulfonethylmethane)	2,2-bis(ethylsulfonyl)butane
53	썰폰메탄(Sulfonmethane)	2,2-bis(ethylsulfonyl) propane
54	펜타조신(Pentazocine)	1,2,3,4,5,6,-hexahydro-6,11-dimethyl-3-(3-methyl-2-butenyl)-2,6-methano-3-benazocine-8-ol
55	아릴이소프로필아세칠우레아 (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2-isopropyl-4-pentenoyl) urea
56	브롬디에칠아세칠우레아 (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a*-bromo-*a*-ethylbutyryl) urea
57	브롬바레릴우레아 (Bromvalerylurea)	Bromisoval(*a*-bromoisovaleryl) urea
58	부프레노르핀(Buprenorpine)	21-cyclopropyl-7-alpha-[(S)-1-hydroxy-1,2,2-trimethylpropyl]-6,14-endo-ethano-6,7,8,14-tetrahydrooripavine
59	에프타조신(Eptazocine)	(1s)-1,4-dimethyl-10-hydroxy-2,3,4,5,6,-hexa-hydro-1,6-methano-1H-4-benzazonine
60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5-(*o*-fluorophenyl)-1,3-dihydro-1-methyl-7-nitro-2H-1,4-benxodiazepine-2-one

[별표 6] <개정 2011.2.1>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1	알프라졸람(Alprazolam)	8-chloro-1-methyl-6-phenyl-4H-1,2,4-triazolol[4,3-a][1,4]benzodiazepine
2	암페프라몬(Amfepramone)	2-(diethylamino)-1-phenyl-1-propanone
3	브로마제팜(Bromazepam)	7-bromo-1,3-dihydro-5-(2-pyridinyl)-2H-1,4-benzodiazepin-2-one
4	브로티졸람(Brotizolam)	2-bromo-4-(2-cholrophenyl)-9-methyl-6H-thine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5	부토르파놀(Butorphanol)	Levo-N-cyclobutylmethyl-6,10α,β-dihydroxy-1,2,3,9,10α-hexahydro-(4H)-10,4α-iminoethanophenanthrene
6	카마제팜(Camazepam)	7-chloro-1,3-dihydro-3-hydroxy-1-methyl-5-phenyl-2H-1,4-benzodia-zepin-2-one dimethylcarbamate
7	케친(Cathine)	Norpseudoephedrined-threo-2-amino-1-hydroxy-1-phenylpropane(다만, 이성체인 Phenylpropanolamine 및 그 염은 제외한다)
8	클로랄비테인(Chloral betaine)	
9	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 hydrate)	2,2,2-trichloro-1,1-ethanediol
10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Chlordiazepoxide)	7-chloro-2-methylamino-5-phenyl-3H-1,4-benzodiazepin-4-oxide
11	클로바잠(Clobasam)	7-chloro-1-methyl-5-phenyl-1H-1,5-benzodiazepine-2,4(3H,5H)-dione
12	클로나제팜(Clonazepam)	5-(0-chlorophenyl)-1,3-dihydro-7-nitro-2H-1,4-benxodiazepin-2-one
13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7-chloro-2,3-dihydro-2,2-dihydroxy-5-phenyl-1H-1,4-benzodiazepine-3-carboxylic acid

14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5-0-chlorophenyl-7-ethyl-1,3-dihydor-1-methyl-2H-thieno[2,3-e]-1,4-diazepin-2-one
15	클록사졸람(Cloxazolam)	10-chloro-11b(0-chlorophenyl)-2,3,7,11b-tetrahydro-oxazolo-[3,2,-d][1,4]benzodiazepin-6(5H)-one
16	델로라제팜(Delorazepam)	7-chloro-5-(0-chl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17	디아제팜(Diazepam)	7-Chloro-1,3-dihydro-1-methyl-5-phenyl-2H-1,4-benzodiazepin-2-one
18	에스타졸람(Estazolam)	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19	에스크로비놀(Ethchlorvinol)	ethyl-β-chlorovinyl ethynyl carbinol
20	에치나메이트(Ethinamate)	1-ethynylcyclohexanol carbamate
21	에칠로프라제페이트 (Ethyl Loflazepate)	Ethyl-7-chloro-5(0-fluorophenyl)2,3-dihydro-2-oxo-1H-1,4-benzodiazepine-3-carboxylate
22	에티졸람(Etizolam)	6-(5-chlorophenyl-8-ethyl-1-methyl-4H-S-triazolo[3,4-C]thieno[2,3-2][1,4]diazepine
23	펜플루라민(Fenfluramine)	N-ethyl-α-methyl-3-(trifluromethyl)benzenethanamine
24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methyl-1H-1,4-benzodiazepin-2(3H)-one
25	플루라제팜(Flurazepam)	(7-chloro-1,2-(diethylamino)ethyl-5-(0-flu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6	할라제팜(Hal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2,2-trifluoroethyl)2H-1,4-benzodiazepin-2-one
27	할록사졸람(Haloxazolam)	10-bromo-11b-(0-flurophenyl)-2,3-7,11b-tetrahydroxazolo[3,2-d][1,4]-benzodiazepin-6-(5H)-one
28	케타졸람(Ketazolam)	11-chloro-8,12b-dihydro-2,8-dimethyl-12b-phenyl-4H-[13-oxazino-

		[3,2-d][1,4]benzodiazepine-4,7(6H)-dione
29	레페타민(Lefetamine)	SPA (-)-1-dimethylamino-1,2-diphenylethane
30	로프라졸람(Loprazolam)	6-(0-chlorophenyl-2,4-dihydro-2[(4-methyl-1-piperazinyl)methylene]-8-nitro-1H-imidazo[1,2-*a*][1,4]benzodiazepin-1-one
31	로라제팜(Lorazepam)	7-Chloro-5-(0-chlorophenyl)-1,3-dihydro-3-hydroxy-2H-1,4-benzodiazepin-2-one
32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7-chloro-5-(*o*-chlorophenyl)-1,3-dihydro-3-hydroxy-1-methyl-2H-1,4-benzodiazepin-2-one
33	마진돌(Mazindol)	5-(p-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1-*a*]isoindol-5-ol
34	메다제팜(Medazepam)	7-chloro-2,3-dihydro-1-methyl-5-phenyl-1H-1,4-benzodiazepine
35	메페노렉스(Mefenorex)	dl-N-(3-chloropropyl)-*a*-methylphenethylamine
36	미다졸람(Midazolam)	8-chloro-6-(2-fluorophenyl)-methyl-4H-imidazo(1,5-*a*)(1,4) benzodiazepine
37	니메타제팜(Nimetazepam)	1,3-dihydro-1-methyl-7-nitro-5-phenyl-2H-1,4-benzodiazepin-2-one
38	니트라제팜(Nitrazepam)	1,3-dihydro-7-nitro-5-phenyl-2H-1,4-benzodiazepine-2-one
39	놀라제팜 (별명 : 데메칠다이제팜) (Nord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H)-1,4-benzodiazepine-2-one
40	옥사제팜(Oxazepam)	7-chloro-1,3-dihydro-3-hydroxy-5-phenyl-2H-1,4-benzodiazepine-2-one
41	옥사졸람(Oxazolam)	10-chloro-2,3,7,11b-tetrahydro-2-methyl-11b-phenyl oxazolo[3,2-d][1,4]benzodiazepine-6-(5H)-one

42	옥시퍼어틴(Oxypertine)	5,6-dimethoxy-2-methyl-3-[2-(4-phenyl-1-piperazinyl)ethyl]-1H-indole
43	파르알데히드(Paraldehyde)	Paracetaldehyde
44	페몰린(Pemoline)	2-amino-5-phenyl-2-oxazolin-4-one 2-imino-5-phenyl-4-oxazolidinone
45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1,1-[2,2-bis(2,2,2-trichloro-1-hydroxy-ethoxy)methyl]-1,3-propanediyl bis(oxy) bis[2,2,2-trichloroethanol]
46	펜디메트라진(Phendimtrazine)	(+)-3,4-dimethyl-2-phenylmorpholine
47	펜터민(Phentermine)	α,α-dimethylphenethylamine
48	피나제팜(Pin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propynyl)-2H-1,4-benzodiazepine-2-one
49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Pipradrol(α,γ)]	1,1-diphenyl-1-(2-pipeidyl)-methanol
50	프라제팜(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1,3-dihydro-5-phenyl-2H-1,4-benzodiazepin-2-one
51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N,α-dimethylcyclohexaneethamine
52	피리칠디온(Pyrithyldione)	3,3-diethyl-2,4-(1H,3H) pyridinedione
53	피로발레론(Pyrovalerone)	1-(4-Methyl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54	테마제팜(Temazepam)	7-chloro-2,3-dihydro-3-hydroxy-1-methyl-5-phenyl-1H-1,4-benzodiazepin-2-one
55	테트라제팜(Tetrazepam)	7-chloro-5-(cyclohexen-1-yl)-1,3-dihydro-1-methyl-2H-1,4-benzodiazepin-2-one
56	트리아졸람(Triazolam)	8-chloro-6-(0-chlorophenyl)-1-methyl-4H-s-triazolo[4,3-a][1,4] benzodiazepine

57	조피클론(Zopiclone)	5-(4-methylpiperazine-1-yl)carbonyloxy-6-(5-chloro pyrid-2-yl)-7-oxo-5,6-dihydropyrrolo[3,4-b]pyrazine
58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5-(2-flu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e-2-one
59	멕사졸람(Mexazolam)	10-chloro-11b-(2-chlorophenyl)-2,3,7,11b-tetrahydro-3-methyloxazolo[3,2-d][1,4]benzodiazepin-6(5H) one
60	졸피뎀(Zolpidem)	(Methyl-4-phenyl)-2N,N,6-trimethylimidazo(1,2-a)pyridine-3-acetamide
61	아미노렉스(Aminorex)	2-amino-5-phenyl-2-oxazoline
62	메소카브(Mesocarb)	3-(α-methylphenethyl)-N-phenylcarbamoylsydnone imine
63	날부핀(Nalbuphine)	
64	지에이치비(GHB)	γ-hydroxybutyric acid
6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67	쿠아제팜(Qu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2,2,2-trifluoroethyl)-2H-1,4-benzodiazepine-2-thione
68	프로포폴(Propofol)	2,6-diisopropylphenol

[별표 7] <개정 2008.12.31>

법 제2조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관련)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법 제2조제4호 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8] <개정 2011.2.1>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관련)

○원료물질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염류로 한다.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시마다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 (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킬로그램(3,800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킬로그램(5,700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킬로그램(1,900리터)
16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	
17	1,4-부탄디올(1,4-Butanediol)	
18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19	초산페닐	1 킬로그램
20	벤질시아나이드	1 킬로그램
21	벤즈알데히드	4 킬로그램
22	메칠아민	1 킬로그램
23	에칠아민	1 킬로그램

(2 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및 2	<삭제>	

3	안스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4	에칠에텔(Ethyl ether)	1,400킬로그램(5,320리터)
5	삭제 <2011.2.1>	
6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7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8	메칠에칠케톤 (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1,460킬로그램(5,500리터)
9	<삭제>	
10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11	톨루엔(Toluene)	1,600킬로그램(6,000리터)

[별표 9]

과징금 산정기준(제15조관련)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의 경우

(단위 : 만원)

구 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수입)금액
1	6	2,000 미만
2	12	2,000 이상 ~ 5,000 미만
3	18	5,000 이상 ~ 7,000 미만
4	24	7,000 이상 ~ 10,000 미만
5	30	10,000 이상 ~ 20,000 미만
6	36	20,000 이상 ~ 30,000 미만
7	42	30,000 이상 ~ 40,000 미만
8	48	40,000 이상 ~ 50,000 미만
9	54	50,000 이상 ~ 60,000 미만
10	60	60,000 이상 ~ 70,000 미만
11	66	70,000 이상 ~ 80,000 미만
12	72	80,000 이상 ~ 100,000 미만
13	78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14	84	150,000 이상 ~ 200,000 미만
15	90	200,000 이상

2.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5만원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3만원

비 고

1.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0] <개정 2011.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금 액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1호	30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2호	500만원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300만원 다만, 이 호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
4.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4호	300만원
5.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법 제27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5호	500만원
6.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5호	300만원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6호	300만원
8.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7호	500만원
9.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7호	300만원
10.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8호	500만원
1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8호	300만원
12.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9호	300만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00018호, 2010.9.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제2조(한외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3>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제제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법 제2조제4호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1. 법 제2조제4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09.10.23>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2010.9.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의 장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자가치료에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진단서(입국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를 말한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7조(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5.10.17, 2006.5.23, 2008.10.31, 2010.9.1>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삭제<2006.7.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2008.10.31, 2009.10.23, 2010.9.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7.3>

④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23, 2006.7.3>

⑤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 2006.5.23, 2006.7.3>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⑥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2006.7.3, 2008.10.31>

⑦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재배지·재배면적·재배목적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에 한한다.<개정 2006.7.3>

⑧ 삭제<2008.10.31>

제9조(허가증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10조(지정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 삭제<2008.10.31>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마약류관리자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

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② 삭제<2008.10.31>

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8.10.31>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1.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17조(허가증 등의 반납 등) ①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당해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적어 넣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19조 삭제 <2003.11.17>

제20조(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마약취급자에게 발행·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작성·비치) ①법 제11조·제31조 및 영 제12조의2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대장
2. 마약류소매업자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가. 마약 :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대장

②법 제35조제2항·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③영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④마약류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8.10.31>

[전문개정 2003.11.17]

제22조(서명 등의 생략)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마약류취급자가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영 별표 6 및 영 별표 7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개정 2006.5.23, 2008.10.3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 : 관할 시·도지사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2008.10.31>

⑤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에 따른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 2008.10.31>

⑥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허가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제목개정 2008.10.31]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8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4.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전문개정 2003.11.17]

제27조(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상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28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함)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봉함증지로, 수입 또는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봉함은 그 봉함증지를 파손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꺼낼 수 없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④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봉함증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는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2. 제품명(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있는 명칭을 말하고 그 명칭이 실려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명칭을 말한다)
3. 제조번호
4. 중량·용량 또는 개수
5.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와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7. 저장방법·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8. 대한약전에 실려있지 아니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을 말한다)
9. 성상
10. 효능·효과
11.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

제31조(준용) 제30조에 규정된 것 외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8.10.31>

제32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1989년 1월 1일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4. 삭제<2003.11.17>
5.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당해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나.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인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③ 삭제<2008.10.31>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18조제2항 후단, 법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 삭제<2008.10.31>

제34조(품목허가증 등)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품목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마약류취급자의 상호·종별 및 허가번호
2. 제품명
3.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4. 품목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변경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수출입·제조 현황보고)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을 제조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생산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③법 제19조,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제36조(원료사용보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 반기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7조(도·소매 보고 등) ①법 제27조, 법 제29조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3>

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것
7. 제조소의 제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비치할 것
8. 제조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제품을 제조한 경우 별표 2의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할 것

제41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0.3.19>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48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47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31>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8.10.31>

④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0.31>

⑤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및 제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에 한한다)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한다)

4.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⑦시·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5.23, 2008.10.31>

제48조(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원료물질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원료물질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 2006.5.23>

③법 제51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7, 2006.5.23>

제48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마약류중독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중독 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그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0.31]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인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인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제51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

[본조신설 2008.10.31]

부칙 <제160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 허가관청은 2000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지정서 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감시원증·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증 또는 대마감시원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발급관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호,2003.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는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록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한외마약 등의 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제제" 및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입·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출입·제조품목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원료물질 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물질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연료물질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6.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고마약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2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200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5호·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8.10.31>

[별표 2]

손실허용기준(제40조제8호관련)

1. 주사제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액제류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소분분말제인 경우 5그램단위 이상은 0.2퍼센트 이하, 1그램단위는 0.4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당의정은 3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제 및 과립제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정제 및 캅셀제는 2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서방(徐放)정은 5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좌제는 4퍼센트 이하로 한다.
9. 패취(patch)제는 8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8.10.31>

행정처분기준(제43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연간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일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5. 경고처분을 2년 이내에 6회 이상 받을 경우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6.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월 이상 6월 이하의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월 이상 6월 이하의 취급업무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사항이 개별기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등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10. 행정처분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사법」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법 제44조제1항제1호가목	취급업무정지 6개	허가·지정취소		

반한 때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월			
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경 고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가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2호가목	허가취소			
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경 고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5.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 정지 6개월	허가·지정취소		
6.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8. 마약류취급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9.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취소	
10.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취소	
1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		경 고	취급업무정지 7일	취급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취소	허가·지정취소
나.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지정취소

		월		허가·지정취소	
1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지정취소	허가·지정취소
13.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지정취소	허가·지정취소
1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취소	허가·지정취소
15.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4조 및 이 규칙 제25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16.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저장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17.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	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때 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 나. 법 제2조제4호라목 및 마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무정지 15일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1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카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타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0.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허가취소			

2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22.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2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도매업자가 법 제20조, 법 제22조 또는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4. 마약류제조업자가 법 제23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25.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25조 및 이 규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26. 마약류도매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법 제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	취급업무정지 2개	취급업무정지 3개

27조 또는 법 제29조 및 이 규칙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월	월	월
27.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거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8.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29.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더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30.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법 제44조제1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	항제1호머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마목				
가. 제40조제1호를 위반하여 제제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나.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제조소 안에 둔 때		경 고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다. 제40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취급업무 정지 12개월
라. 제40조제5호·제8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한외마약을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생산·제조하여 다음에 해당된 때					
1)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20% 미만 과부족한 때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2)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					

치보다 10% 미만 과부족한 때					
3)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한 때		취급업무 정지 15일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4)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한 때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별표 2]의 손실허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음에 해당된 때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 미만 초과한 때				취급업무 정지 3개월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 이상 초과한 때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2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바. 제40조제6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때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취급업무 정지 3개월	취급업무 정지 6개월	취급업무 정지 12개월

3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3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점검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33.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버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허가·지정취소		
3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서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35. 그 밖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	법 제44조제1항제1호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한 때					

[별표 4] <신설 2008.10.31>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종 목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우편 등의 경우
1. 마약류취급자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	81,000원	90,000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31,000원	35,000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31,000원	35,000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12,000원	14,000원
3.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	40,000원	45,000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3,000원	15,000원
다. 마약류도매업자·대마재배자	13,000원	15,000원
4.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2,000원	14,000원
5.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재교부	25,000원	28,000원
6.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교부	10,000원	12,000원
7. 마약류의 수출·수입 또는 제조품목허가		
가. 안정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신 약	3,726,000원	4,140,000원
2)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927,000원	1,030,000원
3)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621,000원	690,000원

4)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14,000원	460,000원
나. 안정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신약	432,000원	480,000원
(2) 그 밖의 의약품	108,000원	120,000원
8. 마약류의 품목변경허가		
가. 안정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720,000원	800,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567,000원	630,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07,000원	230,000원
나. 안정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54,000원	60,000원
9.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	25,000원	28,000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향정신성의약품제외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① 업 소 명		② 생년월일	
③ 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제 품 명			
⑥ 원료약품의 분량			
⑦ 성 상			
⑧ 제 조 방 법			
⑨ 효 능 · 효 과			
⑩ 용 법 · 용 량			
⑪ 포 장 단 위			
⑫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⑬ 사용상의 주의사항			
⑭ 기준 및 시험방법			
⑮ 비 고(근거)			
⑯ 면 제 사 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의약품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임을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제 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의약품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임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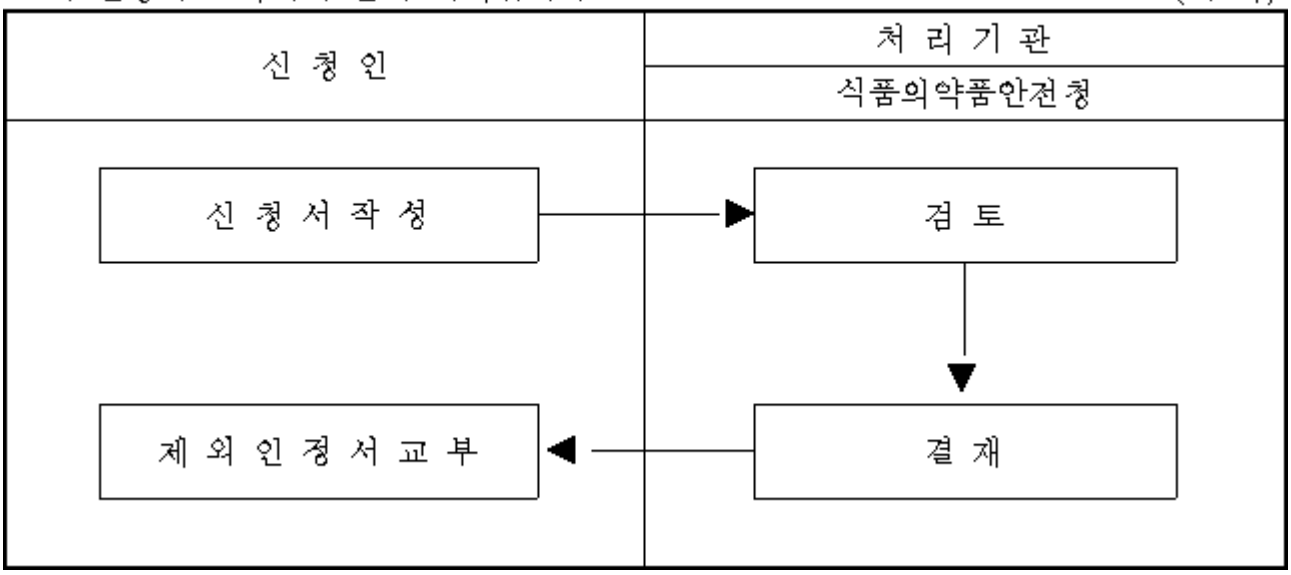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 구비서류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원료물질취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취 급 자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			
⑥ 취급의 목적 및 개요			
⑦ 취급하고자 하는 마약류·원료물질	품 명	수 량	
⑧ 취 급 기 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물질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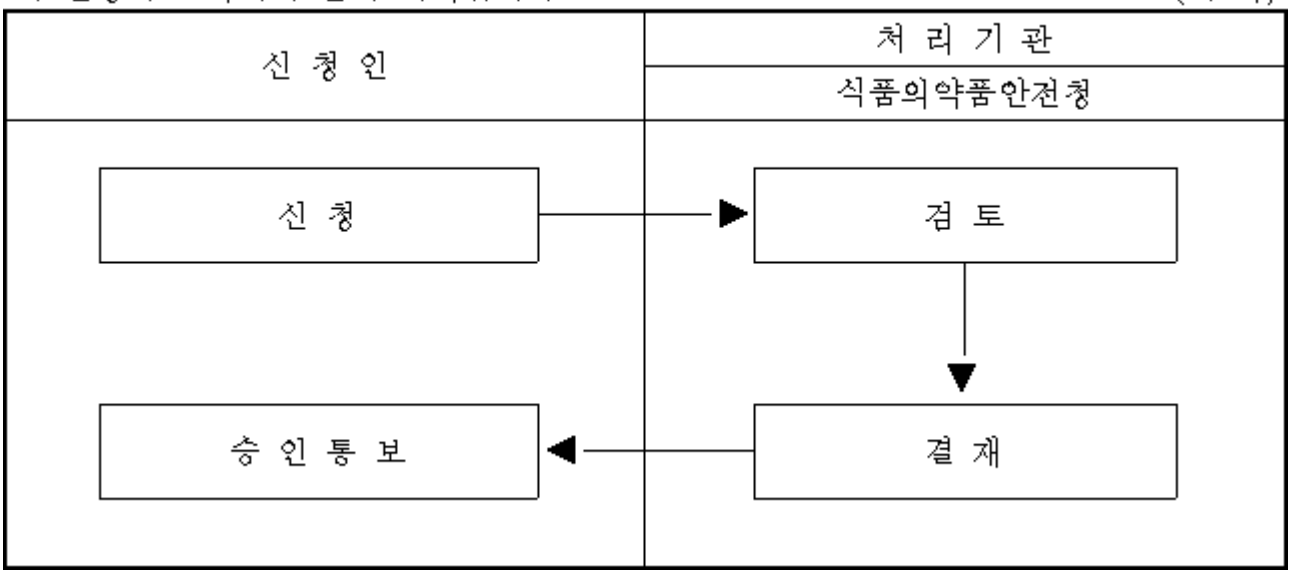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취급계획서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취 급 자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업 소 명		⑤ 대 표 자		
⑥ 소 속 부 서				
⑦ 소 재 지				
⑧ 취급의 목적 및 개요				
⑨ 취급하고자 하는 마약류	품 명		수 량	
⑩ 취 급 기 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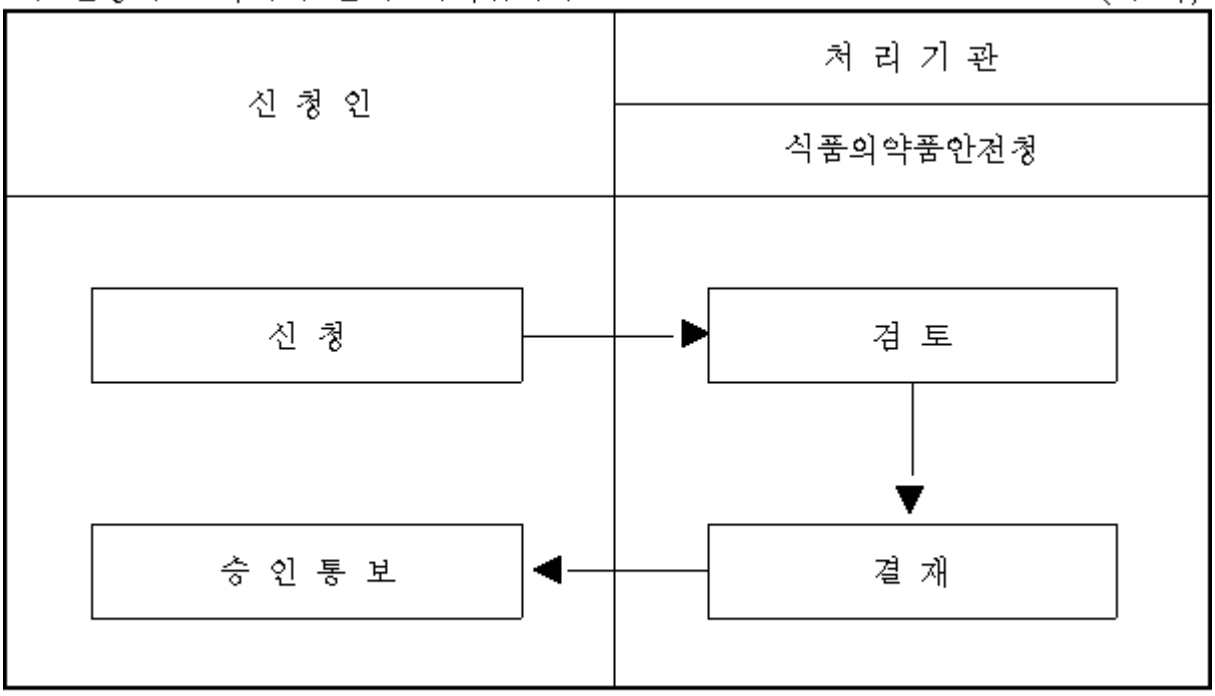
※ 구비서류: 뒤쪽 참조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구비서류: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합니다)의 장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자가치료에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진단서(입국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를 말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취급자	④ 허가번호		⑤ 허가종별	
	⑥ 업소명		⑦ 소재지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⑩ 재배지		⑪ 재배면적	
인수자	⑫ 허가번호		⑬ 허가종별	
	⑭ 성 명		⑮ 생년월일	
	⑯ 소재지			
⑰ 운반(보관·소지)기간				
⑱ 운반(보관·소지)장소			⑲ 인계장소	
⑳ 운반(보관·소지)목적				

㉑ 운반(보관·소지) 대마

종 류	수 량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의 운반·보관·소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 호

위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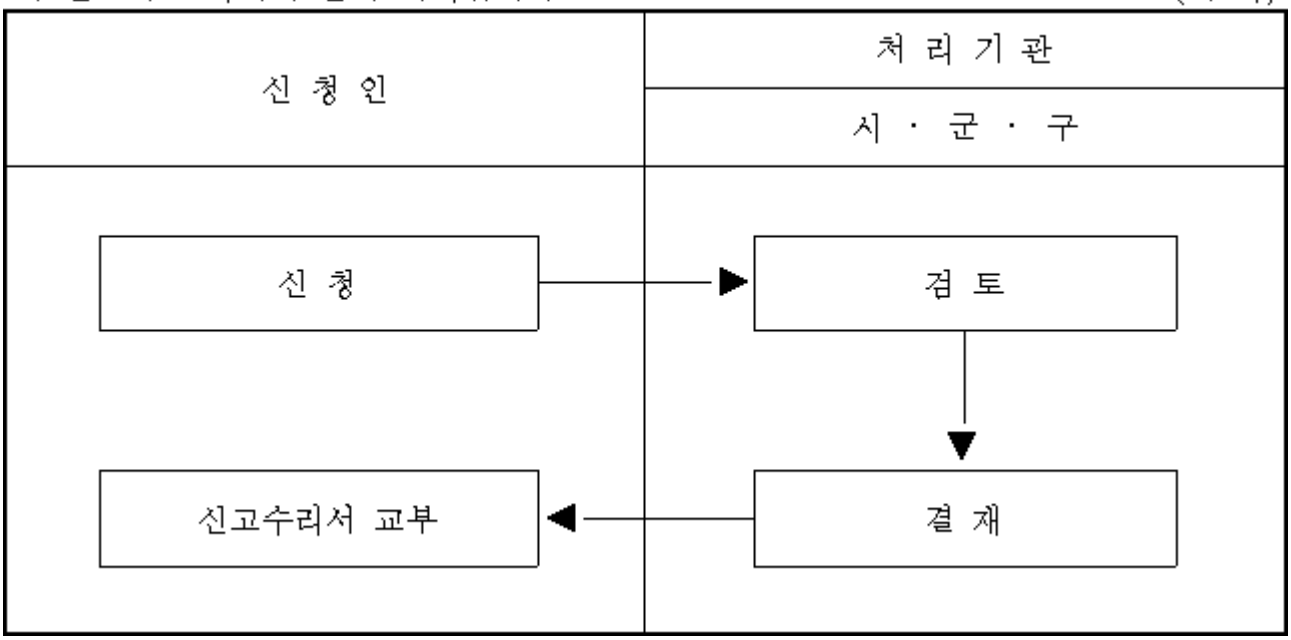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마약류취급자 □ 허 가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대표자)	① 허가(지정) 종별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관리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업소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				
관리자	⑦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주소				
	⑩ 약사면허번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 · 도 지 사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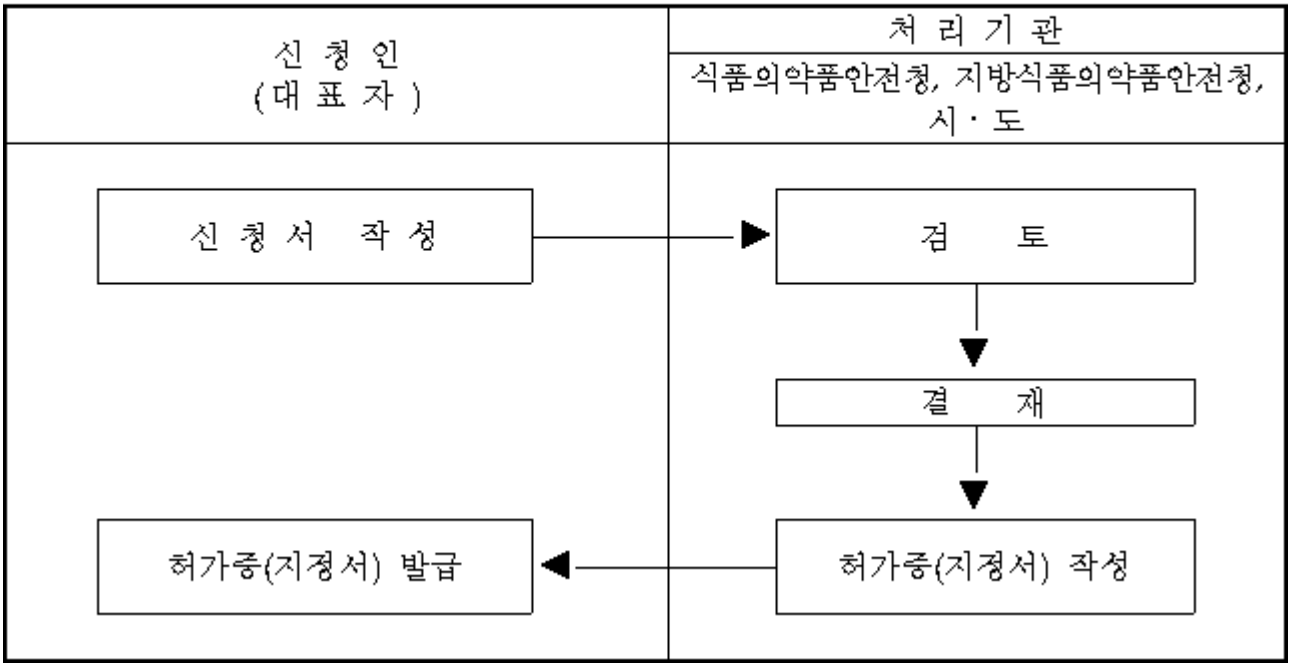
※ 구비서류: 뒤쪽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인 경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인 경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없 음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없 음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31> (앞쪽)

<table>
<tr><td colspan="4">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25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재 배 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재 배 면 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재배의 목적 및 개요</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허 가 조 건</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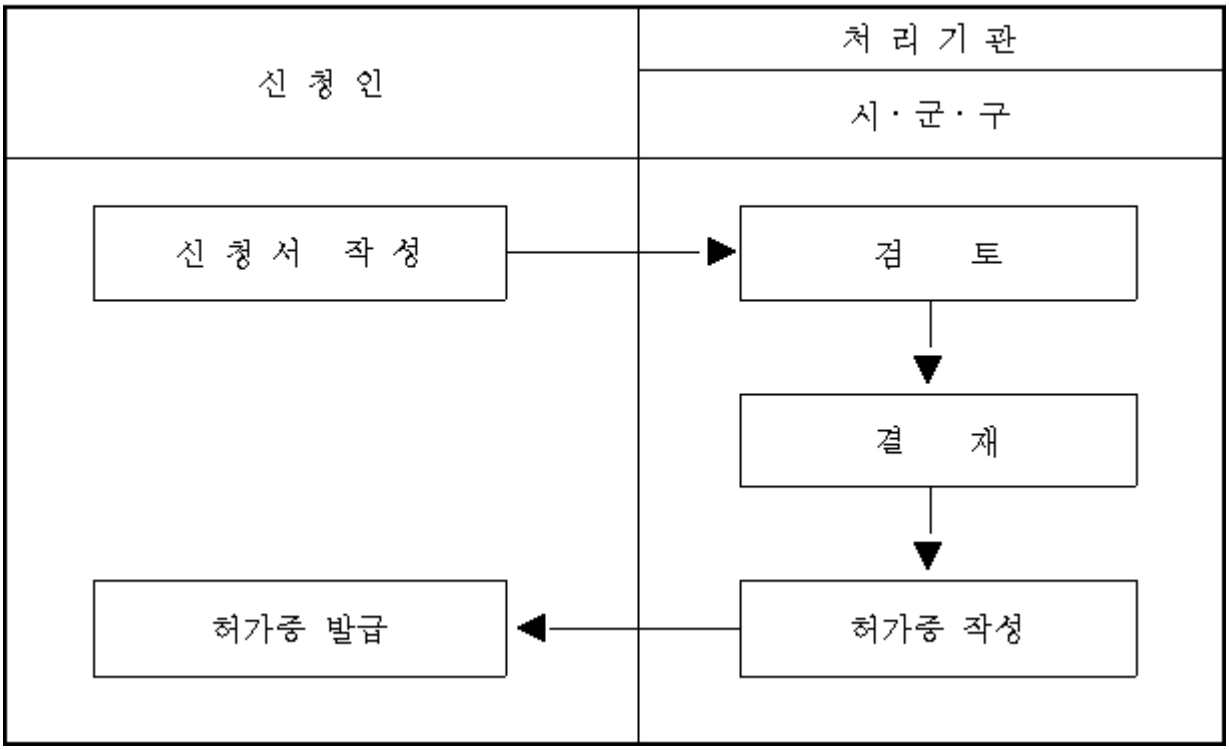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3">구비서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td><td colspan="2">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31,000원
방문 · 우편 등의 경우: 35,000원</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제 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1. 업소명:

2. 대표자: (생년월일:)

3. 소재지:

4. 종별:

5.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99mm×268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처분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제 호

마약류관리자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표자: (생년월일:)

3. 소재지:

4. 마약류관리자성명: (약사면허번호:)

5. 지정조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199mm×268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처분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 시 · 도 : 1일 · 시 · 군 · 구: 1일

① 취급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허가(지정)번호		④ 허가(지정) 연월일	
⑤ 업 소 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⑥ 허가 종별	
⑦ 소 재 지			

⑧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⑨ 변경 사유		⑩ 변경 연월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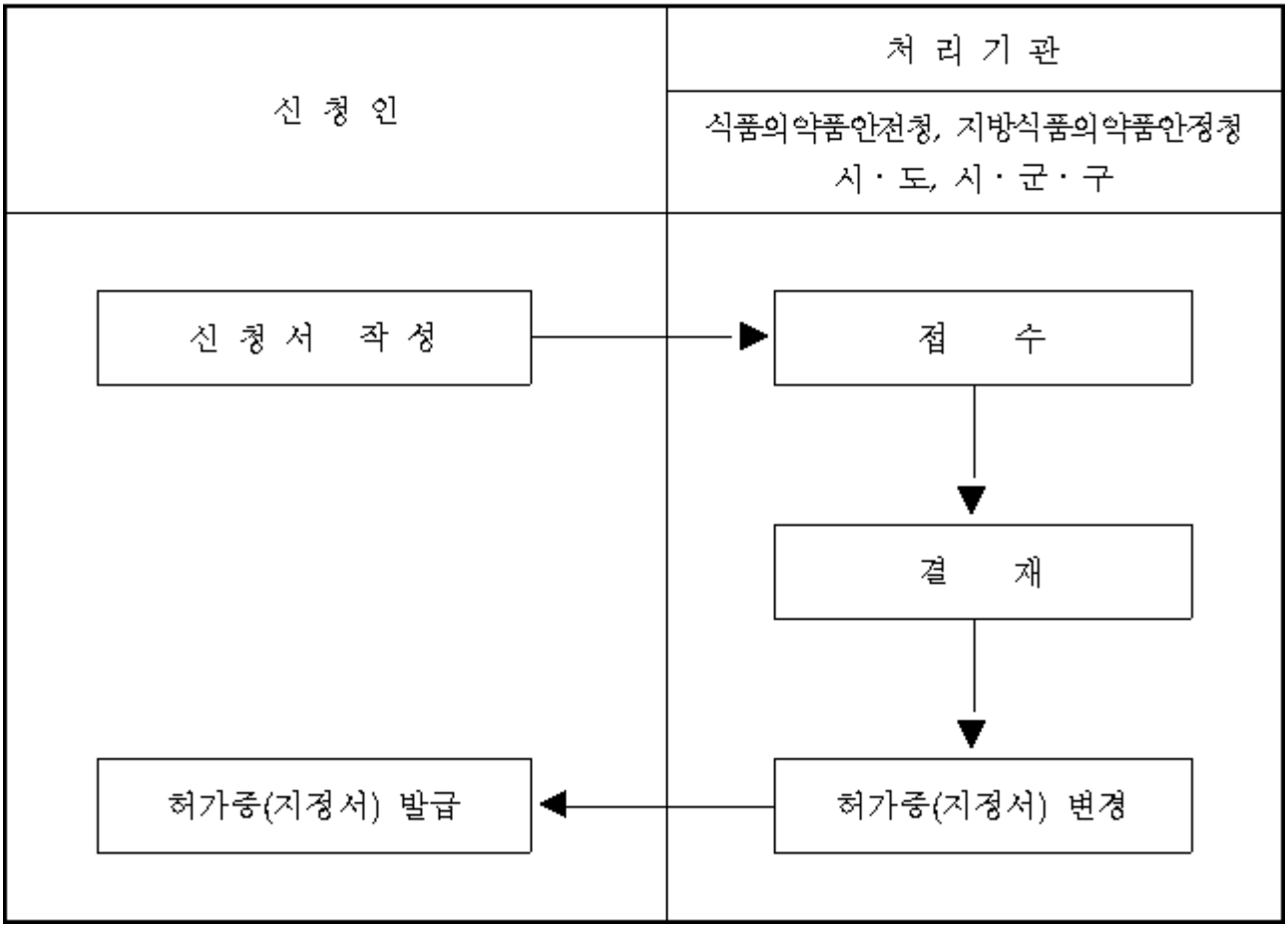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 시·도 : 1일 · 시·군·구: 1일
① 취급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허가(지정)번호		④ 허가(지정) 연월일	
⑤ 업 소 명		⑥ 허가 종별	
⑦ 소 재 지			
⑧ 재교부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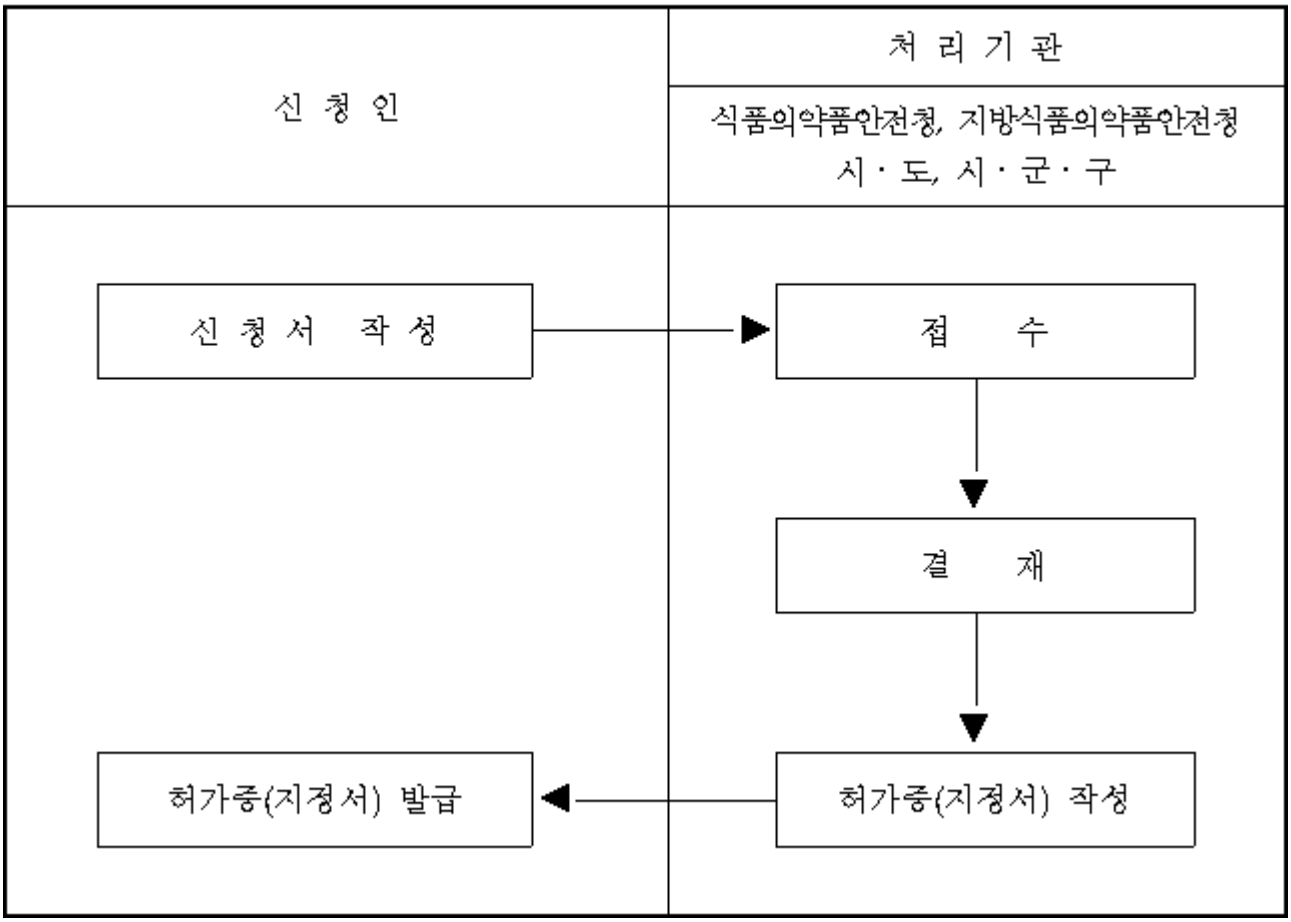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구분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우편 등의 경우
허가증	25,000원	28,000원
지정서	10,000원	12,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 폐 업 □ 휴 업 □ 종 료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7 일

① 허가번호		② 허가연월일	
③ 신고인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허가종별	
⑦ 소재지			
⑧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일자			
⑨ 사 유			

⑩ 소지 마약류	품 명	수 량	처 분 계 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귀하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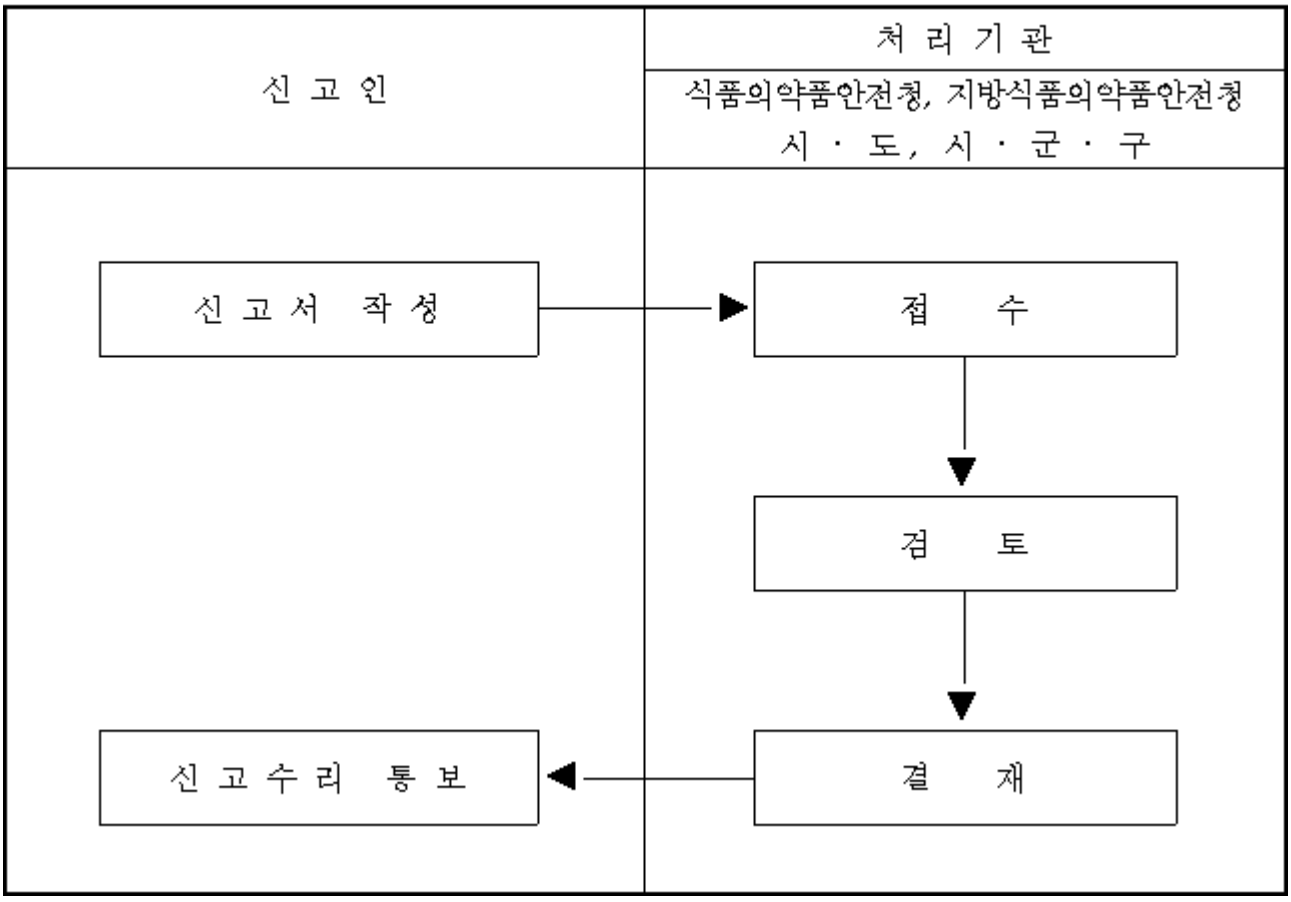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취급자 □ 사 망 □ 무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신고서				처리기간 7 일
① 허가(지정)번호		② 허가(지정)연월일		
③ 신고인(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⑥ 허가종별		
⑦ 소재지				
⑧ 사유				
⑨ 소지 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 사망 □ 무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하였(되었)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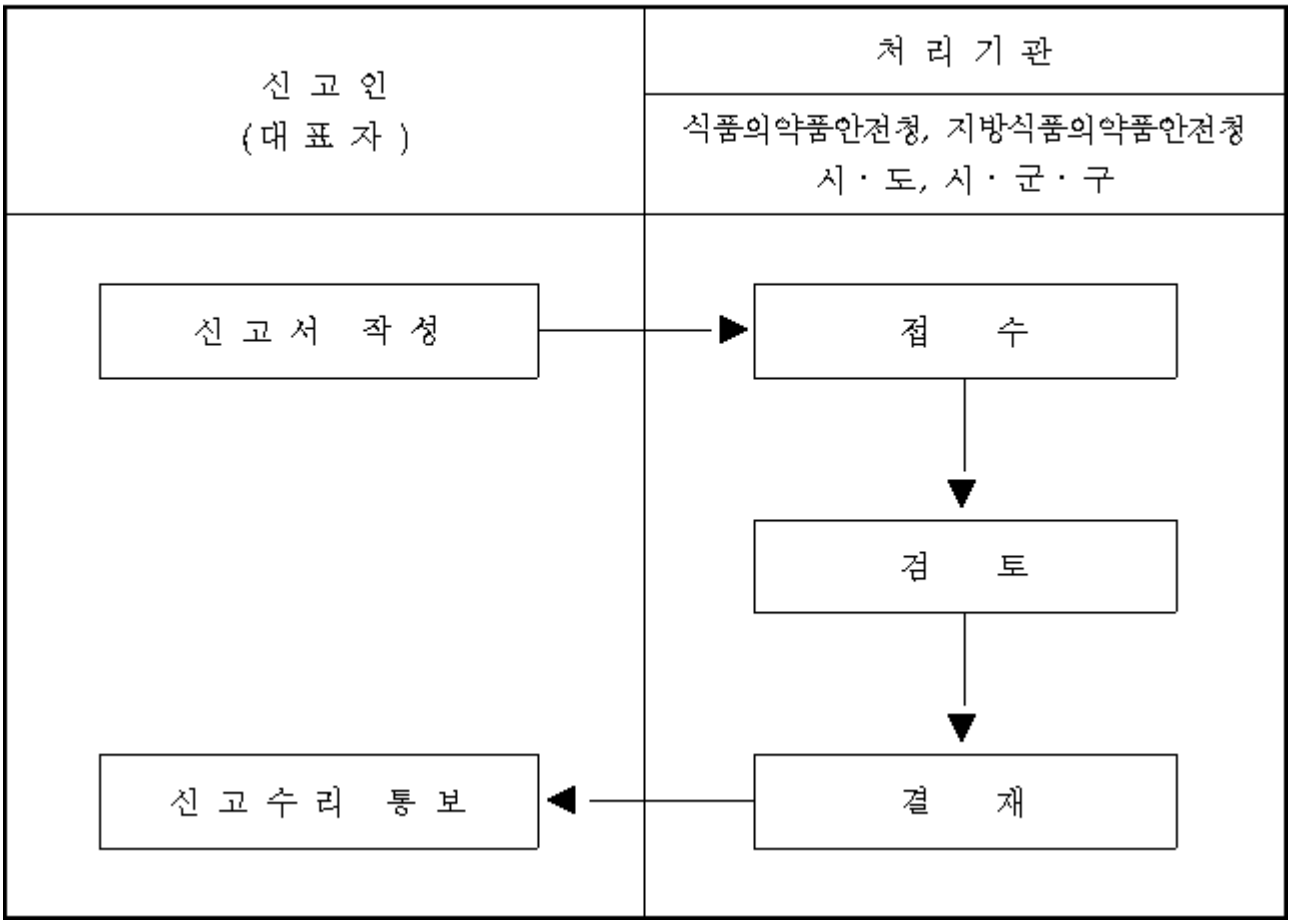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귀하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양수인	⑦ 허가번호		⑧ 허가종별		
	⑨ 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업소명				
	⑫ 소재지				
⑬ 양도하려는 마약류					
품 명				수 량	
⑭ 양도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계약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마약구입서

년 월 일

구입자의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품명	규격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주의사항

1. 이 구입서가 마약판매서와 사전에 분리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구입서는 구입자에게 마약을 인도 후 판매서와 분리하여 마약판매자가 보관합니다.
3. 구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4. 이 구입서의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5. 시·도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시·도지사 날인

제 호

마약판매서

년 월 일

판매자의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품명	규격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주의사항

1. 이 판매서가 마약구입서와 사전에 분리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판매서는 구입자가 마약을 인수 후 구입서와 분리하여 마약구입자가 보관합니다.
3. 판매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4. 이 판매서의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5. 시·도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0.31> (앞 쪽)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신청서					
허 가 번 호		허 가 종 별		허 가 일 자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용지소요매수					

구입 또는 판매예정의 마약 품명 및 수량

연 번	품 명	포장단위	수 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 고

신청당시의 재고마약의 품명 및 수량

연 번	품 명	포장단위	수 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구입서(판매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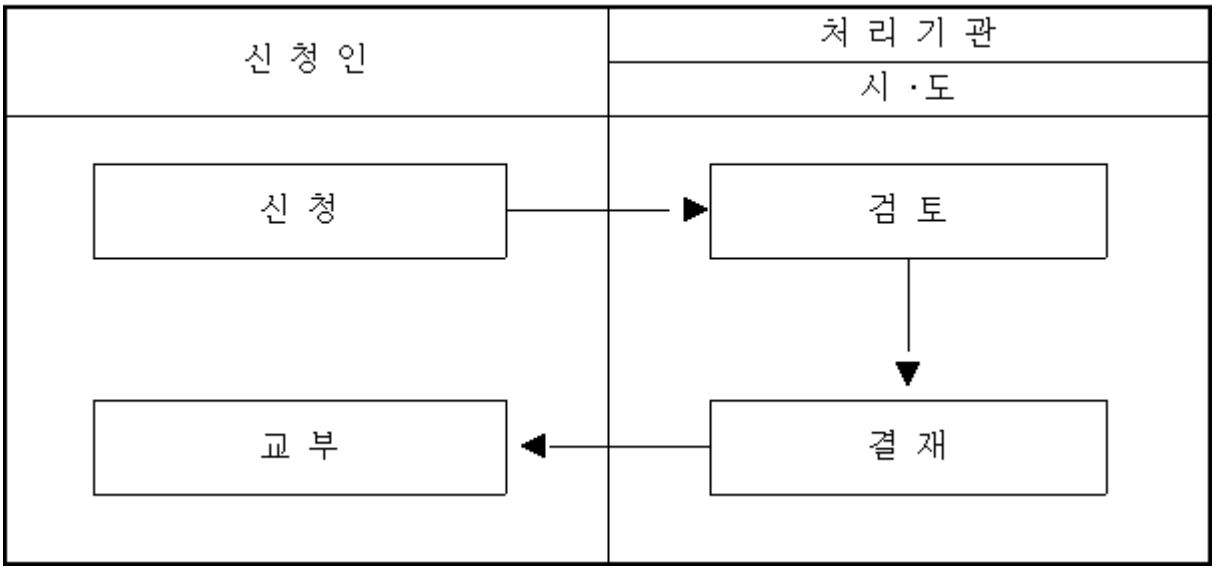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마약구입·판매서관리대장

(단위 : 매)

일 자		월초잔량	월중수입량	월중교부량	월말잔량
월	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마약구입서·판매서교부대장

일 자		수 령 자 내 역					
월	일	매 수	업 종	허가번호	업소소재지	업소명	성 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관리대상 마약류 :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 명 : ○허가번호 :

○단 위 : ○업 소 명 :

연번	일자	수입(구입)		판매(사용량)					제조량		재고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수량	업소명	소재지	허가종별	허가번호	품명	수량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관리대상 마약류 :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 명 :
○단 위 :

일 자	조제량	환자성명	처방전 발급기관	구입량	구입처	재고량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3.11.17>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품 명 :
○단 위 :

연번	일자	구 입		사 용 내 역						재고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투약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품 명 :
○단 위 :

연월일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학술연구사용기록서

① 허가번호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소재지			
⑥ 사용일			
⑦ 품명			
⑧ 수량			
⑨ 연구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의2호서식] <신설 2003.11.17>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연 번	일 시	점 검 내 용	이상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0.23>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① 허가(지정)번호		② 허가(지정)종별	
③ 업 소 명		④ 생년월일	
⑤ 소 재 지			
⑥ 대 표 자			
⑦ 사고 마약류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제조·수입자명
⑧ 사고 발생일			
⑨ 처 리 현 황			
⑩ 사고발생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정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0.23>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처리기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 시 · 도 : 2일 · 시 · 군 · 구: 2일
① 허 가 번 호		② 허 가 종 별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수량	비고
⑧ 폐기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10.23>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소 명			
소 재 지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 방법		폐기 장소		폐기 일시
폐기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0.23>

자격상실자의소지대마재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자격상실자와의 관계						
자격상실자	⑤ 허가번호		⑥허가연월일		⑦허가종별		
	⑧ 성명			⑨ 생년월일			
	⑩ 재배지			⑪ 재배면적			
⑫ 자격상실사유							
⑬ 허가조건							
⑭ 상속인등의 계속 재배여부							

⑮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대마

종 류	재배면적(수량)	재 배 지	비 고
섬유 또는 종자 채취기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봉함증지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허가번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소재지				
⑥ 현재 소유하고 있는 증지의 종별		⑦ 매수		

⑧ 증지소요내역

종 별	품 명	규 격	매수(수량)	비 고
제27호서식의 증지				
제28호서식의 증지				
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함증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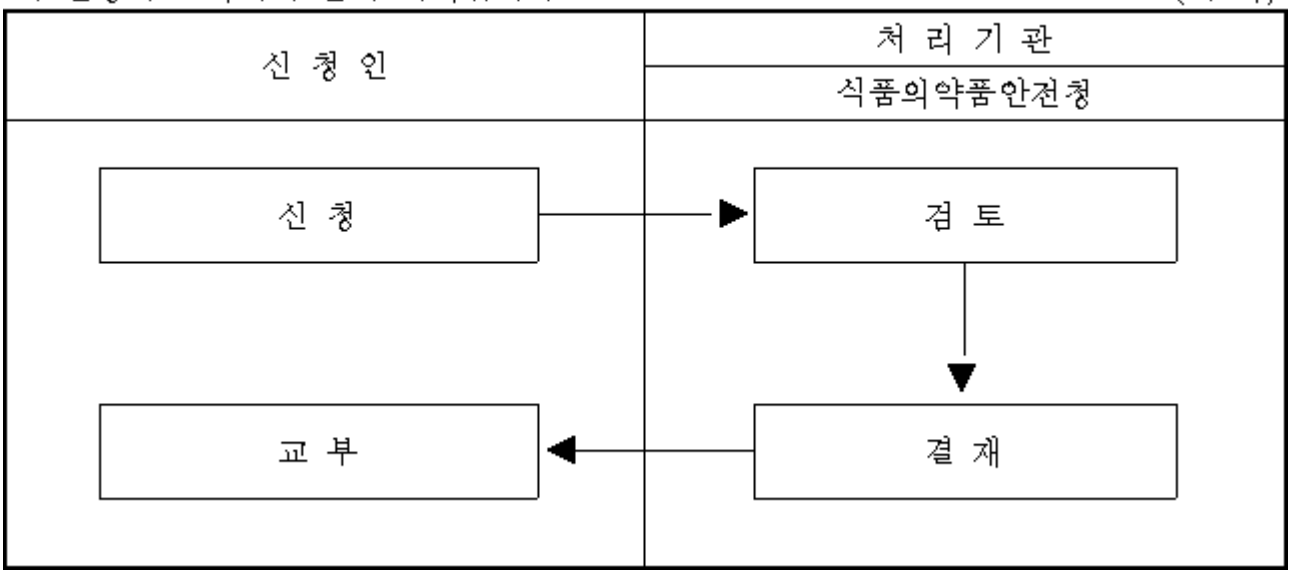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입상황보고서(수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생산완료보고서(제조의 경우에 한합니다)	봉함증지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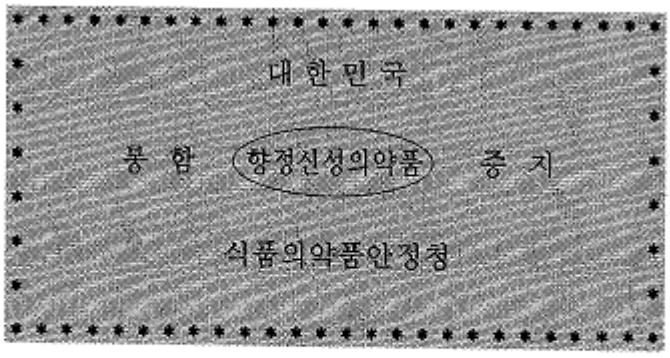
[별지 제27호서식]



10mm×6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주위에 적대를 두른 황색종이에 적색의 글자로 표기할 것

[별지 제28호서식]



130mm×5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주위에 청대를 두른 백색종이에 청색의 글자로 표기할 것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10.23>

봉함증지오손(파손)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소재지			
⑥ 오손(파손)봉함증지의 종별		⑦ 매수	
⑧ 오손(파손)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함증지의 오손(파손)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오손 또는 파손된 봉함증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8.10.31>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허 가 번 호		허 가 종 별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품 명		수 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함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 안정성·유효성심사 불필요 품목: 25일 2. 안정성·유효성심사 필요 품목: 70일 3.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10일

신청인	①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소재지			
⑥ 허가종별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⑦ 제 품 명				
⑧ 원료약품 및 그 분량				
⑨ 성 상				
⑩ 제조방법				
⑪ 효능·효과				
⑫ 용법·용량				
⑬ 사용상의 주의사항				
⑭ 포장단위				
⑮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⑯ 기준 및 시험방법				
⑰ 제조원(수입의 경우)				
⑱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 제조

품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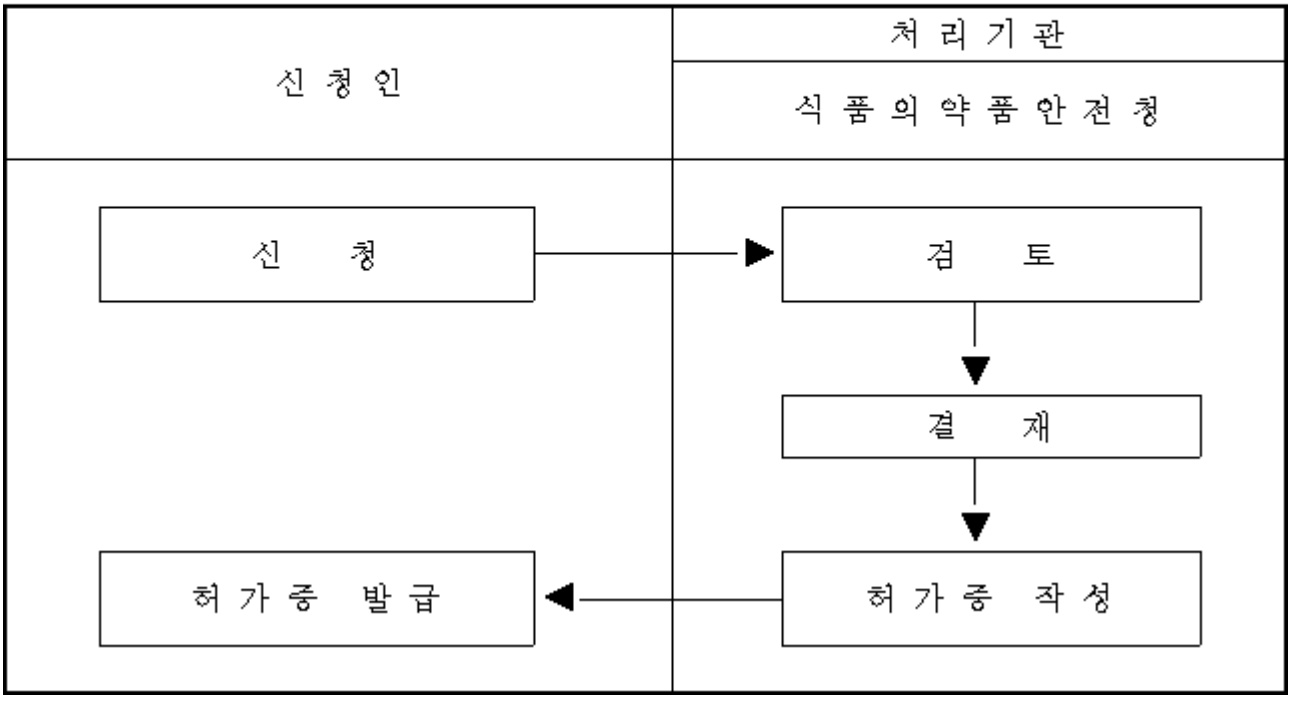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같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같은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4.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당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나.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허가번호				② 허가 연월일	
수입자	③대표자	한 글		④ 생년월일	
		영 문			
	⑤업소명	한 글			
		영 문			
	⑥소재지	한 글			
		영 문			
수출자	⑦ 대 표 자				
	⑧ 업 소 명				
	⑨ 소 재 지				
⑩ 품명 및 수량					
⑪ 수입예정일				⑫ 수입가격	
⑬ 운송방법				⑭ 수입항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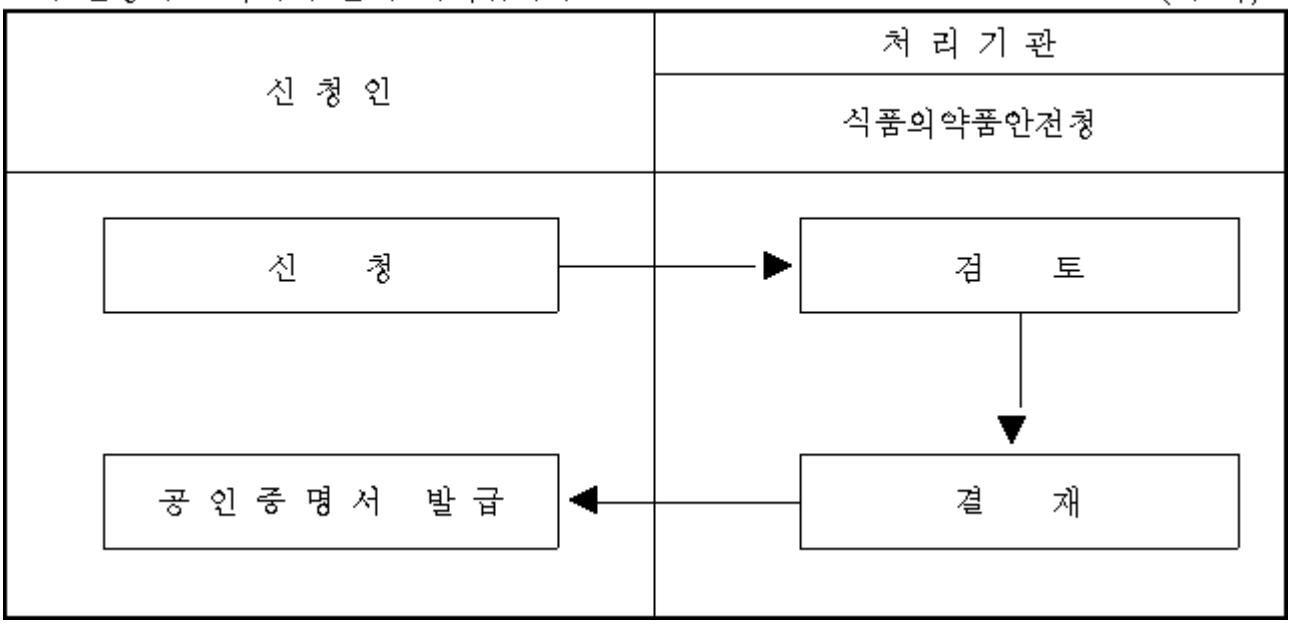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입요건확인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우편·방문 등의 경우
25,000원	28,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품목변경 한외마약 □ 제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아니한 품목: 20일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10일

① 신청인(대표자)		② 생년월일		
제조소 또는 영업소	③ 허가번호		④ 우편번호	
	⑤ 소재지			
	⑥ 업소명			
⑦ 품목허가번호		⑧ 제품명		

⑨ 변경내용

변경종별	허가된 사항	변경허가 받으려는 사항	사 유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 제조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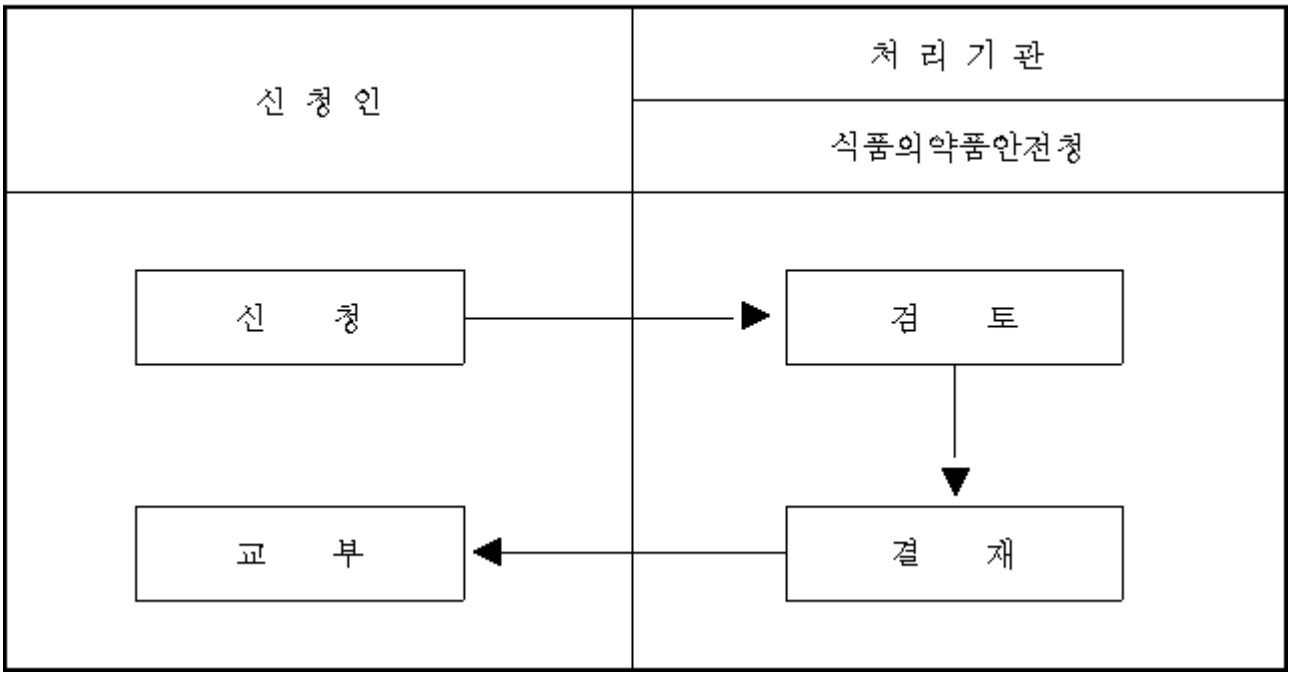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허가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제 호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품목허가증
한외마약 □제조

업허가번호 :

제 품 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 상	
제 조 방 법	
효 능 · 효 과	
용 법 · 용 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 장 단 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기 준 및 시 험 방 법	
제조원(수입의 경우)	
허 가 조 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한외마약의 수출입·제조품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처분 및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수출입상대국명			
⑧ 입항연월일		⑨ 통관연월일	

⑩ 수출입한 마약류

품 명	규 격	수 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의 수출입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마약류 수출입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생산 완료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생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사용된 마약류 원료		⑨ 수량	

⑩ 생산실적

품 명	포장단위	허가량	생산량	사고량	사고율(%)	제조번호 및 사용(유효)기한

⑪ 사고발생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 표 자		④ 생년월일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생산(수출입)실적								⑧ 누계			⑨ 사용한 마약류	
품 명	포장 단위	허가량	생산(수출입)량	사고량	사고율(%)	제조번호	사용기한	생산(수출입)량	생산(수출입) 단가	생산(수출입) 가격	품명	수량

⑩ 사고 발생사유

⑪ 마약류 판매사항

품 명	이월재고	생산(수출입)량	판매량	재고량	비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생산(수출입)·판매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류원료사용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사용한 마약류 원료

종 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⑧ 완제품 제조내역

종 별	품 명	포장단위	수 량	비 고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마약류 원료 재고

종 별	품 명	규 격	수 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원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10.23>

마약도·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약판매(사용)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연번	⑧ 품명	⑨ 구입처	⑩ 구입량	⑪ 판매처	⑫ 판매량(사용량)	⑬ 비고

⑭ 사용기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판매(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도지사 귀하

※ 판매처란은 마약류도매업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10.23>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연번	⑧ 품명	⑨ 재배량	⑩ 재배기간	⑪ 사용량	⑫ 재고량	⑬ 비고

⑭학술연구 사용기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초의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9.10.23>

대마재배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재배지			

⑧ 보 고 사 항

종 류	재배면적	생 산 현 황	수 량	비 고
기 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09.10.23>

대마폐기보고서

① 허가번호		② 허가종별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업소명			
⑥ 소재지			
⑦ 재배지			
⑧ 재배면적			

⑨ 폐기처분한 대마의 종류 및 수량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폐기방법			
폐기일시		폐기장소	

⑩ 입 회 자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의 폐기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0.3.19>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치료보호기관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④ 마약류취급자 성명		⑤ 의사면허번호	
⑥ 면허연월일			
⑦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의 품명			
⑧ 사용기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 중인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9.10.23>

수거(압류)증

허가번호		허 가 종 별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업소명	제품명	제 조 번 호	사 용 기 한	규격	수량	비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압류)합니다.

년 월 일

수거(압류)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105mm×14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제 호

마약류감시원증

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식품의약품안정청
시 · 도
시 · 군 · 구

55mm × 85mm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마약류감시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마약류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제 호

마약류명예지도원증

사 진

3.5cm×4.5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시 · 도
시 · 군 · 구

60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마약류명예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마약류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3.11.17>

원료물질제조대장

○품 명 : ○업소명 :

○단 위 : ○업 종 :

연 번	일 자	제조수량	재 고 량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08.10.31>

원료물질거래대장

○품 명 :　　○업소명 :

○단 위 :　　○업 종 :

연 번	일 자	구 입		사 용 (판 매)				재고량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수량	주 소	성 명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8.10.31>

<table>
<tr><td colspan="6">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등의 신고서</td></tr>
<tr><td rowspan="2">판매인</td><td>업 소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소 재 지</td><td></td><td>전 화</td><td></td></tr>
<tr><td rowspan="2">구매인</td><td>업 소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소 재 지</td><td></td><td>전 화</td><td></td></tr>
<tr><td rowspan="7">거 래
내 역</td><td>원료물질명</td><td colspan="3"></td></tr>
<tr><td>수 량</td><td colspan="3"></td></tr>
<tr><td>포장 형태</td><td colspan="3"></td></tr>
<tr><td>운반 또는 탁송된 주소(구매인 주소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td><td colspan="3"></td></tr>
<tr><td>판매(운송)일자</td><td colspan="3"></td></tr>
<tr><td>도난,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일자</td><td colspan="3"></td></tr>
<tr><td>도난,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의 구체적 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등이 있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법 무 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 관련 서류</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8호의2서식] <개정 2008.10.31> (앞 쪽)

<table>
<tr><td colspan="5">원료물질수입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10 일</td></tr>
<tr><td colspan="3">①수입자[신청인]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td><td colspan="3">②수출자(Exporter)

상호, 주소 ,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td></tr>
<tr><td colspan="3" rowspan="3">③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td><td colspan="3">④금액(Total Amount)</td></tr>
<tr><td colspan="3">⑤결제기간(Period of Payment)</td></tr>
<tr><td colspan="3">⑥ 가격조건(Terms of Payment)</td></tr>
<tr><td colspan="3">⑦원산지(Origin)</td><td colspan="3">⑧선적항(Port of Loading)</td></tr>
<tr><td>⑨HS부호
(HS Code)</td><td>⑩원료물질명 및 규격
(Description/Size)</td><td>⑪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td><td>⑫단 가
(Unit Price)</td><td colspan="2">⑬금 액
(Amount)</td></tr>
<tr><td colspan="6">⑭용도(Purpose of Use)</td></tr>
<tr><td colspan="6">⑮수입예정일(Date of Importation, expected)</td></tr>
<tr><td colspan="6">⑯승인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td></tr>
<tr><td colspan="6">⑰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td></tr>
<tr><td colspan="6">⑱승인번호(Approval No.)</td></tr>
<tr><td colspan="6">⑲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td></tr>
<tr><td colspan="6">「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료물질수입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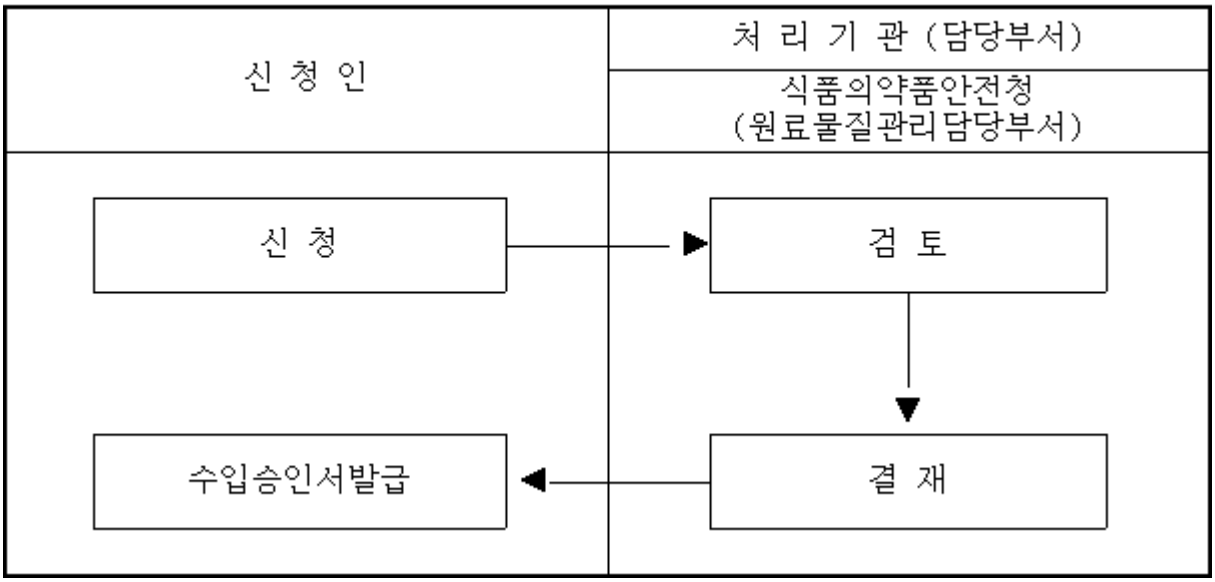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제 호
위의 신청사항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개정 2008.10.31> (앞 쪽)

<table>
<tr><td colspan="5">원료물질수출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10 일</td></tr>
<tr><td colspan="3">①수출자[신청인]무역업신고번호
(Exporter) (Notification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td><td colspan="3">②수입자(Importer)

상호, 주소 ,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td></tr>
<tr><td colspan="3" rowspan="3">③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상호, 주소,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td><td colspan="3">④금액(Total Amount)</td></tr>
<tr><td colspan="3">⑤결제기간(Period of Payment)</td></tr>
<tr><td colspan="3">⑥ 가격조건(Terms of Payment)</td></tr>
<tr><td colspan="3">⑦원산지(Origin)</td><td colspan="3">⑧도착항(Port of Dispatch)</td></tr>
<tr><td>⑨HS부호
(HS Code)</td><td>⑩원료물질명 및 규격
(Description/Size)</td><td>⑪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td><td>⑫단 가
(Unit Price)</td><td>⑬금 액
(Amount)</td><td></td></tr>
<tr><td colspan="6">⑭용도(Purpose of Use)</td></tr>
<tr><td colspan="6">⑮수출예정일(Date of Exportation, expected)</td></tr>
<tr><td colspan="6">⑯승인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td></tr>
<tr><td colspan="6">⑰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td></tr>
<tr><td colspan="6">⑱승인번호(Approval No.)</td></tr>
<tr><td colspan="6">⑲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td></tr>
<tr><td colspan="6">「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료물질수출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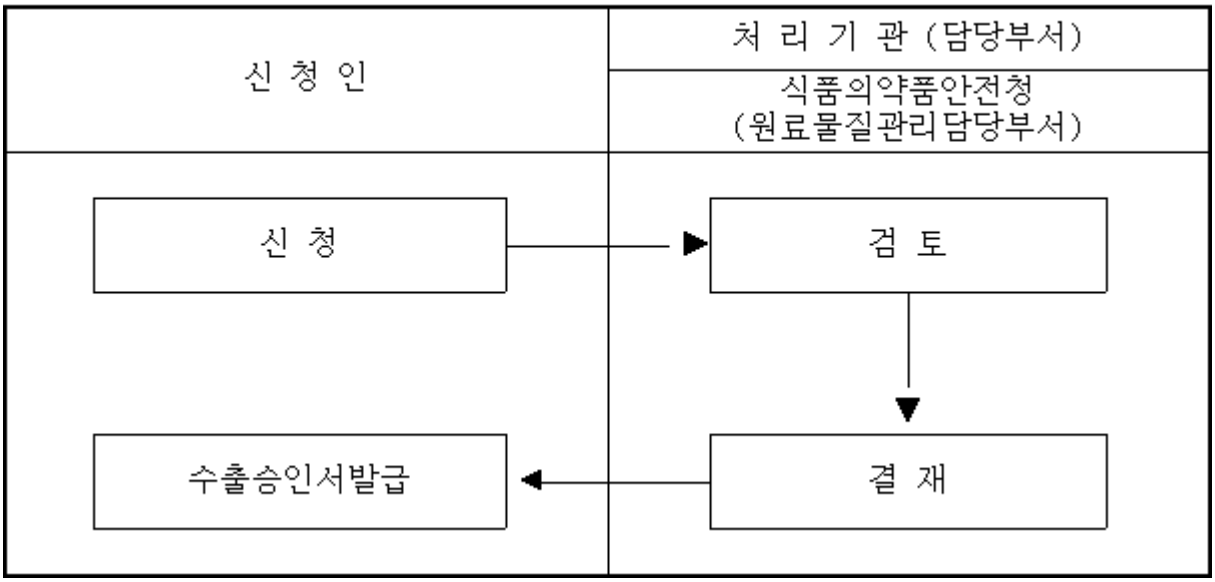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제 호
위의 신청사항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9.10.23>

제 호

몰수마약류 인계서

관계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직 업		⑤ 성별		⑥ 연령	
⑦ 인수·인계연월일						
⑧ 품명						
⑨ 인계량						
⑩ 몰수연월일			⑪ 몰수장소			
⑫ 사건의 개요						
⑬ 처벌사항						
⑭ 비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몰수마약류를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관서장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1. 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서로부터 인수하였을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 처벌사항은 죄명·적용법령 및 법조문과 처단명을 상기하십시오.
3. 인수량과 인계량이 상이할 때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상기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9.10.23>

몰수마약류인수증

인수번호	품 목	수 량	인수일자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 호로 인수한 몰수마약류를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인계관서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몰수마약류인수대장

번호 제 호

인수번호	인수연월일	품목	인수실수량	처분상황	인계관서명	인 수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10.23> (앞 쪽)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대 표 자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소 재 지				
	⑤ 허가번호		⑥ 허가종별		
⑦ 소요품목 및 수량					
⑧ 용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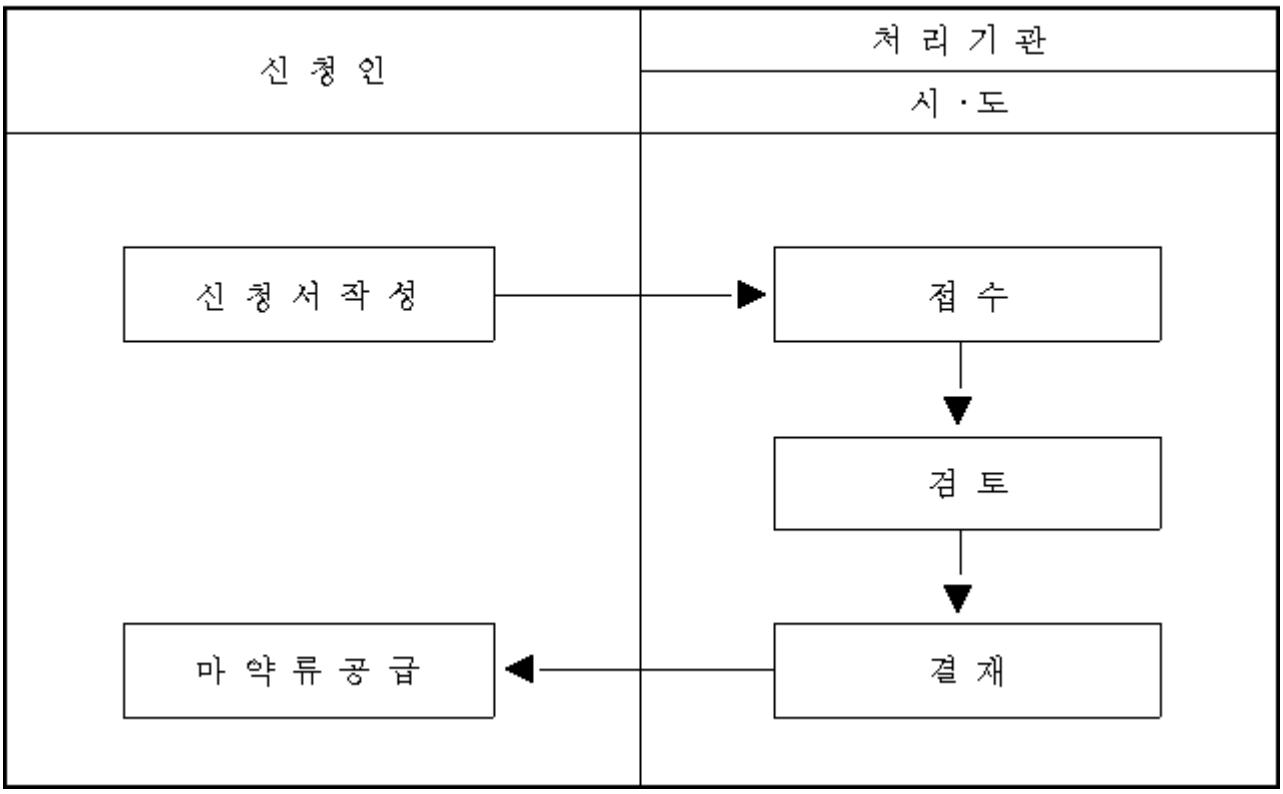
담당자 전화번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검역법

1. 검역법
2. 검역법 시행령
3.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0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검역소장은 군용(軍用)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제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는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0조(검역 장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하 "검역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제11조(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전자 검역)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의심자"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것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自家)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18>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

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23조(조건부 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18>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제26조(공중보건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제27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

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③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실시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외의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4장 보칙

제34조(수수료의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35조(비용 부담) 제16조 및 제17조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5.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846호 검역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4조 본문, 제29조제1항제8호, 제36조 및 제3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본문, 제10조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후단,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5호, 2010.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검역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부칙 <제22565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200만원
2.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100만원
4.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5호	2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6호	100만원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보건복지부령 제00035호, 201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2.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역 통보 등)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의 검역구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제6조(검역조사 등) ①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 신고서(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1) 선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항공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3) 열차·자동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부(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다.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운송수단의 장 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제출한다). 다만, 선의(船醫)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 오염지역인 최종 출발지 또는 최종 출항지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2)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라. 도보출입자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한다)

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나.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8조(전자 검역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검역소장이 전자 검역 신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오염지역인 최종 출항지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④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 세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로 한다.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격리 사실의 통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로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회항 등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하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회항·이동 지시서로 한다.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20조(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발급)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

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관인 날인)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을 찍어야 한다.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은 기술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7조(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응급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제30조(검역전산망 구축 및 이용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전산망을 구축하여 검역 업무를 전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과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역 통보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송수단별 신고서와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제출
4. 제8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 및 변경 통보
5. 제9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6. 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3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검역 장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검 역 장 소
부산항	1.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이상인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3초, 동경 129도07분13초 나. 북위 35도05분14초, 동경 129도07분45초 다. 북위 35도05분30초, 동경 129도07분19초 라. 북위 35도04분39초, 동경 129도06분47초 2. 북위 35도02분47.5초, 동경 129도03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852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3.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총톤수 3천톤 미만인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1분37초 나.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2분00초 다.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1분23초 라.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2분00초 4.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01분13.1초, 동경 128도54분21.8초 나. 북위 35도00분38.0초, 동경 128도55분07.0초 다. 북위 35도00분19.1초, 동경 128도55분12.1초 라. 북위 34도59분38.2초, 동경 128도51분27.6초 마. 북위 35도00분10.4초, 동경 128도51분18.9초 바. 북위 35도00분22.1초, 동경 128도52분28.5초 사. 북위 35도00분52.6초, 동경 128도52분20.9초
인천항	북위 37도21분37초, 동경 126도33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9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평택·당진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나.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다.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라.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군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7분52초 나. 북위 35도57분4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다.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5분52초 라. 북위 35도56분10초, 동경 126도27분52초

장항항	군산항 검역 장소와 같음
보령항	북위 36도11분3초, 동경 126도18분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대산항	북위 37도00분42.8초, 동경 126도17분18.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태안항	북위 36도55분58.3초, 동경 126도13분40.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 안의 해수면
목포항	북위 34도45분38초, 동경 126도20분2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완도항	북위 34도17분23초, 동경 126도49분0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여수항	1. 북위 34도39분11초, 동경 127도57분5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천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6분57초 나. 북위 34도44분36초, 동경 127도48분27초 다.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9분16초 라. 북위 34도42분41초, 동경 127도48분04초
광양항	여수항 검역 장소와 같음
마산항	북위 35도09분30초, 동경 128도36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진해항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통영항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 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천포항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옥포항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고현항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울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나.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다.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라.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마.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
포항항	1. 북위 36도07분15.8초, 동경 129도30분21.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8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6도05분37.3초, 동경 129도28분42.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대상선박으로써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3. 북위 36도03분18초, 동경 129도24분35.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4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다만, 도선면제선박으로써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동해·묵호항	북위 37도30분10초, 동경 129도09분5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북위 37도32분15초, 동경 129도07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삼척항	북위 37도25분55초, 동경 129도12분0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5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옥계항	북위 37도37분24초, 동경 129도05분21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속초항	북위 38도11분36초, 동경 128도37분5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제주항	1. 북위 33도32분25초, 동경 126도31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2. 북위 33도32분00초, 동경 126도31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4분00초, 동경 126도34분4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수면
인천 국제공항	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청주 국제공항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30분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김포 국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무안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을 형성하

국제공항	는 구역
김해 국제공항	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대구 국제공항	북위 35도54분, 동경 128도39분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양양 국제공항	북위 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제주 국제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33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

[별표 2]

소독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가스소독기준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HCN)	2g/㎥ 이상	2시간 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CH_3Br)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설파릴 플루라이드(SO_2F_2)	48g/㎥ 이상	24시간 이상	벌레

※ 벌레잡기 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벌레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보건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가스소독을 한다.

2. 그 밖의 소독 기준 및 방법

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 및 살균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3. 수출화물의 소독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의 소독은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모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2.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총톤수	수수료
500톤 이하	20,000원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30,000원
1,000톤 초과 ~ 10,000톤 이하	50,000원
10,000톤 초과 ~ 20,000톤 이하	70,000원
20,000톤 초과	100,000원

3.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가. 예방접종 수수료로 백신료와 접종비용을 징수한다.

나.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한다.

다. 접종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무료

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료를 제외한 금액

4. 소독 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한다.

5. 검사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따른다.

6. 그 밖의 수수료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검역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실비만 징수한다.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신청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
Application of Skipping the Examination of Quarantine

(앞 쪽)

신고번호 The number of report		심사자 The inspector	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	즉시 Immediately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주소 Address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국적 Nationality	
총 톤 수 Gross tonnage		운송수단의 장 성명 Master's name	
운송수단 소유 회사명 Name of Owner company		해운대리점명 Agent of the vessel	
1. 도착 장소 Place of arrival		도착 예정 일시 Date of expected arrival	
2. 출발지 The last place of departure		출발 일시 Date of departure	
3. 다음 도착 국가명 Name of next nation		다음 도착 지명 Name of next port	
4. 주요 적재 화물명 The name of major load of cargo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Unloading cargo Yes/No	
5. 10일 이내 머물렀던 곳의 지명 Where did you stayed for 10 days recently?		6. 10일 이내 머물렀던 일시 What date of you stayed for 10 days?	
7. 승무원의 수(명) Number of crew		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 Crew getting off Yes/No	
8. 승객의 수(명) Number of passengers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Passenger getting off Yes/No	
9. 환자 유무 Existence of patients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dead bodies	
10. 감염병 매개체 및 병든 동물 유무 Existence of a vehicle for the communicable disease or a sick animal		감염병 병원체 오염 유무 Existence of contaminated disease agent Yes/No	
11.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유무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being issued Yes/No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ing vessel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ion	
12. 담당자 성명 The name of manage		전화번호 Tel.	
13. 신청 내용 The applied contents		14. 신청 일시 Date of application	

위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skipping the examination of quarantine about this Flight or 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6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The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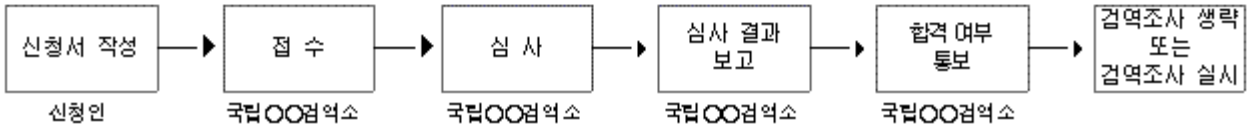
210㎜×297㎜(일반용지 60g/㎡)

(뒤 쪽)

작성방법

1. 도착 장소 및 도착 예정 일시: 운송수단이 도착할 장소의 이름과 도착 예정 일시(한국시간)를 적습니다.
   The Place and The Expected date of Arrival: Write down the place and the expected date of arrival (Declare the expected time of arrival according to korean time).
2. 출발지 및 출발 일시: 출발한 곳의 지명과 출발 일시를 적습니다.
   The place and the date of departure: Write down the place and the date of departure
3. 다음 도착 국가명 및 다음 도착 지명: 다음 도착할 국가 및 도착할 곳의 이름을 적습니다.
   The national name and site for next arrival: Write down the name for next arrival nation and site.
4. 주요 적재 화물명 및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주요 적재 화물명과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화물을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를 적습니다.
   Loading the major load of Cargo or not: If you load the major load cargo, write yes. If not, write No.
5. 10일 이내 머물렀던 지명: 도착시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머물렀던 곳 전부(머무른 순서대로 알려야 하며, 머물렀던 장소가 없으면 생략할 것)를 적습니다.
   The name of stayed place for 10 days currently: Write down all of the place for 10days currently from the departure time(Write them in order but if you have no place, pass it).
6. 10일 이내 머물렀던 일시: 도착시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머물렀던 일시 전부(머무른 순서대로 적어야 하며, 머물렀던 일시가 없으면 생략할 것)를 적습니다.
   The date of staying for 10days currently: Write down all of the date for 10 days currently from the departure time(Write them in order but if you have no date, pass it).
7. 승무원의 수 및 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 승무원의 수와 승무원이 내리는지 여부(승무원이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를 적습니다.
   The number of crews and crews getting off or not: Write down the number of crews and crews getting off or not(If crews getting off, write Yes or if not, write No).
8. 승객의 수 및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승객의 수와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승객이 내리는 운송수단은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운송수단은 "없음"으로 표시)를 적습니다.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passengers getting off or not: Write down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passengers getting off or not(If passengers getting off, write Yes or if not, write No).
9. 환자 및 사망자 유무: 검역감염병에 의한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유무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patients or deads: Write down whether patients or deads due to the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existed or not.
10. 감염병 매개체와 병든 동물 및 검역감염병 병원체 유무: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병든 동물 유무 및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지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vehicles for infectious diseases, sick animals and pathogen for infectious diseases.: Write down whether any rats or harmful insects which can spread the diseases or infect the ship and inhabit or there is any living tracks or not. Also contaminated goods by pathogen of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 even suspected things existed or not.
11.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 유무 및 발급 연월일: 선박위생관리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유무 및 발급 연월일을 적습니다.
    Date of issuing vessel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If you issue the vessel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ion, write down the date of it. But if you didn't, write No.
12.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The name and Tel. of manager: Write down the name and Tel. of manager applying for skipping the inspection of quarantine.
13. 신청 내용: 검역조사 생략 신청을 하는 사유 및 도착 목적을 적습니다.
    Content for application: Write down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skipping the inspection of quarantine and the purpose of the departure.
14. 신청 일시: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Date of application: Write dow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skipping the inspection of quarantine.

처리절차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 통보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 [ ]입항Arrival [ ]출항Departure 통보서
General Declaration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1 면)

제출번호 (격하목록 No.:MAN) □□□□-□□□□-□□□□□	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 즉시 Immediately

1. 선박 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ship

- 선박명 Name of ship :
- 선박 국적 Nationality of ship :
-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 국제 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 선박 종류 Kind of Ship :

2. 입항/출항 일시 Date/time of arrival/departure

____년(ccyy)___월(mm)___일(dd)___시(hh)___분(mm)

3. 최초 출항지/최종 목적지 Port of Provenance/Final Port of Destination

_____ / _____

4. 선사 또는 대리점 이름, 부호, 주소
Name, Code and Address of Owner (Operator) or Agent of Ship

5. 선박 계선 장소[선석(船席), 장소] Position of the ship(Berth or Station)

6.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 전 출항지 및 출항 일시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 /____년(ccyy)___월(mm)___일(dd)___시(hh)___분(mm)
-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
- 경유지 출항일 Date of Departure : -- / -- / -- / -- / -- / ccyy/mm/dd
- 출항 예정 일시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 _____년(ccyy) __월(mm)___일(dd)
- 차항지(次港地) Next port of Call : □□-□□□

7. 화물 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 화물명 Name of Cargo(Unit : Ton) :
- 적재 톤수 Total Cargo :
- 적하/양하 톤수 Load/Unload Cargo :
- 위험물 톤수 Dangerous Cargo :
- 환적(換積) 톤수 Transshipment Cargo :

8.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 전 체 Total: 명
- 한국인 Korean: 명
- 외국인 Foreigner: 명

9. 승객 수 Number of passengers

- 전 체 Total : 명 (6세 이상 : 명)
- 한국인 Korean : 명 (6세 이상 : 명)
- 외국인 Foreigner : 명 (6세 이상 : 명)

※ 국내항 간 편승/상륙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 / 명

10. 입항 목적 Purpose of Arrival □□

11. 항해 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

12. 검역 구분 Type of Quarantine □

13. 해당 연도 입항 횟수 Number of arrival this year □

14.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 할인율 Rate : □ · 사유 Basis : □

15. 예선 및 도선 사용 신청 여부 Any request of Tugboat & Pilot

1. 예선 Tug boat □ (Yes/No) 2. 도선 Pilot □ (Yes/No)

210㎜×297㎜(일반용지 60g/㎡)

(2 면)

16. 세관 · 출입국 · 검역(C.I.Q.) 수속 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Yes/No)

○ 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 외지 변동사항 Any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 승 선 Embarked : 명 · 전 선 Transference : 명

· 하 선 Disembarked : 명 · 낙 오 Quit or missed ship : 명

○ 이 항구 승선 · 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 승선 출국 Embarked : 명 · 하선 입국 Disembarked : 명

· 전 입 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 명

· 전 선 Dis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 명

- 승 객 Passenger

· 승 선 Embarked : 명 · 하 선 Disembarked : 명

18. 비 고 remarks

○ 사회안전 위해물품 소지 여부? [ ]Yes [ ]No

- 소지 시 If Yes, ([ ]마약류 Illicit drugs [ ]총기 및 도검류 Arms)

○ 승무원의 면세품 소지 유무?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Yes [ ]No

○ 면세 선용품(船用品) 적재 유무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Yes [ ]No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ed from outside of Korea? [ ]Yes [ ]No

○ 승무원 복수항 상륙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유무?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 [ ]Yes [ ]No

○ 검역감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유무?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Yes [ ]No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 여부? Did you get a BBCHPO(Hire/Purchase Bare Boat Charter)? [ ]Yes [ ]No

○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보장계약 체결 여부? Any insurance of other financial security to cover the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Yes [ ]No

○ 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여부? CLC Certificate or bunker Convention Certificate on board? [ ]Yes [ ]No

○ 부선 호출부호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년(yy) 월(mm) 일(dd)

통보자(선장 · 기장 또는 해운대리점)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서명) (Signature)

귀하
TO

(3 면)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 승무원 명부 Crew List •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수수료charge 없음No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입항·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출항 확정 시에는 "최종"란에, 변경 시에는 "변경"란에, 취소 시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before you arrive or depart, fill the "Notice". If you definitely arrive or depart, fill the "Final". If you change it, fill the "Change". If you cancel it, fill the "Cancel".
2. 6번의 「선박 계선 장소(선석, 장소)」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Fill out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of No.6 with the pier or anchoring site of ship
3. 6번 중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은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적습니다. Fill out 「Stopovers and Date of Departure」 of No.6 with any transit from the first target via the transit in reverse order.
4. 7번 중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양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Fill out 「Name of Cargo」 of No.7 with representative luggage of Unified system item classification table (HS code) by international convention about unified product name and code system AND Number of Load/Unload/dangerous/transshipment cargo of total supplies cargo.
5. 9번 중 *는 국내 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입국 허가자 수를 적습니다. Fill out * of No.9 with the number of permitted person between domestic ports and inward permitted person.
6. 10번의 「도착 목적」은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Fill out 「purpose of arrival」 of No.10 with following code which is related with.
   01. 적하·양하 Load/Unload 02. 적하 Load 03. 양하 Unload 04. 선박 수리 repaired ship
   05. 해난 maritime distress 06. 승무원 교대 change of crew 07. 여객 상륙 landing flight
   08. 급유 refueling 09. 선용품 적재 ship's stores 99. 기타 etc.
7. 11번의 「항해 구분」은 다음 코드 중 해당하는 선박만 적습니다. Fill out 「Classification of Voyage」 of No.11 with a related to the ship of following code.
   01. 외국적 내항선 foreign coaster 02. 일시 외항 temporary outport
   03. 내외항 자격 변경 change of qualification of inner/outer harbor 04. 나포선박 seizure ship
   05. 개인 항해 personal voyage 06. 신조선 New ship 07. 수출 선박 export ship
   08. 선명 변경 change of ship's name 09. 폐선 예정 be expected to abandoned ship
   10. 남북한 출입 South-North immigration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school ship or government ship
   12. 원양 조업선 pelagic fishing vessel
8. 12번의 「검역 구분」은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Fill out 「Type of Quarantine」 of No.12 with following code.
   1. 승선 검역 Joined ship quarantine 2. 전자 검역 electronic quarantine 3. 특별 검역 Special quarantine
   4. 검역조사 생략 Skipping the examination of quarantine 5. 검역 완료 Quarantine completion
9. 14번의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는 다음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Fill out 「Rate & Basis for port charge」 of No.14 with following each code.
   - 할 인 discount :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 유 reason : 1. 군함 warship 2. 관공선 government ship 3. 수리 repair
     4. 해난 maritime distress 5. 투자비 보전 preservation of investment 9. 그 밖의 사유 etc.
10. 16번의 「수속 장소 및 일시」는 입항·출항 전 C.I.O.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와 일시를 적습니다. Fill out 「Date/Place of CIO Processing」 of No.16 with expected place and date that you may process the C.I.O. institution before arrival/departure
    1. 항구명 Name of Port 2. 내항 Inner Port 3. 외항 Outer Port
11. 17번 중 「이 항구 승선·하선 승무원/승객」란은 입항 시에는 승선·하선 예정 인원을, 출항 시에는 승선·하선 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Fill out 「Crew or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of No.17 with expected number(or number) of Crew of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if you arrive (or depart).
12. 첨부서류 중 「선용품 목록 및 승무원 휴대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받습니다.
    Confirm on the spot and receive 「Ship's Stores List and Crew's Effects List」 of supplementary Documents if customs director admitted to need them(or it).
13. 서면 제출 시 입항·출항 시마다 다음 표에 따른 부수(部數)를 제출합니다. Number of copies to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 출 서 류	지방해양항만청 Maritime & port Administration	세 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 역 소 Quarantine Office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 명부 Crew List	1	1	1	1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1	1	1	1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1		

*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는 승무원 명부 및 승객 명부는 입항·출항 통보 시에만 제출합니다.
Submit Crew List and Passenger List to Maritime & port Administration when you arrive or depart only.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 통보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REPORT OF ARRIVAL(DEPARTURE) FLIGHT

편명 및 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umber/Registration

출발지명 및 출발 일시 Name of departure place/Date

머무른 지명 Name of en route stop place

도착 예정 일시/출발 예정 일시 Expected time of arrival/departure

승무원 및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crew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the sick or deceased

비고 Remarks

「검역법」 제8조제1항,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기의 도착(출발)을 통보합니다.

We hereby report that our aircraft have entered the air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8 and 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항공회사 Owner or Operator (서명)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To.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이 통보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REPORT OF ARRIVAL(DEPARTURE) TRAIN·CAR

운송수단의 명칭 Train or Car No.

출발지명 Name of departure place

도착 예정 일시/출발 예정 일시 Expected time of arrival/departure

승무원 및 승객의 수 및 명단 Number of passengers/crew - 필요시 제출 요망 Please submit list of passengers and crew when we need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the sick or deceased

비고 Remarks

「검역법」 제8조제1항,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차·자동차의 도착(출발)을 통보합니다.

We hereby report quarantine of train·ca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8 and 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열차 승무원 또는 운전사
Train Crew or Driver

(서 명)
(Signature)

국립 ○○검역소장 귀하
To.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 신고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앞쪽)

NO.

국외의 항에서 도착하는 선장이 작성하여 관할 검역소에 제출합니다.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the masters of ships arriving from foreign ports.

항구명 Name of port		연월일 Date		도착 시간 Actual Time of arrival	
선명 Name of ship		출항지 Arriving From		행선지 Sailing To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선장의 성명 Master's name		등록번호 Registration /IMO No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ontrol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e		발급 장소 Issued at	
		발급 연월일 Date		재검사 유무 Re-inspection	예 Yes/ 아니요 No
세계보건기구 지정 감염지역 방문 여부 Visit an affected area identified by the WHO	예 Yes	항구명 Port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아니요 No	방문일 Date		승객 수 Number of passengers	

항해 시작 혹은 최근 30일 이내에 머물렀던 항구의 이름 (둘 중 짧은 기간 선택)
List of ports of call from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

도착한 관할 검역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출항 이후, 혹은 최근 30일 이내에(둘 중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승무원이나 승객 혹은 배에 동승한 다른 사람의 명단과 그 기간 중 방문한 모든 항구/국가를 기록할 것(표가 부족할 경우 다른 표를 활용)
Upon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at the port of arrival, list crew members, passengers or other persons who have joined ship/vessel since international voyage began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 including all ports/countries visited in this period(add additional names to the attached schedule)

이 름 Name		동승지 From	(1)	(2)	(3)

	질문사항(Health Questions)	답은 유무 Yes or No	
(1)	항해 중 배 안에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Has any person di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accident?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2)	항해 중 또는 현재 감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의 유무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on board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international voyage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3)	항해 중 아픈 승객의 총 수가 보통/예상보다 많았습니까? Has the total number of ill passengers during the voyage been greater than normal/expected? 아픈 사람의 수 How many ill persons?_____		
(4)	현재 배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any ill person on board now?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5)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해당할 경우, 처료나 의학적 권고와 관련한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Was a medical practitioner consulted? (If yes, state particulars of medical treatment or advice provided in attached schedule)		
(6)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Are you aware of any condition on board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spread of disease?		
(7)	배 안에서 위생조처(예: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가 실시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유형・장소・일시를 적습니다) Has any sanitary measure(e. g. quarantine, isolation, disinfection or decontamination) been applied on board? (If yes, specify type, place and date)		
(8)	배 안에서 밀항자가 발견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밀항자의 승선 장소를 적습니다(장소를 알 경우)] Have any stowaways been found on board? [If yes, where did they join the ship(if known)?]		
(9)	배 안에 병든 동물 혹은 병든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Is there a sick animal or pet on board?		

본인은 이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세부 사항과 답변이 틀림없음을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including the schedul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연월일 Date _____

서 명 Signed _____
선 장 Master

확 인 Countersigned _____
선의(船醫, 탑승 시) Ship's Surgeon(if carried)

유의사항

선의가 없다면 선장은 다음의 증상을 감염병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는 근거로 고려해야 한다.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grounds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a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가) 수일 동안 지속되거나 다음 증상을 동반하는 열 ① 피로감 ② 의식감퇴 ③ 림프선 증대 ④ 황달 ⑤ 기침 또는 호흡곤란 ⑥ 비정상적인 출혈 ⑦ 마비

(a) feve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f accompanied by ① prostration ② decreased consciousness ③ glandular swelling ④ jaundice ⑤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⑥ unusual bleeding ⑦ paralysis.

(나) 열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① 급성 피부발진 또는 발적 ② 극심한 구토(뱃멀미 제외) ③ 심한 설사 ④ 반복적인 경련

(b) with or without fever ① any acute skin rash or eruption ② severe vomiting(other than sea sickness) ③ severe diarrhoea ④ recurrent convulsions.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보 건 상 태 신 고 서 (앞쪽에서 계속)
ATTACHMENT OF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환자 또는 사망자의 기재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board

성명 Name	등 급 Class or rating	연령 Age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승선한 항구명/일시 Port, date joined ship/vessel	질병의 상태 Nature of illness	발병 연월일 Date of onset symptoms	항구의 보건관리에게 보고하였는가? Reported to a port medical officer?	환자 경과 Disposal of case*	환자에게 투여한 약제 Drugs medicines or other treatment given to patient	비고 Comments

* 기지사항: (1) 회복 현황, 사망 여부 (2) 현지 선내에 있는지(항구명 또는 공항명 표기), 수장(水葬)했는지 여부
* State: (1) Whether the person recovered, is still ill or died; and (2) whether the person is still on board, was evacuated(including the name of the port or airport), or was buried at sea.

검 역 조 사 서 Quarantine Survey (검역관 기입 사항) (The entry for quarantine officials)

해운대리점명 The name of vessel agency

1. 보건·위생상태 신고 현황 Present condition of state of health·sanitation	[ ]이상 없음 Clear	[ ]이상 있음 Not clear
	* 특이사항 Specific details:	
2. 선박의 위생상태 점검사항 Checking content for sanitation of vessel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Inhabiting th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 or not	[ ]없음 No [ ]있음 Yes
		* 서식(의심) 내용 Suspected information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Condition of clean of kitchen and food storage	[ ] 양호 Good [ ]불량 Bad
		* 지적사항 Intellectual information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의심)된 적재화물 The onboard cargos exposed to communicable disease agent	[ ]없음 No [ ]있음 Yes
		* 오염(의심) 내용 Suspected information
3.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사항 Fever monitoring and requirements for questionnaire of quarantine	발열감시 결과 이상 유무 The result of fever monitoring that is abnormal or not	[ ]없음 No [ ]있음 Yes
		* 체온측정자 수 The number of measuring temperature : 명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Requesting the quarantine questionnaire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Not showing the symptom: 명 [ ]증상이 나타남 Showing the symptom: 명

4. 검체 채취 Collecting the Samples

검체번호 The number of Samples	검체명 The name of Samples	채취 장소/대상자 The place of collection/ Subjects	결과 The result	비고 Note

5. 검역조사 결과 Quarantine inspection	[ ]이상 없음 Clear	[ ]이상 있음 Not clear
	* 이상 시 조치사항 및 사유 The Measures and Reasons for not clear:	

검역조사 일시: The date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시 Hour 분 Minute

검역관 성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서명) Signature

선장 성명: Master Name (서명) Signature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 신고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출국용/입국용)
FLIGHT DECLARATION OF HEALTH(Exit/Entry)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소유자 또는 운항자명 Owner or Operator _____

국적기호 및 등록번호 Marks of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편명 Flight No. _____ 연월일 Date _____
출발지 Departure from _____ (Place and Country)	도착지 Arrival at _____ (Place and Country)

항로 FLIGHT ROUTINE

* "지명"란에는 항상 출발지, 머무른 곳 및 목적지를 적습니다.
* "Place" column always to list origin, every en route stop and destination

지명 Place	승무원 성명 Names of Crew		현재 여객수 Current Number of Passengers
			출발지 Departure Place : _____
			탑승자 수 Embarking : _____
			통과 여객 Through on same flight : _____
			도착지 Arrival Place : _____
			도착 여객 수 Disembarking : _____
			통과 여객Through on same flight : _____

220mm×360mm(일반용지 60g/㎡)

(2면)

보건상태 신고
DECLARATION OF HEALTH

1. 비행기 안에 항공병 또는 사고 외의 질병으로 앓은 사람(발진, 발열, 오한, 설사증세를 나타내는 사람 포함)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도중에 위와 같은 증세로 앓아서 내린 사람을 별지 명세표에 적습니다.
   Persons on board with illnesses other than airsickness or the effects of accidents (including persons with Symptoms or illnesses such as rash, fever, chills, and diarrhoea) or those who have died of illnesses as well as those Case of illness disembarked during the flight.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2. 비행기 안에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 밖의 조건을 별지 명세표에 적습니다.
   Any other conditions on board which may lead to the spread of disease.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3. 비행 중 해충구제 또는 위생조치(장소, 연월일, 소요시간, 방법)를 하였으면 상세히 기록하고, 만약 비행 중에 아무런 해충구제도 하지 않았다면 가장 최근의 해충구제 조치를 한 것을 상세히 별지 명세표에 기록합니다.
   Details of each disinsecting or sanitary treatment (place, date, time, and method) during the flight. If no disinsecting has been carried out during the flight, give details of most recent disinsecting.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서명 요구가 있으면 서명
Signature if required: _____

_____

관 련 승 무 원
Crew member concerned

화물 Cargo	…적하 목록 별첨 …Cargo Manifests attached

FOR OFFICIAL USE ONLY

나는 이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와 별지 명세표에 포함된 모든 진술과 세부 사항이 틀림없음을 신고하며 또한 모든 통과여객은 항행을 계속할 것임을(계속했음을) 신고합니다.
I declare that all statement and particular contained in this General Declaration and in any supplementary forms required to be presented with this General Declaration are complete, exact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that all through passengers will continue/have continued on the flight.

(3면)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

□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The report of patient or dead person

* 회복여부/ 사망여부를 적습니다. State whether recovered; still ill; died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 Date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좌석번호 Seat No.	징후 및 증상 Signs & symptoms	비행 도중(경유지) 내린 사실 유무 Deplaning of flight during stopover (yes/no)	과거병력 Medical history

□ 비행 중 해충구제 및 위생조치 Extermination of vermin in flight and hygiene management

구 분 Section	비행 중 해충구제 및 위생조치 Extermination of vermin in flight and hygiene management	가장 최근의 위생조치 내용 Details of the most recent hygiene management
소독 장소 The place of disinfection	[ ] 여객실 Passengers' section [ ] 화물실 Cargos' section [ ] 그 밖의 장소 The others	[ ] 여객실 Passengers' section [ ] 화물실 Cargos' section [ ] 그 밖의 장소 The others
작업일 Date of operation	년(yy) 월(mm) 일(dd)	년(yy) 월(mm) 일(dd)
소독 방법 The way of disinfection	[ ] 잔류분무 Spray [ ] 살포 Dust [ ] 기타 Etc. ( )	[ ] 잔류분무 Spray [ ] 살포 Dust [ ] 기타 Etc. ( )
사용 약제명 The name of chemicals	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_____ 사용량: _____(cc/g)	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_____ 사용량 _____(cc/g)
	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_____ 사용량: _____(cc/g)	살충제명 The name of insecticide: _____ 사용량: _____(cc/g)

(4면)

검 역 조 사 서 (검역관 기입 사항)
Quarantine Survey(The entry for quarantine officials)

1. 항공기 편명 Aircraft Flight			[ ] 여객기 A plane [ ] 화물기 Freighter
2. 출발지 및 경유지 Departure and Stopover			Gate
3. 보건·위생 상태 신고 현황 Reported for Health and sanitation	사망자 Existence of Deads	[ ]없음 No [ ]있음 Yes(명)	
		* 있을 경우 If yes,	사망경위 Details of an accident:
	감염병(의심) 환자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 (suspected)	[ ]없음 No [ ]있음 Yes	
		* 있을 경우 If yes,	[ ]설사 diarrhea 명 [ ]구토 vomiting 명 [ ]복통 stomachache 명 [ ]발열 fever 명 [ ]호흡곤란 dyspnea 명 [ ]기타 etc.)
	기내 비상 의약품 Having Emergency Medicine in the flight	[ ]없음 No [ ]있음 Yes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상 의약품 투여 내용 Content for treating the emergency medicine and emergency care for patients		
4. 항공기의 위생상태 점검사항 The aircraft checklist of Sanitary condition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Inhabiting th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 or not	[ ]없음 No [ ]있음 Yes	
		* 서식(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Cleanliness of kitchen and food storage	[ ]없음 No [ ]있음 Yes	
		* 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기타 위생상태 Other sanitation	[ ]없음 No [ ]있음 Yes	
		* 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5. 검체 채취 Collecting the Samples	검체번호 The number of Samples	검체명 The name of samples	채취 장소 The place of collect	결과 The result	비고 Note
		[ ]오수 Sewage [ ]기내식 An in-flight meal			
		[ ]오수 Sewage [ ]기내식 An in-flight meal			
		[ ]오수 Sewage [ ]기내식 An in-flight meal			
		[ ]오수 Sewage [ ]기내식 An in-flight meal			

6. 검역조사 결과 The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 ]이상 없음 Good [ ]이상 있음 Bad
	* 이상시 조치사항 및 사유 The Measures and Reasons for abnormality

검역조사 일시: 년 월 일 시 분
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Year Month Day Hour Minute

검역관 성명: (서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항공기 사무장 성명: (서명)
Master Name Signature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 신고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차 · 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TRAIN · CAR DECLARATION OF HEALTH

(앞쪽)

No.

외국에서 도착하는 운송수단의 장이 작성하여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the masters of vehicle arriving from foreign country.

도 착 지 Arrival station		연 월 일 Date		도 착 시 간 Arrival time	
열차 · 자동차명 및 등록번호 Name of train · car		출 발 지 Place of departure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	
국 적 Nationality		탑 승 지 역 Boarding area		기관사(운전자) Locomotive's name	
열차 · 차량의 수 Number of Train · Car		승 무 원 수 Number of crew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		객 차 수 Number of cabin		하 차 수 Number of deck	

최초 출발지 연월일 및 이후 도착한 곳의 지명
List of area of call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

	질문사항(Health Questions)	답은 유무 Yes or No	
(1)	운행 중 차 안에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Has any person died on train · car during the driving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accident?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2)	운행 중 또는 현재 감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의 유무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on train · car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driving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3)	운행 중 아픈 승객의 총수가 보통/예상보다 많았습니까? Has the total number of ill passengers during the driving been greater than normal/expected? 아픈 승객의 수 How many ill persons?		
(4)	현재 차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Is there any ill person on train · car now?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5)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해당할 경우 처료나 의학적 권고와 관련한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Was a medical practitioner consulted? (If yes, state particulars of medical treatment or advice provided in attached schedule)		
(6)	차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해당할 경우 특이점을 따로 적습니다) Are you aware of any condition on train · car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spread of disease?		
(7)	차 안에서 위생조처(예: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가 실시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유형, 장소, 일시를 적습니다) Has any sanitary measure(e. g. quarantine, isolation, disinfection or decontamination) been applied on train · car? (If yes, specify type, place and date)		
(8)	차 안에서 밀항자가 발견되었습니까? [해당할 경우 밀항자의 승선장소를 적습니다[장소를 알 경우)] Have any stowaways been found on train · car? [If yes, where did they join the train · car[if known)?]		
(9)	차 안에 병든 동물 혹은 병든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Is there a sick animal or pet on train · car?		

본인은 이 열차 · 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의 세부 사항과 답변이 틀림없음을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서 명 Signed _____
운송수단의 장 Master

연월일 Date _____

확 인 Countersigned _____
(차내 의사 탑승 시) Train · Car's Surgeon(if carried)

비고 Note

차 안에 의사가 없다면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의 증상을 감염병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는 근거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일 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다음 증상을 동반하는 열 ① 피로감 ② 의식감퇴 ③ 림프선 증대 ④ 황달 ⑤ 기침 또는 호흡곤란 ⑥ 비정상적인 출혈 ⑦ 마비

(나) 열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① 급성 피부발진 또는 발적 ② 극심한 구토(차멀미 제외) ③ 심한 설사 ④ 지발 경련

: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grounds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a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a) feve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f accompanied by ① prostration ② decreased consciousness ③ glandular swelling ④ jaundice ⑤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⑥ unusual bleeding ⑦ paralysis.

(b) with or without fever ① any acute skin rash or eruption ② severe vomiting(other than train · car sickness) ③ severe diarrhoea ④ recurrent convulsions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보 건 상 태 신 고 서
ATTACHMENT OF TRAIN · CAR DECLARATION OF HEALTH

□ 환자 또는 사망자의 기재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train · car

성명 Name	등 급 Class or rating	연령 Age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승차 역명/일시 Station, date joined train · car	질병의 상태 Nature of illness	발병 연월일 Date of its onset of symptoms	역의 보건관리에게 보고하였는가? Reported to a station medical officer?	환자 경과 Disposal of case*	환자에게 투여한 약제 Drugs medicines or other treatment given to patient	비고 Comments

* 기재사항: (1) 회복 현황, 사망 여부 (2) 현재 차내에 있는지(역명 포기), 매장(埋葬)했는지 여부
* State: (1) Whether the person recovered, is still ill or died; and (2) whether the person is still on train · car, was evacuated (including the name of station), or was buried in the ground.

검 역 조 사 서 (검역관 기입 사항)

1. 보건·위생상태 신고 현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 특이사항 :				
2. 열차·자동차의 위생상태 점검사항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 ]없음	[ ]있음		
		* 서식(의심) 내용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 ] 양호	[ ]불량		
		* 지적사항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의심)된 적재화물	[ ]없음	[ ]있음		
		* 오염(의심) 내용			
3.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사항	발열감시 결과 이상 유무	[ ]없음	[ ]있음		
		* 체온측정자 수: 명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명	[ ]증상이 나타남: 명		
4.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명	채취 장소/대상자	결과	비고
5. 검역조사 결과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 이상 시 조처사항 및 사유:				

검역조사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검역관 성명: (서명)

철도기관사/운전자 성명: (서명)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 명부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및 승객 명부
Crew and Passenger List

☐ 승무원 명부(Crew List)

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

일련번호 No.	직명 Rank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국 적 Nationality	승선·하선 구분 Embarked/to be disembarked	비고 Remark

☐ 승객 명부(Passenger List)

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

일련번호 No.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주민번호 혹은 여권번호 ID No. or Passport No.	좌석번호 Seat No.	국 적 Nationality	최종 목적지 Destination	비고 Remark

210×297㎜(인쇄용지 75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健康狀態質問書 HEALTH QUESTIONNAIRE

성명(姓名) Name		도착 연월일(到達年月日) Arrival Date(YY/MM/DD)	
국적(國籍) Nationality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명 (船舶·航空機·列車·車輛 名) Vessel·Flight·Train·Car No.	
여권번호(抨照番号) Passport No.		좌석번호(座位號碼) Seat No.	
생년월일(生年月日) Birth Date(YY/MM/DD)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내국인만 작성) Last seven digits of ID. No (Write for Only Korean)	
성별(性別) Sex	[ ]남(男)Male [ ]여(女)Female	휴대전화(전화번호) 携帶電話(電話番號) Mobile Phone No.(Tel.)	
한국 내 주소(韓國 內 地址) Contact address in Korea			

과거 10일 동안의 방문 국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請填寫過去十天之內停留的 國家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1)	2)	3)

과거 10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過去十天之內如有以下症狀, 請在症狀前劃 "V"
Please check a mark "V", if you have or have had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 ]콧물 또는 코막힘(鼻汁, 鼻閉塞) Runny or stuffy nose	[ ]인후통(咽喉痛) Sore throat	[ ]기침(咳嗽) Cough	[ ]발열(發熱·发烧) Fever

[ ]설사(腹瀉) Diarrhea	[ ]구토(嘔吐) Vomiting	[ ]복통(腹痛) Abdominal pain	[ ]호흡곤란(呼吸困難) Difficulty breathing	[ ]잦은 호흡(呼吸急促) Shortness of breath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Health Questionnaire,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10 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回避惡虛假地填寫衛生檢疫單時, 依据檢疫法第十二條及制三十九條的規定, 可被判以一年以下的徒刑惑 1000万元(韓貨)以下的罰款.

국립○○검역소장 귀하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황색지 7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 인 검 역 신 고 서
個人檢疫申告書 Travel record General Declaration

성명(姓名) Full name		국적(國籍)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 No		성별(性別) Sex	[ ]남 Male [ ]여 Female
여권번호(护照番号) Passport No		휴대전화(전화번호) Mobile Phone No.(Tel.)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과거 10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過去十天之內如有以下症狀, 請在症狀前劃 "V"
Please check a mark "V", if you have or have had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 ]콧물 또는 코막힘(鼻汁, 鼻閉塞) Runny or stuffy nose	[ ]인후통(咽喉痛) Sore throat	[ ]기침(咳嗽) Cough	[ ]발열(發熱 · 发烧) Fever

[ ]설사(腹瀉) Diarrhea	[ ]구토(嘔吐) Vomiting	[ ]복통(腹痛) Abdominal pain	[ ]호흡곤란(呼吸困難) Difficulty breathing	[ ]잦은 호흡(呼吸急促) Shortness of breath

개인검역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Travel record General Declaration,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10 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回避惑虛假地填寫衛生檢疫單時, 依据檢疫法第十二條及制三十九條的規定, 可被判以一年以下的徒刑惑 1000万元(韓貨)以下的罰款.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traveler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용지 7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Boarding·Embarking before Quarantine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소속 Belong to		담당 업무 Work Concerned	
허가 목적 Purpose of Admission		허가 요청 기간 Duration of Applying for Admission	

그 밖의 증명 서류
Documents for Proof

「검역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역 전에 승선 및 탑승 허가를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permission for Boarding·Embarking before quaran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Signature

연락처 Tel.

국립○○검역소장 귀하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 신청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Electronic Quarantin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앞쪽)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Application Date		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	즉시 Immediately
선박명 Name of the vessel		선박 국적 Nationality of the vessel		선박 종류 Kind of the vessel	
선사/대리점명 Name of Owner or Agent of the vessel		입항 목적 Purpose of entry		입항 횟수 Number of entry	
총톤수 Gross tonnage		국제 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순톤수 Number of Net tonnage	

1. 출항지 Place of Departure		6. 이선 유무 Leaving the ship yes/no	
- 출항 연월일시 Date of Departure		- 사람 승선·하선 유무 Embarkation & Disembarkation yes/no	
2. 입항 전 10일간 기항지(寄港地) The port of call before entry for 10days		- 물건 작업 유무 Working for stuff yes/no	

국가 Nation	항구명 Name of the port	입항일 Date of entry	출항일 Date of departure

7. 환자 유무 Patients yes/no	
8. 사망자 유무 The dead yes/no	
9. 감염병 media 등 유무 The vehicle of infection disease etc. yes/no	
10. 오염물건 유무 Contaminated stuff yes/no	
11. 위생조치 유무 Sanitary measure yes/no	
12. 병든 동물 유무 Sick animals yes/no	
13. 감염지역 방문 유무 Visiting infectious area yes/no	
14. 밀항자 발견 유무 Finding stowaways yes/no	
15. 선의의 승선 유무 Carrying ship's surgeon yes/no	
진료 여부 및 결과 The result of treatment(if treated)	
16. 화물명 Name of cargo	
적재량 Gross vehicle weight	
17. 선장 성명 Name of the captain	
담당자 성명 Name of the manager	
전화번호 Tel.	
18. 신고 일시 Date of report	년 yy 월 mm 일 dd 시 hh 분 mm
19. 신고번호 Number of register	
20. 심사자 Examiner	

4.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소지 여부 Possession yes/no	
	증명번호 Number of certification	
	발급기관 The issuing entities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증명서 구분 Classification of certification	
	재검사 필요 Need for reinspection	

5. 승무원 및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 and crews	승무원 Crew	명	내국인Local 외국인Foreign	명 명
	승객 Passengers	명	내국인Local 외국인Foreign	명 명
	승무원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of crews			
	승객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 of passengers			

위와 같이 전자 검역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electronic quarantine.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국립○○검역소장 귀하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60g/㎡)

(뒤쪽)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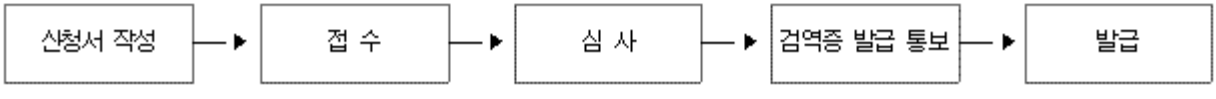
1. 출항지 및 출항 연월일시: 출항한 곳의 지명과 연월일시를 적습니다(도착시간으로부터 「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을 넘는 경우도 포함함). The Place and The Date of Departure : Write down the place and the date of departure (from the time of arrival and it's not limited to duration of other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Quarantine Act).
2. 입항 전 10일간 기항지: 도착시간으로부터 「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머물렀던 곳 전부와 출항 연월일시(머무른 순서대로 알려야 하며, 머물렀던 곳이 없으면 생략할 것)를 적습니다. The Port of Call before Entry for 10 Days : Write down all of the places stayed for duration of surveillance and date of departure from the time of arrival(arranged in order of stayed time, but if not, skip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Quarantine Act.
3. 도착 항구명 및 도착 예정 일시: 선박이 도착하려는 항구의 이름과 도착 예정 일시(한국시간)를 적습니다. The Name of Port of Departure and The Date of Expected Arrival: Write down the name of a port supposed to arrive and the date of expected arrival (according to korean time)
4.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선박위생에 관한 증명서의 소지 여부, 증명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증명서의 종류(관리/면제), 재검사 유무를 적습니다.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Write down possessing of certification about the ship sanitation or not, the number of certification, issuing entities, issuing date, kind of certification and reinspection Yes/No
5. 승무원 및 승객의 수: 승무원 및 승객(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의 수 및 건강상태를 적습니다. The Number of Crews and Passengers : Write down the number of crews and passengers (sorted into local and foreign) and their health condition.
6. 이선 유무: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다른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 유무 및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선박의 명칭 및 출항한 곳과 머물렀던 곳, 그 연월일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연월일, 사람의 수 또는 물건의 명칭을 적습니다. Leaving the Ship or not: Write down the name of the related vessel, the place of departure and stay and the date, the date of carrying people or goods and The number of people or The Name of goods if you carried people or goods from other vessels during the duration of surveillance from the time of arriv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Quarantine Act.
7. 환자 유무: 검역감염병에 의한 환자의 발생 유무와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다음에 열거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면 "없음"으로 하고, 있으면 성명 및 개인별 증상)을 적습니다. Existence of Patients: Write down whether the patient due to the infectious disease needed quarantine occurred or not. If yes, write detailed findings(If you have no person who appear following listed symptoms, write No". But if you have, write the name and individual symptoms).

가. 수일 동안 지속되거나 피로감, 의식감퇴, 림프선 종대, 황달, 기침 또는 호흡곤란, 비정상적인 출혈, 마비를 수반하는 열의 유무
Continued for several days OR accompanied with several symptoms such as Fatigue, Weakening consciousness, enlarged lymph nodes, Jaundice, Cough or dyspnea(difficulty in breathing), Abnormal bleeding, Paralysis with having fever or not.

나. 열이 수반되거나 열이 수반되지 않는 급성의 피부 발진 또는 발적, 심한 설사, 극심한 구토(뱃멀미는 제외), 반복적인 경련의 유무
Acute skin rashes or eruption with whether fever or not, severe vomit(except seasickness), severe diarrhea, recurrence of convulsion

8. 사망자 유무: 사망자의 발생 유무 및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성명 및 연령, 사망연월일, 병명 또는 그 증상의 상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Existence of Dead: If existed dead or deaths occurred, write down the Name and age of the dead, the date of death (year, month, day) and the name of diseases or symptoms.
9. 감염병 매개체 유무: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의 유무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vector diseases: Write whether any rats or harmful insects, which can spread the diseases or infect the ship, inhabit or there is any living tracks or not.
10. 오염물건 유무: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검역감염병이 현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재한 물건이 있는 선박은 "있음"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선박은 "없음"으로 할 것)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vector diseases: Write down the contaminated goods by pathogen of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 even suspected things(If the vessel has a loaded goods from the current infected area, write "Yes". If not, write "No").
11. 위생조처 유무: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위생조처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형, 장소, 일시를 적습니다. Conducting of Sanitation: Write down whether you conduct sanitary examinations such as quarantine, isolation, sterilization, decontamination and etc. in the ship.(If yes, writ down the type, the place and the date.)
12. 병든 동물 유무: 배 안에 병든 동물이 있는지 유무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sick animals: Write down whether you have any sick animals in the ship or not.
13. 감염지역 방문 유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감염병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하였는지 유무와 방문한 항구명 및 방문일을 적습니다. Existence of visiting infected area: Write down whether you visited infected area designated by WHO during the duration of applicable infectious diseases for surveillance or not. If yes, write the name of visited port and the date of visit.
14. 밀항자 발견 유무: 배 안에서 밀항자를 발견하였는지를 적습니다. Existence of Stowaways: Write down whether you found stowaways or not.
15. 선의의 승선 유무와 진료 여부 및 결과: 배 안에 근무하는 선의의 승선 유무 및 진료 여부를 적습니다.(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료 결과를 포함할 것) A Ship's surgeon who embarked and/or treated or not and the Result of treatment: Write down whether a ship's surgeon working in the ship embarked and treated or not(Write the result of treatment If treated).
16. 화물명 및 적재량: 화물명과 적재량을 적습니다. The Name of Cargo and Gross Vehicle Weight: Write down the name of cargo and gross vehicle weight.
17. 선장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선장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The Name of a captain and a manager and Tel.: Write down the name of a captain and a manager and Tel..
18. 신고 일시: 전자 검역을 신청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Date of report: Write down the date of applying electronic quarantine.
19. 신고번호: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Number of report: If you're application, don't write it.
20. 심사자: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The Examiner: If you're application, don't write it.

처리절차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 독 시 행 명 령 서
Order for Derrating, Disinsection, Disinfection

발급 연월일 :
Date of Issue

운송수단의 장(또는 화물의 소유자·관리자) 귀하
To the Master(pilot-in command or owner)

선박명, 항공기의 등록번호, 기타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선박 종류, 항공기의 형, 기타 Description of vessel or type of aircraft and others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또는 용적 Gross tonnage	회사명 또는 대리점명 Name of Owner or Agent	비 고 Remarks

위 (선박, 항공기, 기타)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쥐잡기, 벌레잡기, 살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독(쥐잡기, 벌레잡기, 살균)을 할 것을 명합니다.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 aircraft, others) at this port, The process of (deratting, disinsection, disinfection) should be followed.
I hereby command the master of the (vessel, aircraft, others) to carry out (deratting, disinsection, disinfection) by (dat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Quarantine Act.

서명 _____
Signature of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독 실시 계획서

신청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호(운송수단 소유자/대리점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대상	운송수단명(등록번호)		국적	
	총톤수		순톤수	
	정박 위치		소독 용적	
방법	소독종류		약제명	
	투약량		㎥/㎡당 투약량	
	투약일	년 월 일 시 분	개방일	년 월 일 시 분
실시자	소독업무대행업소		작업 인원	
	작업 주임		비고	

「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실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송수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인)

소독업무대행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독 결과 보고서

소독대상	운송수단명(등록번호)	국적
	운송수단 소유자/대리점명	총톤수
	소독 장소	소독 용적
소독사항	소독 종류	사용 약제명
	실시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약품 투여량	㎥/㎡당 투약량
	용적별 약품 투여량	

「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독업무대행자 대표 (인)

작업 주임 (인)

입회자 운송수단의 책임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격리통지서 Isolation Notice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격리자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 date
	입국일 Entry Date	성별 [ ] 남(男) Male [ ] 여(女) Female
격리 장소 Isolation Place	[ ]격리병동 Isolation ward [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Infectious disease maintenance organization, Isolation Place, Sanitarium, Clinic [ ]자가 Home [ ]임시 격리시설 Temporary isolation facility	
	기간 Duration ~	전화번호 Tel
	주소 Address	

위의 사람은 「검역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격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We hereby report that this person is isolated because he/she is infected with quarantine infectious diseases or suspected to be infectious disea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16 of the Quarantine Act.

※ 만일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Unless you are isolated,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10 million won in fines,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
Notice of Flight or Ship No. contaminated

수신 Recipient: 귀하 To

입국 현황 Situation of Entry	입국일시 Date of Entry	
	출발지역(도시) Place of Departure (City)	
이동금지 운송수단 Flight or Ship No. of Prohibition of Movement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운송수단 종류 Kind of Flight or Ship No.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또는 용적 Gross Tonnage or Volume	회사명/대리점명 Name of Company/Agency
	이동금지 장소 Impassable Place	
이동금지 화물 Cargo of Prohibition of Movement	화주명 Name of Shipper	전화번호 Telephone
	화물명 Name of Cargo	수량 Number of Cargo
	화물번호 Cargo No.	
	이동금지 장소 Place of "No Passing Zone"	
이동금지 사유 Reason for prohibition of movement		

조치사항 Reason for Prohibition of Movement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Inspection for the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
	운송수단 및 화물의 소독 Disinfection of transportation and cargo
	물건의 폐기 Disuse of things
	그 밖의 내용 Etc.
비고 Remarks	

「검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동금지 대상으로 통보합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e Quarantine Act, Report target has banned movement.

년(yy) 월(mm) 일(dd)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이 검역증은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NATIONAL QUARANTINE STATION
REPUBLIC OF KOREA

검역증
FREE PRATIQUE

발급 연월일
Date / /

1. 선박명 또는 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2. 국 적:
   Nationality

3.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열차·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4. 위의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하여 검역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2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no abnormality exists as a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Accordingly, this is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Quarantine Act.

서명
Signature: _____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NATIONAL QUARANTINE STATION
REPUBLIC OF KOREA

조건부 검역증
PROVISIONAL PRATIQUE

발급 연월일
Date / /

1.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2. 국적:
   Nationality

3.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형·열차·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4. 위의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하여 검역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를 통하여 검역감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여 「검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it has been determined that little or no danger exists as to the possible invasion of quarantinable disease in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such vessel/aircraft/train/car. Accordingly,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Quarantine Act, it is hereby decreed that this certificate will be replaced with a new certificate of Free Pratique provid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by (day) , (month) , (year) .

다음 조건 Conditions

서명
Signature : _____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 _____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회항·이동 지시서
Order for Sailing back/ Flying back

수신 Recipient: 귀하 To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운송수단 종류 Kind of Ship/Aircraft/Others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또는 용적 Gross Tonnage or Volume		회사명/대리점명 Name of Company/Agency	
입국 일시 Date of Entry		출발지역(도시) Departure of Place(City)	
지시 사유 Reason for order for sailing back/flying back			
지시사항 Type of sailing back/flying back instructed	[ ]회항 Sailing/flying back		
	[ ]다른 검역구역( )으로 이동 Sailing/flying back movement to other district of Quarantine ( )		

「검역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회항 또는 이동 지시 대상으로 통보합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Quarantine Act, Report target for sailing back/flying back instructed.

년(yy) 월(mm) 일(dd)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망경위서 Account of Death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사망자 The dead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Number of Passport)	
	사망 일시 Date of Death	
	사망 장소 Place of Death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습니다) Details of death (Why, How, When, Where, What, Who)	

신고인 Declarer	성명 Name	사망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dead
	전화번호 Tel.	

「검역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I submit 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To.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이 신청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APPLICATION

*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직업 Occupation
	주소 Present Address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비고 Remarks
항공기 등록번호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항공기명 Type of Aircraft		국적 Nationality		항공 회사명 Owner or Operator		
검사 대상자 성명 Name of Pers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목적 Purpose		
열차·자동차명 Train/Car		열차·자동차의 형 Type of Train/Car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화물명 또는 장소명 Article or Place		수량 및 용적 Quantity and Volume		화주 또는 소유자 Owner		목적 또는 생산지 Purpose or Remark		

「검역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의 실시와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execution of as specified below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with regard to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To.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선박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sheet(vol.23) if it's ship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이 신청서는 검역전산망(http://www.portmis.go.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부표 Annex to Application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주 또는 대리점 Ship Owner or Agent					

선박위생관리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분 Type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음 Do not have certificate	발급일 Date		발급기관 port	

구분 Type	용적 또는 면적(m^3/m^2) Space (Sub M, SqM)	기타 etc,	비고(참고) Reference
조리실 Galley			건조년 및 장소 Year built & place
식료품 저장실 Pantry			
창고 Stores			최종 출항지 및 출항일 Last foreign port & date of departure
선창 Hold(s)			입항일(일시) Date of entry
화물 Cargo			
선실 Quarters			입항 시의 화물상태 Cargo situation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Passengers			
- 갑판 Deck			
음용수 Potable water			
하수 Sewage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고형폐기물 Solid waste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고인 물 Standing water			
엔진실 Engine room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자료 첨부 attachment related data		

선박 정박 예정지 현황
Present condition of expected place for anchoring ships

순서 Order	정박지 및 부두명 An anchorage and the name of dock	일시 Date
1		
2		
3		
4		
5		

출항 예정 일시 :
Date of expected departure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년(yy) 월(mm) 일(dd)

선장 또는 회사 (대리점)

서명
Signature _____ 회사 인
Master or authorized agent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증명서 번호 호
CERTIFICATE NO.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Ship sanitation control inspection record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선박명 Name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검사일 Date	
총톤수 Gross tonnage		회사 또는 대리점명 Name of Owner or Agent		등록번호 IMO/Regis	

구분 Type	쥐의 발견 및 흔적 여부 Discovery and Marks of Rats	벌레의 서식 유무 Insects	위생·관리상태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관련 의견 및 조치 The related opinion and action	검체 채취 Sample collection
조리실 Galley					
식료품 저장실 Pantry					
창고 Stores					
선창 Hold					
화물 Cargo					
선원실 Quarters(crew)					
사관선실 Quarters(officers)					
객실 Quarters(cabin passengers)					
갑판 Deck space					
음용수 Potable water					
하수 Sewage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기관실 Engine room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기타 Other					
최종 판정 Last Judgement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소독명령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검역관
Q. Officer (서명)

검역관
Q. Officer (서명)

선장
Signature of Master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No. (앞면)

항구명(Port of) ..... 일시(Date) .....

이 증명서는 검사한 내용과 1) 위생관리면제 또는 2) 위생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This certificate records the inspection and 1)exemption from control or 2)control measures applied

선명(Name of ship or inland navigation vessel) 국적(Flag) 등록번호(Registration/IMO No.)
....

검사 시 선창은 .....톤의 .....화물로 비적재/적재 상태였습니다.
At the time of inspection the holds were unladen/laden with tonnes of cargo

검사 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
Name and belong to inspecting officer

국립○○검역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 분 Areas, [systems, and services] inspected	발견 증거[1] Evidence Found	검체 결과[2] Sample results	검토 문서 Documents reviewed	위생관리 조치 Control measures applied	재검사일 Re-inspection date	발견된 상황에 대한 의견 Comments regarding conditions found
조리실 Galley			의료일지 Medical log			
식료품 저장실 Pantry			선박일지 Ship's log			
창고 Stores			기타 Others			
선창/화물 Hold(s)/Cargo						
선실 Quarters: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passengers						
- 갑판 deck						
음용수 Potable water						
하수 Sewage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고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Solid and medical waste						
고인 물 Standing water						
기관실 Engine room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첨부를 참조 see attached						

* 해당 사항이 없는 구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Note areas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발견 증거 없음, 선박에 대한 위생관리조치를 면제함
No evidence found Ship/ Vessel is exempted from control measures

이와 같은 위생관리조치를 아래 날짜에 실시하였음
Control measures indicated were applied on the date below

발급 담당자의 성명
.....
(Name and designation of issuing officer)

서명날인(Signature and seal)
.....
일시(Date)
.....

서명(Signature)
.....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1] (가) 감염 또는 오염의 증거: 모든 성장단계의 매개체, 동물 병원소, 인간 질병을 비롯하여 건강에 유해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오소를 옮길 수 있는 설치류와 그 밖의 종 및 부적절한 위생조처의 흔적 등. (나) (선박보건상대신고서에 기록된) 인체 감염에 관한 정보 (a)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 including: vectors in all stages of growth; animal reservoirs for vectors; rodents of other species that could carry human disease; microbiological, chemical and other risks to human health; signs of inadequate sanitary measures. (b) Information concerning any human cases to be included in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2] 선내에서 취한 검체 결과, 분석 결과는 선장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다음 기항지에서 이 증명서에 명시된 지검사일에 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sults from samples taken on board: Analysis to be provided to ship's master by most expedient means and, if re-inspection is required, to the next appropriate port of call coinciding with the re-inspection date specified in this certificate.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나, 항만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감염이나 오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추가로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s and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s are valid for a maximum of six months, but the validity period may be extended by one month if inspection cannot be carried out at the port and there is no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

210mm × 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첨부물
ATTACHMENT TO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 분 Areas/facilities/ systems inspected	발견 증거 Evidence found	검체 결과 Sample results	검토 문서 Documents reviewed	위생관리조치 Control measures applied	재검일 Re-inspection date	관련 의견 Comments regarding conditions found
○ 식량(Food)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준비(Preparation)						
- 공급(Service)						
○ 수자원 (Water)						
- 공급원(Source)						
- 보관(Storage)						
- 배수(Distribution)						
○ 폐기물(Waste)						
- 보유(Holding)						
- 처리(Treatment)						
- 처분(Disposal)						
○ 수영장/스파 (Swimming pools /Spas)						
- 장비(Equipment)						
- 운영(Operation)						
○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 장비 및 의료기기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 운영 (Operation)						
- 의약품 (Medicines)						
○ 그 밖의 점검 대상 구역 (Other areas inspected)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CERTIFICATE OF DERATTING AND DISINSECTION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_____

국적 Nationality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열차·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검역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의 쥐·벌레잡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Deratting and disinsection have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 장소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면적 또는 용적 Volume of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비 고 Remarks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증명서 CERTIFICATE OF DISINFECTION

신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 _____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신청인 주소
Address of Applicant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래 화물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under-mentioned Cargo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 화물명 Name of Cargo Disinfected	소독 화물 용적 및 수량 Volume & Number of Cargo disinfection	소독 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소독 약제명 Chemical (active ingredient)	소독 시간 및 온도 Duration and Temperature	투약량 Concentration	화물 분류번호 Distinguishing No.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Bacteriological Tests)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화물명 및 수량
Name, Volume and Number of Cargo _____

「검역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 화물에 대한 _____(병명)의 세균학적 검사를 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s result of Bacteriological tests for _____ (Name of disease) conducted with the above-mentioned Cargo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Law,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given.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검사 방법 Testing Methods	성적 Results	판정 연월일 Date	생산지(오염, 비오염 지역) Production area (Infected, No infected area)	비고 Remarks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BACTERIOLOGICAL AND SEROLOGICAL TESTS

성 명
Name : 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 _____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 _____

국 적
Nationality : _____

성 별
Sex : _____

「검역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 사람의 _____(검체)에 대한 _____(병명)의 세균혈청학적 검사를 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As result of bacteriological and serological tests for _____(Name of disease) conduct with the _____(Materials)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Law,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given.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검사 방법 Method of Test	성적 Result	판정 연월일 Date	비고 Remarks
염색배양 검사 Staining of Culture Tests			
혈청학적 검사 Serological Tests			
그 밖의 검사 Other Tests			

서 명
Signature :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 명
Signature : _____
검 역 소 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소 독 증 명 서
CERTIFICATE OF DISINFECTION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 _____

국적 Nationality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열차·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검역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 장소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면적 또는 용적 Volume of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비고 Remarks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직인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umber	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 즉시 Immediately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구분	[ ]황열 Yellow Fever [ ]콜레라 Cholera [ ]증명서 Certificate	
신청인 Application	성명 Full Name 한글(Kor.)	영문(Eng.)
	주민등록번호 ID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전화 Tel.	성별 Sex
	주소 Present Address	
	국적 Nationality	여행지 Destination
	여행 목적 Purpose of Visit	
	전 발급 장소 Former Issued Office	전 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접 수 날짜도장	

신청인 Application (서명 또는 지장)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To.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면)

WORLD HEALTH ORGANIZATION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REGLEMENT SANITAIRE INTERNATIONAL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CERTIFICATS INTERNATIONAUX
DE VACCINATION

No. _____

소지인
issued to
Délivré à } ----------

여권번호
Passport No. or
Travel Document No.
Numéro du Passeport ou
de la pièce justificative } ----------

대 한 민 국
보 건 복 지 부
REPUBLIC OF KOREA
REPUBLIQUE DE COREE

120㎜×165㎜(황색인쇄용지(특급) 120g/㎡)

(2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이 증명서는 This is to certify that

이 름 Name _____ 성 별 Sex 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_____ 국 적 Nationality _____

국민식별번호(가능한 경우)
National Identification document, if applicable _____

서 명 Signature _____인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질병이나 상태의 명칭) _____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has on the date indicated been vaccinated or received prophylaxis against (name of disease or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백신 또는 예방조치 Vaccine or prophylaxis	일시 Date	담당 의료인의 직급과 서명 Signature and professional status of supervising clinician	백신이나 예방조치의 제조사와 Batch 번호 Manufacturer and batch No. of vaccine or prophylaxis	유효일 Certificate valid From..... ..... until.....	담당 부서 직인 Official stamp of administering center
1.					
2.					
3.					
4.					

120㎜×165㎜(황색인쇄용지(특급) 120g/㎡)

(8면)

이 증명서는 사용 백신이나 예방조치가 WHO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증명서는 의료제공자나 관할 당국의 보건 관련 종사자, 예방조치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기로 된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서에 관할 기관의 직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일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정 예방접종이나 예방조치에 명시된 날짜까지 연장됩니다. 증명서는 영어나 불어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문서에 영어나 불어와 병행하여 다른 언어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if the vaccine or prophylaxis used has been approv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is certificate must be signed in the hand of the clinician, who shall be a medical practitioner or other authorized health worker,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vaccine of prophylaxis. The certificate must also bear the official stamp of the administering center; however, this shall not be an accepted substitute for the signature.

Any amendment of this certificate, or erasure, or failure to complete any part of it, may render it invalid.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shall extend until the date indicated for the particular vaccination or prophylaxis. The certificate shall be fully completed in English or in French. The certificate may also be completed in another language on the same document, in addition to either English or French.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예 방 접 종 증 명 서

피접종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여 행 지	
	여행 목적	

구분 / 종별	접종 연월일		접종량 또는 Lot No.		담당의사 성명
콜 레 라 (콜레라 오염지역만 해당함)	1차		접종량		
	2차		접종량		

위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 의사 성명 (인) (서명 또는 지장)

기관명 (인)

비고: 피접종자는 이 증명서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

접수 Receipt				국제공인 예방접종	민원인					행선지	재교부, 재접종		접종 내용			수수료 (인지)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 발급 결재			완확인 결재 소장
접수월일	접수번호	담당자 성명	검역과장 확인 결재	신청 종류	주소	성 명	성별	연령	국적		전발행처	전발행일	콜레라	황 열	기 타	콜레라	황 열	증명서	발행기관	발행번호	Lot No.	민원사무	통제관	소 장	

510㎜×365㎜(일반용지 7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직위 또는 직명	

담당의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취득 연월일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잉크 스탬프 관인(청색)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청색)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제 호

검 역 공 무 원 증

사 진 (2.5cm×3cm)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검역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검역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00검역소장 직인

(뒷면)

No.

IDENTIFICATION CARD

Name of Quarantine Station :
Official Position :
Name :
Date of Birth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is a Quarantine Officer to execute his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Date of issue :

(Signed)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91mm×61mm(인쇄용지(특급) 120g/㎡)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6.10.4>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08.3.28]

제7조(자격취득의 시기) ①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01.5.24>

1.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조(자격변동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신설 2008.3.28>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2010.1.1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7.13, 2008.2.29, 2008.3.28, 2010.1.18>

[제목개정 2008.3.28]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①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1.5.24, 2004.1.29>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0조(자격득실의 확인)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건강보험증)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3.28, 2010.1.18>

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09.5.21, 2010.3.22>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개정 2006.10.4>

제14조(법인격 등)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8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1.29>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이사장, 이사중 5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9>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29>

제19조의2(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1.18>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⑦ 제5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19조제3항·제5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추천과 임명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5.21]

제2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4.1.29]

제2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제24조(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8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대표권의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재정운영위원회) ①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30>

② 삭제<2006.12.30>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제34조(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5조(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6조(준비금)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3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4장 보험급여

제39조(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2010.1.18>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04.1.29, 2009.1.30>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개정 2006.12.30, 2008.2.29, 2010.1.18>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⑥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2009.1.30>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2006.10.4, 2006.12.30, 2008.2.29, 2010.1.18>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2006.12.30, 2008.2.29, 2010.1.18>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제44조(요양비)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5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7조(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9, 2006.12.30, 2008.3.28>

④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신설 2006.12.30>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제50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

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4조의3(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5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6조(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57조(법인격 등) ①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임원) ①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④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5.7.1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29>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3.28>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0조(자금의 조달 등) ①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의 업무(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제15조·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제17조·제18조·제20조 내지 제22조·제23조·제24조 내지 제30조·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9, 2005.7.13>

제6장 보험료

제62조(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신설 2006.10.4>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0.4, 2006.12.30>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⑥ 삭제<2006.12.30>

제63조(보수월액)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06.12.30, 2008.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개정 2000.12.29, 2008.2.29, 2008.3.28,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99.12.31]

[제목개정 2006.12.30]

제65조(보험료율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08.3.28>

1. 삭제<2008.3.28>
2. 삭제<2008.3.28>
3. 삭제<2008.3.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0.4, 2008.3.28>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12.30]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삭제<2006.12.30>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9.5.21>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8>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1, 2006.10.4, 2011.5.19>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2010.1.18>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12.30]

제71조(연체금) 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3.28, 2009.5.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2009.5.21>

[제목개정 2009.5.21]

제72조(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신설 2006.10.4>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6.10.4, 2008.2.29, 2010.1.18>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8.3.28>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8.3.28, 2010.1.18>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4, 2008.2.29, 2008.3.28, 2010.1.18>

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2009.5.2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제76조(이의신청)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3.28>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⑤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77조(심판청구)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③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78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3.28>

제8장 보칙

제79조(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8.3.28, 2009.5.21>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1의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8>

④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10.4, 2008.3.28>

제80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제82조(신고 등) ①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6.10.4>
②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9.5.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7.29, 2009.5.2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신설 2003.7.29, 2006.10.4, 2009.5.21>

제84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2008.2.29, 2010.1.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6.12.30>

제85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5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1.18>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6조(비밀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제87조(공단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8]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22>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90조(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 본인일부부담금환급금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1조(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법률 제8153호(2006.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개정 2005.7.13>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신설 2008.3.28>

⑥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본조신설 2006.12.30]

제93조의3(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9장 벌칙

제94조(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6.12.30]

제95조(벌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제40조제4항 또는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제99조(과태료) ①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0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6.10.4, 2008.2.29, 2010.1.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

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32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618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799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1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1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4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7377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0호,2005.7.1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4호,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2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부칙 <제9079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9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개정 2010.1.18>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항·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제6항, 부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6.30]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6.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7.7.25]

제3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6.12.30]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7.25>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12.30>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6.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2.30>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12.30>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6조 삭제 <2006.12.30>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9조 삭제 <2006.12.30>

제2장 가입자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문개정 2003.6.27]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조(자산의 관리·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2008.2.29, 2008.7.29, 2010.3.15, 2010.11.15>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6.12, 2008.2.29, 2010.3.15>

제1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에 따라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30, 2007.7.25, 2008.9.3, 2010.9.17>
1. 법 제5조·제6조의2·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52조·법 제62조·법 제70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등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 삭제 <2006.12.30>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1.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제18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공단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08.9.3>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6.30>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09.4.6, 2010.6.8, 2011.2.28>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신설 2010.6.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2010.3.15, 2010.6.8>
④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4.6.29, 2010.6.8, 2011.2.28>

제23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9.27]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9.27>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6.30, 2001.12.31, 2006.12.30, 2007.12.27, 2008.2.29, 2010.3.15, 2010.6.8, 2011.2.28>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7.12.27>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09.6.30>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4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6.30, 2010.3.26, 2011.2.28>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30>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⑥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6.30, 2010.3.26>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6.30, 2010.3.15, 2010.3.26>

[본조신설 2008.11.26]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1.26]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2011.6.30>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7.7.25]

제27조(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6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2008.9.3>

제27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법 제5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에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8>

③공단은 예탁금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6.30>

[본조신설 2004.4.2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업무) ①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2010.3.15>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1.6.30, 2008.2.29, 2010.3.15>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제30조(원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24>

1.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제3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6장 보험료

제31조의2 삭제 <2006.12.30>

제32조 삭제 <2007.7.25>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10.9.17>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1.6.30>

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6.30, 2008.2.29, 2010.3.15>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을 말한다)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6.12.30>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삭제<2005.6.30>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제목개정 2006.12.30]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③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6.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6.12.30, 2011.6.30>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신설 2006.12.30>

⑥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1.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제목개정 2006.12.30]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6.30, 2006.12.30, 2008.2.29, 2010.3.15>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7.25>

②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6.30, 2008.2.29, 2010.3.15>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6.12.30>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개정 2011.6.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5, 2005.6.30, 2010.9.20>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신설 2006.12.30,

2011.6.30>

[본조신설 2001.12.31]

[제목개정 2006.12.30]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2.19]

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 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3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제목개정 2007.7.25]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64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65원 40전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전문개정 2006.12.30]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7.7.25]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본조신설 2008.9.3]

제44조(결손처분)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17]

제45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17>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연체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환급금의 분할 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 이내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②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제46조 삭제 <2000.12.3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등 <개정 2008.9.3>

제47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5>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7.25, 2011.6.30>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5. 삭제<2007.7.25>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7.25, 2008.9.3, 2011.6.30>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5명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7.7.25>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5]

제49조(이의신청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9.3]

제53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목개정 2008.9.3]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제5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6.30, 2006.6.12, 2008.2.29, 2008.9.3, 2010.3.15>

1.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08.9.3>

제5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9.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08.9.3]

제5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5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08.9.3>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0.12.30>

제5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삭제 <2008.9.3>

제8장 보칙

제60조의2(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①공단은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세대주가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등의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1. 공단의 직원 1인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⑥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60조의3(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9.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9.3>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②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 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8.2.29, 2010.3.15>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3]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3.15>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08.9.3]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이 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0.3.15>

④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에 변경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9.3]

제63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17>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08.12.17, 2010.3.15>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7.7.25, 2008.2.29, 2010.3.1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5,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5.12.28]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3.15, 2011.4.22>

[전문개정 2008.9.3]

[제목개정 2011.4.22]

부칙 <제16853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67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7285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7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8028호,2003.6.27>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7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8호,2004.4.24>(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18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6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4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9호,2005.1.5>(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890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9028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93호,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9202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82호,2006.5.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10호,2006.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 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18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0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 (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88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3호,2008.2.19>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986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3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169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

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1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14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부칙 <제21584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823호,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21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같은 호 다목1) 단서·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같은 호 나목·같은 표 제3호가목2)·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같은 호 다목1) 본문·같은 목 2)가) 및 나)·같은 표 제3호다목·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099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9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별첨 1]

부칙 <제22383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66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85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997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8.9.3>

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제2조관련)

구 분	기 관 장
1. 입 법 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2. 행 정 부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교육장
3. 사 법 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
4. 헌 법 재 판 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별표 2] <개정 2011.6.30>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 + 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 + 약가총액×3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환자,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이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정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같은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 산식>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 6세 미만의 사람[가목2)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종별이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이면 그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table>
<tr><th>기관종별</th><th colspan="2">구분</th><th>본인부담액</th></tr>
<tr><td>상급종합병원</td><td colspan="2">외래진료 및 입원진료</td><td>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td></tr>
<tr><td rowspan="3">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td><td rowspan="2">「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td><td>「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td><td>1,500원</td></tr>
<tr><td>그 밖의 외래진료</td><td>1,000원</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td><td>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td></tr>
</table>

			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입원 진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한 경우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없음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2)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 이 별표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이 별표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같은 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10.6.8>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2항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400만원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	300만원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400만원

[별표 3의2] 삭제 <2006.12.30>

[별표 4] 삭제 <2006.12.30>

[별표 4의2] <개정 2011.6.30>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남	20세	60세	20세 이상	30세 이상	-	-	-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성	미만, 65세 이상 (1.4)	이상 65세 미만 (4.8)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	–	–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비 고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75	49,900 초과	11,625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 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5] <개정 2010.3.1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 당 비 율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	-	-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14만원 미만	-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1,4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의 5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개정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분	과태료 금액
1)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과태료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과태료 금액을 계산할 때에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1호	30	60	100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2호	30	60	100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항	500	500	500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3호	30	60	100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99조제2항제4호	30	60	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9.30] [보건복지부령 제00080호, 2011.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6.3, 2005.4.22, 2005.12.30>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2001.6.30, 2004.6.3, 2005.12.30, 2010.9.17>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③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9, 2004.6.3, 2005.12.30>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3.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9, 2004.6.3,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28, 2007.12.31, 2010.9.17>

1. 삭제<2003.1.29>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 삭제<2004.6.3>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12.30, 2008.3.3, 2010.3.19>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5.12.30, 2010.12.15>

②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3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
2.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3.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삭제<2005.7.1>

③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2008.9.4>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 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구분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5.12.30, 2007.7.27>

1. 지역가입자의 경우 : 세대주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⑤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9, 2005.10.17, 2005.12.30>

제4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신고)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9,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2010.9.17, 2010.12.15>

② 삭제<2008.9.4>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9,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2010.9.17, 2010.12.15>

④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2010.9.17, 2010.12.15>

1. 사업장이 휴·폐업되는 때
2. 사업장이 합병되는 때
3. 사업장이 폐쇄되는 때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때

[제목개정 2001.6.30, 2003.6.30, 2007.7.27]

제4조의2 삭제 <2003.6.30>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①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발급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추가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5.10.17, 2007.7.27, 2011.4.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1.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건강보험증이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2009.7.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의2(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9.4]

제6조의3(징수이사 후보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심사는 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사회보험,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지식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8.3.3, 2010.3.19>

제8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7, 2011.1.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7, 2010.3.19, 2011.1.24>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5.7, 2010.3.19, 2011.1.24, 2011.9.3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개정 2008.3.3, 2008.5.7, 2010.3.19, 2011.1.24>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8.5.7, 2010.3.19, 2011.1.24>

제9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1.6.30, 2004.3.30>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제10조의2(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7.22>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2.6, 2010.3.19>

[본조신설 2008.3.18]

[제목개정 2009.2.6]

제10조의3(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2.6, 2011.7.22>

[본조신설 2008.3.18]

[제목개정 2009.2.6]

제10조의4(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개

정 2009.2.6>

[본조신설 2008.3.18]

[제목개정 2009.2.6]

제11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8.3.3, 2010.3.19>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6.12.30>

②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질병 또는 부상명
4.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의 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요양기관장비현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30, 2004.3.30, 2005.7.1, 2005.10.17, 2007.12.31, 2010.9.17, 2011.9.30>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의료기관개설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신고·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료장비현황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10.9.17, 2011.9.30>

⑤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신고(허가·등록)일자, 폐업일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내역 등

⑥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1.9.30>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기준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개정 2000.12.30, 2001.6.30, 2011.7.22>

③공단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0.12.30>

⑤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13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4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04.6.3, 2008.3.3, 2010.3.19, 2011.7.22>

②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2.10.24, 2007.7.27, 2011.7.22>

[제목개정 2011.7.22]

제15조(요양비)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2006.10.18, 2008.3.3, 2008.11.26, 2010.3.19, 2011.6.16>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10.18, 2008.3.3, 2008.11.26, 2010.3.19, 2010.9.17, 2011.6.16>

1. 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것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8, 2011.6.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1부
   나.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5.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0.18, 2008.3.3, 2010.3.1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1.6.16>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해당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6.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10.18, 2008.3.3, 2010.3.19, 2010.9.17, 2011.6.16>

제16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이하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9.7.1, 2010.3.19>

[본조신설 2008.11.26]

[제목개정 2009.7.1]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1.26]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5.29, 2010.12.15>

②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29, 2005.7.1, 2006.10.18, 2008.2.15, 2008.5.29, 2009.2.6, 2010.3.19, 2010.9.17, 2010.12.15, 2011.9.30>

1. 삭제<2006.10.18>
2.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삭제<2010.9.17>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9.17, 2010.12.15>

1.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08.5.29, 2010.3.19, 2010.9.17, 2010.12.15>

⑤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8.2.15, 2010.9.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8.2.15, 2008.5.29, 2010.3.19, 2010.9.17, 2010.12.15>

제19조(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①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급여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기타 적정성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요양비의 심사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라 함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과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요양비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3, 2010.3.19>

제2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3.30, 2005.4.22, 2008.3.3, 2008.9.4, 2010.3.19>

1.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2.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3. 한의사인 경우에는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
4. 약사인 경우에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3.3, 2008.9.4>
②비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 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위원의 해임·해촉)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부담금 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법 제34조 및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3.3, 2010.3.19>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10.9, 2008.3.3, 2010.3.19>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당해 연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이를 정산한다.
④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매분기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한다.
⑤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31조(준용규정) 제7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32조 삭제 <2007.7.27>

제33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10.17, 2007.7.27>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7.7.27>

제34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35조(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 내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변경한 때 또는 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험료의 부족액

을 추가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직장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35조의2(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6조 삭제 <2008.9.4>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27, 2007.12.31, 2008.3.3, 2008.9.4, 2010.3.19>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영 제4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본조신설 2007.7.27]

제3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7>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

하여 지역가입자의 납부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공단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연도·금액 및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인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4.22>

제40조(공매대행의 세부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⑤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4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7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9.4, 2010.3.19, 2010.9.17>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9.17]

제42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기한) 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입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때에 보험료등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2.31>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15>

③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0.12.15>

[본조신설 2006.12.30]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로 한다.<개정 2011.6.16>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4]

제43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76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심사평가원의 처분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6.30>

제43조의2(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소득축소·탈루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43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4]

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제44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9.2.6>

1. 가입자의 자격취득·변경 및 상실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교부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대상 및 위탁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신설 2008.11.26, 2009.7.1, 2010.3.19>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2.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6, 2009.7.1>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중 1부
2.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②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1. 외국인 :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2. 재외국민 :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④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⑤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7.7.27, 2008.3.3, 2010.3.19>

[전문개정 2005.12.30]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4.6, 2010.3.19>

[본조신설 2007.7.27]

제45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동시기 등) ①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64조의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③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②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제4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9.4]

부칙 <제157호,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4조 (부담금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단의 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2000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서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요양비지급신청서, 요양기관현황신고서 등을 피보험자 또는 요양기관 등이 공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사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심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신청

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청전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의료보호진료비심사"를 "의료급여비용심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5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2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통보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적용·변경통보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을 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영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284호,200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부칙 <제314호,2005.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6.5.24>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06.10.18>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본인부담액보상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호,2007.9.27>(광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24호,2007.12.2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청구서 또는 통보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9호,2008.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08.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200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2008.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58호,200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제1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7조 및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103호,200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자격 취득일	학력	직종	주 소정 근로시간	계약종료일 (계약직인 경우만 작성)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② 생략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다목1) 질병의 종류란·마목1) 및 2)·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2)의 규정 외의 부분·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민 연 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부칙 <제20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40조의2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보조기,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호,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및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른 신고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칙 <제39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호,2011.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적용례)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별표 6 제1호사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1.7.2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 거 시	비 동 거 시
1.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인정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5.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개정 2011.1.24>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삭제 <2011.1.24>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나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의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0.12.15>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1항 관련)

1. 의원 및 보건의료원

기관종별	환자의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100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2.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기관종별	진 료 과	요양급여비용 총 액	진료내역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치과 한 방 과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의과·치과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법제처	침·구·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보 건 진료소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원

[별표 4] <개정 2011.9.30>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th><th>환자의 연령</th><th>투약일수</th><th>본인부담액</th></tr>
<tr><td rowspan="3">1.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td><td>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td><td></td><td></td><td rowspan="2">1)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2)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td></tr>
<tr><td>나.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td><td>65세 미만</td><td></td></tr>
<tr><td></td><td>65세 이상</td><td></td><td>1,200원</td></tr>
<tr><td rowspan="4">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td><td>가.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td><td></td><td></td><td>요양급여비용총액×40/100</td></tr>
<tr><td rowspan="3">나. 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td><td></td><td>1일</td><td>1,400원</td></tr>
<tr><td></td><td>2일</td><td>1,600원</td></tr>
<tr><td></td><td>3일 이상</td><td>2,000원</td></tr>
</table>

[별표 5] <개정 2010.3.19>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0조관련)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총액(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써 당해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다.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 다만,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를 공여한 자에게는 확인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

라. 왜소증의 원인감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 다만, 진단결과 기질성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

마.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여부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

바.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기피로 인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아.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1)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2) 인공요도괄약근, 혈관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혈관내 영상카테타 등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3) 프로스타그란딘 F_1알파(정밀측정),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자.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사목 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1)에 해당하는 비용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별표 5의2] <개정 2011.7.22>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분	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자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

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 <개정 2011.9.30>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1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받은 것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의료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품목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에 대하여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의지·다리의지·팔보조기·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마.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바.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한다.

2.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very short below-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다리 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		1,740,000	4

		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의 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290,000	3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긴 팔 보조기 -일반형(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토마스소프트칼라(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척추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brace)				
	허리·엉치뼈 보조기 -윌리암식(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콜 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골반 보조기 부착(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부착(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190,000	3

	치 부착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무릎관절 보조기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무릎관절 체중부하식(patellar tendon bearing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크렌자크식(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90° 고정(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
기타 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목발(crutches)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구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2개 1세트)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구 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4. 기 타

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로 본다.

나.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별표 6의2] <신설 2008.9.4>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5제3항 관련)

신 고 인	지 급 기 준	
1.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신고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30/100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1,100만원 + (5,0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2. 진료를 받은 자가 자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 40/1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 (1,000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징수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 (2,0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개정 2010.12.15>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45조제2항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별표 8] <개정 2010.12.15>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제45조제3항관련)

체류자격(기호)	구 비 서 류
문화예술(D-1)	○재직증명서
유 학(D-2)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산업연수(D-3)	○연수계약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연수(D-4)	○연수·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취 재(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 교(D-6)	○파송명령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 재(D-7)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투자(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역경영(D-9)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 수(E-1)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화지도(E-2)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 구(E-3)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술지도(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직업(E-5)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술흥행(E-6)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정활동(E-7)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수취업(E-8)	○연수취업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전문취업(E-9)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항선원(E-10)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동거(F-1)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거 주(F-2)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동 반(F-3)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재외동포(F-4)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영 주(F-5)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관광취업(H-1)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취업(H-2)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6>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기관)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명칭	③전화번호
가입자	④성명	⑤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관계	⑧성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취득(상실) 년 월 일	⑪취득(상실) 부호	⑫장애인·국가유공자		⑬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관리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④ ~ 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⑧ ~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변경<06>,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16>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자격취득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특수직종근로자 [ ]광원 [ ]부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취득월 납부여부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해당자의 경우	자영자 영업형태	경영구분 [ ]자가 [ ]임대	경영면적 ㎡	종업원수 명
			영업장소재지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간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전자고지신청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등록)지	우편번호(-)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취득(변동) 일자	취득(변동)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부호/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6, D-7, D-8, E-4), 고용 또는 연수취업계약서(E-1부터 E-3까지, E-6부터 E-8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6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2)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자고지와 우편고지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수령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자격취득부호 등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국민연금	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건강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 〈00〉, 출생 〈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 〈17〉, 기타 〈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 〈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11〉, 입국 〈12〉, 군 제대 〈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20〉, 출국 〈21〉, 군 입대 〈22〉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6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 피해)}{농어촌경감 :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6.(기타)}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6.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15>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6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원)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원)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월평균보수(원)	학력	직종	자격취득일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비고
1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00(유학생의 경우 0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관리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금융·보험 관련직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 관련 단순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화학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여부
				종별부호 /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여부란에 "○" 표시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4.16>

[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세대주 ※ 건강보험만 적습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변경(상실) 연 월 일	변경(상실)부호		외국인		변경내용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국적	체류자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자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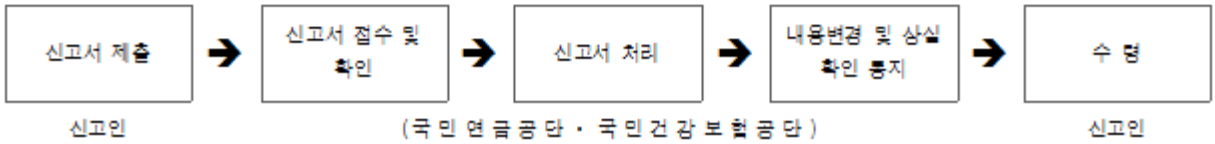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 국외거주<14>,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건강보험	【상실부호】 :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0.12.15>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총액
								당해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 월수	보수총액	산정 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확인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6.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6.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6일/1월6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종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0.12.1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유의사항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16>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자고지신청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 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 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작성 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 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 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 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 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 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 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연월일" 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 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6.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현황' 및 '영업소현황' 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제3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 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 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등일).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해당(적용)·보험관계 성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0.12.16>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6.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0.12.16>

국민연금 [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 [ ]폐업 [ ]통·폐합 [ ]사업종료 [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발생일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수	소멸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사유" 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별지 제5호의4서식] 삭제 <2003.6.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9.4>

건 강 보 험 증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 명	진료(조제)일자	요양기관기호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 명	진료(조제)일자	요양기관기호

지켜야 할 사항

1.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
2.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제한기간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된 때에는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6. 이 증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고치지 마시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강보

(도

국민건강

325mm×127mm(보존

가 입 자(세 대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리 번 호)		
증 번 호		
사 업 명	기 호	
	명 칭	
소속지사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Homepage : www.nhic.or.kr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급 여 개 시 유 효 일
발행일자 :		

보험급여기록(입원)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 명	입원일자	요 양 기 관 기 호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료받으신 분은 이를 확	
성 명	진 료(조 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4.16>

건강보험증 ([ ] 기재사항변경 / [ ] 추 가 발 급) 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1] 지역가입자 [ ]	
세대주	①증 번호
	②성명
	③주민(외국인)등록번호

[2] 직장가입자 [ ]	
사업장	④사업장관리번호
	⑤명칭
가입자	⑥성명
	⑦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⑧성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기재사항변경 [ ]		⑬ 추가발급 [ ]	
			⑪변경신청항목	⑫변경신청 후 내용	⑭발급사유	코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제출서류 (추가발급만 해당)	교육(재학, 재원증명서) ·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 미혼여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공통사항

지역가입자는 '1 지역가입자 [ ]'에 [√]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2 직장가입자 [ ]'에 [√]표시합니다.

① ~ ⑦: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증번호·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칭,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④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⑧ ~ ⑨: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⑩ :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⑪ ~ ⑫: 변경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후 내용(급여정지·해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변경신청항목: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별·등급·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전역일,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소·출소 등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성명	김종모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장애종별 · 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추가발급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⑬ : 추가발급에 [√]표시합니다.

⑭ : 추가발급 신청사유(19세미만, 교육, 등일주소지 분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단순1장 더 등)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건강보험증 발급 및 송부	→	수 령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4>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개 설 자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4>

인정번호
제 호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요양기관기호 :

기 관 명 :

개 설 자 : (생년월일 :)

귀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9.30>

(앞 쪽)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지역코드( )

※①요양기관기호		※표시과목 ( )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 일자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⑥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⑦면허번호		⑧전문의자격종별		⑨전문의자격번호		⑩종별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 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90 한의과대 학부속한방병원 91 국립법원 한방 진료부 92 한방병원 93 한의원

구 분	⑪우편번호	⑫소 재 지 (주소)	⑬전화번호	※ ⑭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함)
요양기관	□□□ - □□□			
			FAX)	
개설자 (대표자) 집주소	□□□ - □□□	⑮	집)	
			HP)	
⑯개설자(대표자) E-mail 주소		⑰청구S/W업체명(P/G명)		

⑱설립구분	01 국립	03 공립	04 학교법인	05 특수법인	06 종교법인	07 사회복지법인	08 사단법인	09 재단법인	10 회사법인	11 의료법인	12 개인	13 군법원	14 기타	※ 해당 신청란에 (V) 표시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⑲금융기관명	⑳예금주	㉑계좌번호

㉑ 시 설 현 황

구 분	신고(허가) 총병상	입원병실(신고·허가사항) 계	일반입원실 상급	일반입원실 일반	정신과폐쇄 상급	정신과폐쇄 일반	중환자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등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감염내과치료실	밥사선옥소	낮병동
병 실																					
병 상																					

기 타	조혈모세포처치실(유□ · 무□)	혈액은행(유□ · 무□)	임상검사실(유□ · 무□)	모자동실(유□ · 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신고(허가) 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 란에 별도 내용 기록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

비고

㉒ 운 영 현 황

1. 의약분업에외지역기관( ) 2. 응급의료기관( ) 3. 공휴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V 표시로 구분함. 구비서류는 아래의 1~8번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의약분업에외지역 관련 지정통보 문서 사본 2.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 공휴이용계약서 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 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관련 사본
6. 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8. 결핵균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㉓ 인 원 현 황 층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위생사	명
01	의사	일반의	명	06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인턴	명			간호사 명	15	물리원소최급자(일반)	명
		레지던트	명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물리원소최급자(특수)	명
		전문의	명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최급감독자	명
		(조혈모세포이식 담당 의사)	명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계	명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뒤 쪽)

㉔ 진료과목 현황 총_____과목

요양기관명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레지던트	계	코드	진료과목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01	내 과	ⓐ ⓑ		명	11	소아청소년과	ⓐ ⓑ ⓒ		명	21	재활의학과			명	50	구강악안면외과			명	80	한 방 내 과			명
02	신 경 과			명	12	안 과			명	22	핵의학과			명	51	치과보철과			명	81	한방부인과			명
03	정 신 과		ⓐ ⓑ	명	13	이비인후과			명	23	가정의학과			명	52	치과교정과			명	82	한방소아과			명
04	외 과			명	14	피 부 과			명	24	응급의학과			명	53	소 아 치 과			명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명
05	정형외과			명	15	비 뇨 기 과			명	25	산업의학과			명	54	치 주 과			명	84	한방신경정신과		ⓐ ⓑ	명
06	신경외과			명	16	영상의학과			명	26	예방의학과			명	55	치과보존과			명	85	침 구 과			명
07	흉부외과			명	17	방사선종양학과			명						56	구 강 내 과			명	86	한방재활의학과			명
08	성형외과			명	18	병 리 과			명						57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명	87	사상체질과			명
09	마취통증의학과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명						58	구강병리과			명	88	한방응급과			명
10	산부인과			명	20	결 핵 과			명						59	예 방 치 과			명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록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
▣ 내과전문의는 갑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수, ⓑ갑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갑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수, ⓑ갑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

㉕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명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고

법제처 1392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0호의2서식] 삭제 <2010.9.17>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0.9.17> (앞 쪽)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코드( )

| | | |

(뒤 쪽)

⑰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명

(단위: 명)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 고
		법제처			139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9.30> (앞 쪽)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뒤 쪽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소 재 지	(-)		
신고자 성명		요양기관 (대표전화번호)		신고자 (연락처)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시설현황(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운영현황(의약분업,응급,공동이용,개방병원,가정간호,인공와우,촉탁)			
□ 기타(교육이수 등)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최종 근무일자	근무 형태	비 고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 기록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변경사항 포함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록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록)
▣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기록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구 분	신고 (허가) 종별상	입원병실(신고·허가사항) 계	일반입원실 상급	일반입원실 일반	정신과폐쇄 상급	정신과폐쇄 일반	중환자실 성인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등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심장실	물리치료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탈사설육소	낮병동
병 실																					
병 상																					

기 타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무□)	혈액은행 (유□ · 무□)	임상검사실 (유□ · 무□)	모자동실 (유□ · 무□)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해당 사항란에 (V) 표시

1·2번은 지정서 사본 1부 , 3·4번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5·6번은 운영현황(인력,시설,장비등) 관련 사본 1부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변경된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8.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법제처 1406 국가법령정보센터

(뒤 쪽)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없음
(2) 소재지	개설허가(신고·등록)필증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면허증, 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5) 병실수 및 병상수		○없음
(6) 휴·폐업 또는 재개업일		○없음
(7)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8)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없음
(10) 응급의료기관 지정·변경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11)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규 또는 취소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12) 개방병원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9.30>

(앞 쪽)

의료장비 현황(변경)통보서

□ 신규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주소)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본사항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			제조사항			구입 세부사항				기타		사용중지		코드
장비 번호	장비명	허가(신고) 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 회사	제조 연월	제조 번호	구입 금액	도입 형태	중고 구분	구입 일자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설치 장소	구분	일자	

구비서류

1.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5.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법」에 의한 의료장비 한한다)

※ 제2호 내지 제4호는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뒤 쪽

의료장비 현황(변경)통보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도 고시의 「의료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의 해당사항을 작성

3. 제조사항은 의료장비에 부착(또는 별도표시)된 제조내역의 해당사항을 작성

○ **제조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제조시 "201102")

4. 구입 세부사항

○ **구입금액**은 구입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외국에서 구입시 당시 환율로 환산)

○ **도입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

○ **중고 구분**은 1. 신장비, 2. 중고장비 중 선택하여 작성

○ **구입일자**는 8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구입시 "20110225")

5. 기타사항

○ **설치장소**는 1. 중환자실, 2. 응급실, 3.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6. 사용중지는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중지 하는 경우에만 작성

○ **구분**은 1. 양도, 2. 폐기, 3. 이전, 4. 사용중지, 5.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일자**는 8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사용중지시 "20110225")

7. 코드 : 심사평가원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가 부착된 의료장비의 경우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 또는 RFID tag를 reader로 읽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상품식별 코드 / 생산일자 /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6.16>

요양비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등록번호		-	-			
①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⑪당뇨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개수/일	개	지급일수	일	
						지급총액	원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⑯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				
⑰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월·일을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⑪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1일당 개수와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⑫~⑯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를 구입한 의료기기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⑰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1.6.16>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앞쪽)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⑯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7. 7차 8. 8차 9. 9차 10. 10차 11. 11차 12. 12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기재합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제조년·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 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가능)로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1.6.16>

산소치료 처방전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운동시	L/분	시간
	취침시	L/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PaO_2)이 56mmHg 미만 ☐ 산소포화도(SaO_2)가 88% 이하	
		☐ 산소분압(PaO_2)이 56~59mmHg ☐ 산소포화도(SaO_2)가 89%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1년 이내) 가능함)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결핵과·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년 이내)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7.12.3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7.7.2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9.30>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하는 자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②보장구	명칭	코드
	③구입일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⑥장애 발생 경위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후천성사고 장애인의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기준액	⑧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상세내역		
		⑨실구입금액(⑩+⑪)	⑩본인부담액	⑪청구금액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심사결정 내용			

⑫수령인	⑬금융기관명	⑭계좌번호	⑮예금주	⑯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판매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⑰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달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 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규칙 별표6 제2호의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만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중 최저가 20%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내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⑪: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 (⑦,⑧,⑨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경감대상자는 아래 별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6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1,600,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을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1,336,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범위내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600,000원)를 6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실구입금액의 최저 금액인 6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6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 금액인 150,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의 청구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를 적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86%를 적습니다.
⑫: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⑬ ~ ⑯: ⑫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⑰: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의 2서식] <개정 2011.9.30>

보장구급여신청서

급여 받을 자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보장구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1부

보장구급여대상여부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결 정 사 항	1. 급여승인 2. 급여불승인
급여불승인사유	
급여승인 보장구 품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16>

보장구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처방보장구	품목			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사결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하는 경우)	상지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 )점
	일상생활동작검사 (바델지수, MBI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평가	[ ]적합 [ ]부적합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6.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9.30>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전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급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급

보장구	품목	코드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 ]의지·보조기 기사 [ ]작업치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면허)번호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12.31> (앞 면)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

①증 번 호		②가입자 (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③진료받은 사람 (수 진 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④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진료기간			
⑥상병명		⑦상병분류기호		⑧상해외인코드		
⑨가해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사고일시		
⑪요양기관명칭			⑫소 재 지			
⑬사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뒷 면)

기 재 요 령

① : 가입자의 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④ :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⑤ : 진료개시 연·월·일 및 진료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시 1 :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2000.7.1~2000.7.5>
<예시 : 2000년 7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2000.7.1~현재>
⑥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부위 및 상병명을 적습니다.
<예시 : 왼쪽 팔골절>
⑨ : 부상을 입힌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 사고가 발생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예시 : 2000.7.1, 13시 30분>
⑪ ~ ⑫ : 진료받고 있는 병·의원의 이름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⑬ :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7.12.31>

(앞 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사 업 장 (기 관)	관리번호		○ 단위사업장명 :		○ 회계 :	
	명 칭					
	작 성 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①연번	②증번호	③성 명	④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	⑦ 전년도보수총액	⑧근무월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신고자(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기재요령

① ~ 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⑦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⑧근무월수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일부터 기재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03.1.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4.16>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회계명			
사업장(기관)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전화번호

	④연번	⑤성명	⑥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⑦변경 후 보수월액	⑧보수변경 월	⑨변경사유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① ~ ③: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⑧: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⑨: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보수월액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4.16>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부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고지번호		
	④주소	⑤이동(일반)전화번호	

신청내역	⑥분기납 희망기간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보험료부터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보험료까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납부고지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분기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보험료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기별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월 보험료부터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①·②: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보험료납부 고지번호를 적습니다. 고지서 분실 등의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④·⑤: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이동(일반)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보험료 분기납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달 및 종료하고자 하는 달에 [√]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분할납부 고지서 발송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1.4.16>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체납 세대/사업장	①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②세대주/대표자 성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이동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체납 내역	체납기간(개월 수)	체납보험료	가산금	계

가입자별 체납내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이전 증번호	체납 개월 수(금액)	급여제한대상 여부

⑦분할납부신청내역(총 회)

고지 횟수	보험료 체납월	체납금액 (보험료+가산금)	납부기일	고지 횟수	보험료 체납월	체납금액 (보험료+가산금)	납부기일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자동이체신청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체납 세대/사업장으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 **6월(6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2.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작성방법

① ~ ②: 건강보험증에 적힌 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③ ~ ⑥: 주소,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적습니다.
⑦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총 횟수를 적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절차

①분할납부 신청 ※ 인정요건: 3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②분할납부 승인 ※ 승인 및 신청 시 고려사항

- 분할납부 횟수 : 24회(24월) 이내
- 분할납부 금액 :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

③분할납부 고지 ※ 분할납부 신청 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음

↓

④체납보험료 납부

⑤체납보험료 미납부(2회 이상)

※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시 분할납부승인 취소, 급여제한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주의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10.12.16>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사항1 [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2 [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3 [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작성방법

- "사업장" "가입자"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하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및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보험"과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 또는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란"에 전자고지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발송" 여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사항2"란과 "신청사항3"란을 활용해 주십시오.
-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08.9.4>

(앞 면)

사업장	관리번호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 신청서 ☐ 해지 신청서										
	명 칭												

① 연번	② 건강보험 증 번 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고지유예 적용일	⑥ 유예 사유 (코드)	⑦ 사유별 고지유예 기간			⑧ 고지유예 해지일	⑨ 해지 시 보수월액 (원)	⑩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		⑪ 분할 납부 횟수
						유예 사유	시작일	종료일			연도	보수총액(원)	
													회
													회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 고지 유예 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 (일반용지 60g/㎡)

(뒷 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해지 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① ~ ④ : 연번,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 납입 고지 유예 적용일(사유발생일)을 기재합니다.

⑥ : 납입 고지 유예의 사유(코드)를 기재[신청구분이 ☑ 신청서인 경우에는 ⑥번 항목까지만 기재]합니다.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기타의 사유(89)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기타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 ⑦ ~ ⑪는 신청구분이 "☑ 해지 신청서"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⑦ : 사유별로 납입 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전체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 : 납입 고지 유예 해지일을 기재하되, 해지일은 납입 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⑨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기재하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⑩ :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기재하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기재합니다.

※ 유예 사유가 육아휴직(82)인 자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의 사유(89)인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 납입 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일괄 납부의 경우는 분할 납부 횟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 납부는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6>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처분의 내용	(처분지사 :)	(여백부족 시 별지사용)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⑤처분지사의 고지유무		고지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 )

주소 전자우편주소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기재).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습니다.

※ (처분지사 :) 해당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

③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⑤ 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4.16>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신청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주문		
원처분 요지		
이의신청취지		
결정이유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시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2005.7.1>

<table>
<tr><td colspan="9">이의신청서</td><td>처리기간
60 일</td></tr>
<tr><td colspan="2">문서번호</td><td></td><td colspan="2">진 료 분 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요양기관</td><td>명칭</td><td></td><td rowspan="4">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td><td>접수번호</td><td></td><td rowspan="4">첨부서류</td><td rowspan="4">1. 심사결과통보서
2. 진료기록보
3. X-ray film
4. 검사결과지
5. 기타</td></tr>
<tr><td>기호</td><td></td><td>묶음번호</td><td></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 건수 총계</td><td></td><td>심사차수</td><td></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 비용 총액</td><td></td><td>통보서 도달일자</td><td></td></tr>
<tr><td colspan="2">처분청의 고지유무</td><td></td><td colspan="2">고지내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순번</td><td rowspan="2">명 세 서 일련번호</td><td rowspan="2">수진자</td><td rowspan="2">진 료 구 분 (입원·외래)</td><td colspan="2">이의신청</td><td rowspan="2">이의신청사유 및 내역 (상세히 기술)</td><td rowspan="2">첨부서류</td></tr>
<tr><td>Ⅰ항</td><td>Ⅱ항</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9">「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9">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td></tr>
</table>

(주) 첨부서류란은 수진자별로 상단의 첨부서류의 해당번호를 기재하며, 기타는 해당 자료의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0.3.19>

이의신청결정서

문서번호		수신자성명 (주 소)	
관련근거			

귀원(공단)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접수번호	심사차수	명 세 서	수 진 자	심사결정금액		결정내용
				Ⅰ항	Ⅱ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5.7.1>

<table>
<tr><td colspan="6">이 의 신 청 서</td><td>처리기간
60 일</td></tr>
<tr><td>문서번호</td><td colspan="2"></td><td>평가대상(항목)</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요양기관</td><td>명 칭
(기 호)</td><td colspan="2">(　　)</td><td rowspan="4">신청인</td><td>성 명</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주 소</td><td></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처 분 의
내 용</td><td colspan="6">※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td></tr>
<tr><td colspan="3">처분이 있은(도달한) 날</td><td colspan="4">년　　월　　일</td></tr>
<tr><td>이의신청
취 지 와
이유</td><td colspan="6">※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사실강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td></tr>
<tr><td colspan="2">처분청의 고지유무</td><td></td><td>고지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7">※ 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0.3.19>

이 의 신 청 결 정 서

제 호

신청인 요양기관명(기호) : ( )

소 재 지 :

성 명 :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문 :

원처분 요지 :

이의신청취지 :

결 정 이 유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1.4.16>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종목	전화번호
혐의사실		
증빙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 등을 통보하니,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11.4.16>

포상금 지급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③신고 접수번호		④통보서 수령일
	⑤신청금액		
	⑥금융기관명		⑦계좌번호
	⑧예금주	성명	⑨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통장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신청인 입증자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말합니다.

작성방법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③ ~ ⑤: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⑥ ~ ⑨: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포상금 지급대상여부확인	→	확인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수 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4.6> (앞 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가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사업장(기관)	④명 칭										
		⑤재직기간	. . . ~ . . . (개월)									
		⑥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원									

⑦ 피부양자	⑧ 관계	⑨ 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⑪장애인·국가유공자		⑫외 국 인			추가발급코드
				종별부호 /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전 당해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법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12개월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작성요령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탈퇴"에 ☑ 표기 합니다. ① ~ ③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재직기간 및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 ※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 ⑦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단,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⑧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⑨,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⑫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0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③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2008.3.21>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1>

제4조 삭제 <2009.12.29>

제2장 신고 및 보고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

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2010.1.1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2010.1.18>

제6조 삭제 <2008.3.21>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검진

제8조(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0.1.18>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2010.1.18>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1]

제9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2008.3.21>

[제목개정 1988.12.31]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증표제시)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10.1.18>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의2 삭제 <1999.2.8>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1999.2.8]

제17조 삭제 <1999.2.8>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18조(취업의 제한) ①감염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3.21>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3.21>

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1995.12.30, 1999.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1995.12.30]

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2008.3.2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인을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8.3.2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943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7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0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5호,2007.5.1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 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7호,2009.12.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2조(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3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3.25, 2006.6.12,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2008.2.29, 2010.3.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진대상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3.15>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1조(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12조(검진통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②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3>

제14조 삭제 <1999.6.16>

제15조 삭제 <2008.9.3>

제16조 삭제 <1999.6.16>

제17조 삭제 <1999.6.16>

제17조의2 삭제 <1999.6.16>

제18조 삭제 <1999.6.16>

제19조 삭제 <1999.6.16>

제20조 삭제 <1999.6.16>

제21조 삭제 <1999.6.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3]

제23조 삭제 <2008.9.3>

제24조(부양가족의 생활보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의 부양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전문개정 2002.3.25]

제27조 삭제 <2008.9.3>

부칙 <제12471호,1988.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2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4호,1993.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1994.12.2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5호·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내지 <140>생략

부칙 <제15732호,1998.2.2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16401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3호,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3호,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9513호,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679호,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987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장기·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3.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가검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5]

제3조 삭제 <2008.9.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5]

제5조 삭제 <2008.9.5>

제6조(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1. 질병관리본부장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9.5>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가검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9.5, 2010.3.19>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27, 2005.9.28>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개정 1999.8.10, 2008.9.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1999.8.10]

제12조 삭제 <1999.8.10>

제13조 삭제 <1999.8.10>

제14조 삭제 <1999.8.10>

부칙 <제858호,199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03.12.27>(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327호,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05.10.17>(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08.9.5>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08.9.5>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가. 시설: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화장실 및 욕실 등 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
2.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	가. 시설: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에 필요한 시설(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나. 인력: 상근관리자 1명 이상, 상담·운영요원 1명 이상, 자원봉사자 2명 이상 다. 기타: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1 이상의 프로그램 마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9.5> (앞쪽)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 / 팩스( ) -				
(①부서명) (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사망) 신고·보고**				
신고 구분	☐ 인체면역바이러스 감염인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가검물번호③
최초진단일	년 월 일	확인검사 기관	☐ ( )보건환경연구원	
확인진단일	년 월 일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검사소견	☐ 면역기능(CD4 T세포수)_____(cells/㎖) ☐ 바이러스 양(Viral load)_____(copies/㎖) ☐ 검사안함		추정 감염경로	☐ 이성과의 성접촉 ☐ 동성과의 성접촉 ☐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 수혈 ☐ 수직감염 ☐ 모름 ☐ 기타 ( )
사망여부	☐ 사망 ☐ 생존	사망자 성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요사망원인 (진단명)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과 후천성면역결핍증과의 관련성		☐ 유 ☐ 무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관련 임상증상 (사망전 주요증상 포함)	☐ 기관지, 기도, 또는 폐 칸디다증 ☐ 식도 칸디다증 ☐ 침습성 자궁경부암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폐외 크립토코쿠스증(cryptococcosis) ☐ 만성(1개월 이상) 장 크립토스포로디움증 ☐ 간, 비장, 림프절 이외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 ☐ HIV관련 뇌증 ☐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궤양(1개월 이상), 기관지염, 폐렴, 또는 식도염 ☐ 파종성 또는 폐외 히스토플라스마증 ☐ 만성(1개월 이상) 장 이소스포라증		☐ 카포지 육종 ☐ 버키트 림프종 ☐ 원발성 뇌 림프종 ☐ 파종성 또는 폐외 결핵 ☐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 kansasii* 에 의한 폐 또는 폐외 감염증 ☐ 그 밖에 균종의 Mycobacterium에 의한 폐외감염증 ☐ 주폐포자충 폐렴 ☐ 반복되는 폐렴 ☐ 진행성 다발성 백질뇌증 ☐ 반복성 살모넬라 패혈증 ☐ 뇌 톡소플라즈마증 ☐ HIV에 의한 소모증후군 ☐ 기타 ( )	
④요양기관지정번호: ⑤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⑥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①, ②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③가검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④, ⑤란은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⑥란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1. 인체면역바이러스 감염인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인이 환자로 진행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2. 인체면역바이러스 감염인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3.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이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3.19> (앞쪽)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 / 팩스( ) - (①부서명) (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감염인 발견신고**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가검물번호③	
연구 또는 검사일	년 월 일		
확인진단 방법		확인검사 기관	□ ( )보건환경연구원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확인진단일	년 월 일		

④ 연구 또는 검사자의 소속기관:

⑤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 (⑥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①, ②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③ 가검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④, ⑤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⑥란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1.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대한 검사에 의하여 인체면역바이러스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여 주십시오.
2.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이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9.5>

<table>
<tr><td colspan="5">검진통지서
일련번호 호</td></tr>
<tr><td rowspan="2">검진
대상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검진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검진 일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검진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검진기관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진할 것을 통지하오니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기관에 나오셔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td></tr>
</table>

190㎜ × 268㎜[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9.5>

검진독촉통지서

일련번호 호

검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초 검진지시 일시	년 월 일			
검진 연기사유				
검진 일시	년 월 일			
검진기관명				
검진기관 소재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진할 것을 독촉하오니 검진일시에 검진기관에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190㎜ × 268㎜[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9.5>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기관명:

일련번호	검진일자(채혈일)	인적사항					검사완료(의뢰)			확인검사			비고
		검진목적①	성명	가검물번호②	주소	전화번호	일자	결과	회보일	의뢰일	회보일	결과	

작성요령: ① 검진목적에 정기검진대상자인 경우는 "1", 수시검진대상자인 경우 "2"로 구분하며, 수시검진대상자 중 배우자 및 성접촉자(사실혼 포함) "2-1"로, 외국인인 경우 "2-2"로, 기타는 "2-3"으로, 자발적인 검진인 경우 "3"으로 기록합니다.

② 가검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353㎜ × 25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9.5>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검진목적 기관명:

일련번호	검진일자 (채혈일)	가검물번호①	검사완료(의뢰)			확인검사			비고
			일자	결과	회보일	의뢰일	회보일	결과	

작성요령: ① 가검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353㎜ × 25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8.9.5> (앞쪽)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 / 팩스( ) -			
(①부서명) (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 익명신고·보고**			
성별	□ 남 □ 여	가검물번호③	
확인진단일	년 월 일	확인검사 기관	□ ( )보건환경연구원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④의료(검진)관지정번호: ⑤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⑥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①, ②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③가검물번호는 "연도-지역번호-보건소(병원)월별-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08년, 서울, 중구보건소 1월, 검체번호 1인 경우 08-01-중구01-01)

④, ⑤란은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⑥란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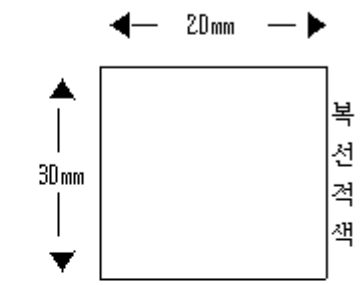
<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1. 익명으로 검진한 자가 인체면역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2.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이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3.19> (앞쪽)

제 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예방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6mm × 8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1. 이 증명을 소지한 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2. 이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9.5>

(앞쪽)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Certificate of HIV Test

검사 연월일

Date of HIV Test

성 명

Name in Full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or Passport No.

56㎜ × 80㎜[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함(검사결과: _____)

This is to certify that a serological test has been conducted f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AIDS Prevention Law. (The result of HIV test is _____)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3.26>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9.27>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⑦ 삭제<2011.6.7>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3(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

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2002.1.19]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1. 궐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 및 전자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2.1.19]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9.27]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8조(보고·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5.27>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삭제 <1999.2.5>

부칙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581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85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2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6619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2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제6983호,2003.9.2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04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690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6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의3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91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27호,2010.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1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1.1.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2.8]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2007.2.8]

제8조 삭제 <2002.2.25>

제9조 삭제 <2007.2.8>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3.15>

1.「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2.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제12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을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광고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제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개정 2001.6.30>)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2.8, 2008.2.29, 2008.12.3, 2008.12.31, 2009.4.17, 2010.1.27, 2010.3.15>

1.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광고를 같은 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개정 2007.2.8, 2008.12.31>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는 경고문구등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6.30, 2008.12.31>

④「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7.2.8, 2008.12.31>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고문구등의 표기가 없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2008.2.29, 2008.12.31, 2010.3.15>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02.2.25>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 삭제 <2002.2.25>

제25조 삭제 <2002.2.25>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2.12.30]

제27조의2(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8.2.29, 2010.3.15>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3(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개정 2010.9.20>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4(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5(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8조 삭제 <2007.2.8>

제29조 삭제 <2007.2.8>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2002.2.25>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4757호,1995.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조담배의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소매인영업소에 전시 또는 부착된 제조담배의 광고물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한다.

제29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7523호,2002.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3>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78호,20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제2호·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2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은 2010년도에 그 첫 시험을 실시한다.

부칙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별표 1]

광고의 기준(제10조제2항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가.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나.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5>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3]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별표 4] <개정 2010.3.15>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00050호, 2011.4.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군·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2.8, 2008.3.3, 2010.3.19>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2010.3.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5>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1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등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8.10.10>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5조(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함은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라 함은 판매부수 1만부이하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 기타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2005.7.28, 2006.4.25, 2008.10.10, 2009.8.12>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06.4.25, 2008.10.10>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실내작업장·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3.4.1]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1.4.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8.12.31]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4.25>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영 제20조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0.3.19>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2조(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제13조(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3. 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②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대상·세부내용·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영양지도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시·군·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3.4]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7.2.8]

제21조(지도·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0.3.19>

부칙 <제11호,1995.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영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류의 경고문구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85호,199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03.12.27>(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273호,2004.2.28>(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90호,200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05.7.28>(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제357호,200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08.10.1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09.8.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0.3.19>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뱃갑 앞·뒷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 고 면 적	표 준 규 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364 초과	112×25 초과
B4	257×364	112×25
A4	297×210	94×20
B5	257×182	80×17.5
A5	210×148	62×15
A5 미만	210×148 미만	62×15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 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뒷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9>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 7포인트 이상

(2) 용기의 용량이 30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 : 9포인트 이상

3. 색 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0.3.19>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제7조제4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가. 금연시설

(1)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시 설

(예시)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①스티커의 바탕은 회색으로 하고, 그 테·사선안의 색은 푸른색으로 하고,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으로 한다.

②글씨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며 글씨가 있는 공간의 바탕색은 회색으로 한다.

(2)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

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구 역

(예시)

(나) 스티커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다.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 연 구 역

(예시)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제과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만화대여업소 등의 영업장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0.3.19>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9> (앞쪽)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응시번호		※합격번호		합격연도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수령 주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직업 또는 종사기관			자격등급	( ) 1급 ( ) 2급 ( ) 3급

학 력					
최종 학력	구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대학원 졸업	. . .	. . .		
	대학 졸업	. . .	. . .		
	전문대학 졸업	. . .	. . .		

②보건교육 경력 (*2급 승급 신청자만 기재함)	부터	까지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발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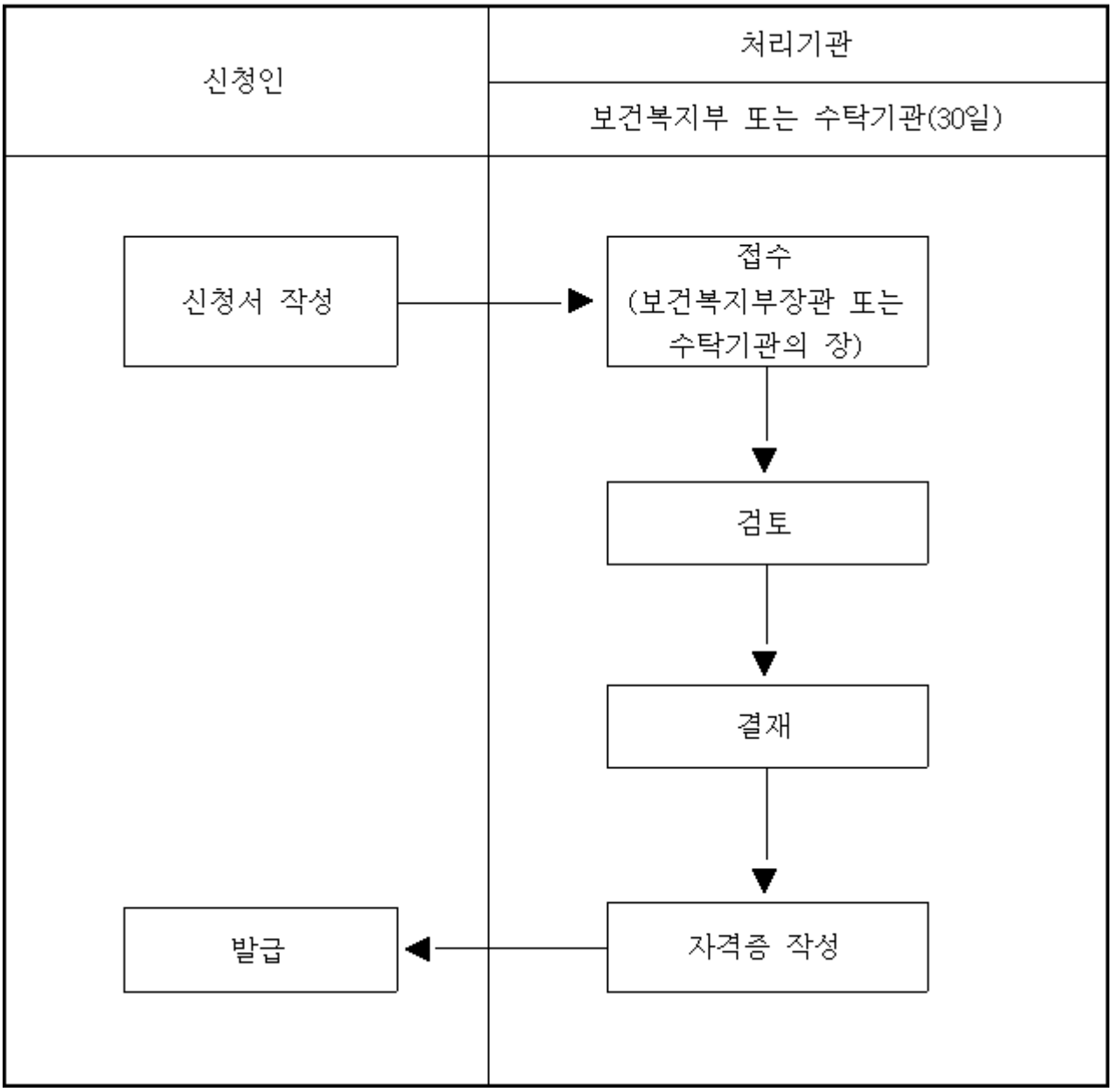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규 발급 신청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자 중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만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수령 주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자격등급		급		
발급번호		제 호	발급연월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만원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등급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담당자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사 진 3cm × 4cm (반명함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위와 같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비 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조사가구번호
제 호

국민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귀 가구가 년 국민영양조사 대상가구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 지 사

31310-01011일 128mm×210mm
95.8.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3.19>

국 민 영 양 조 사
(조사가구명단)

조사구번호 제 조사구
행정구역 시 구 동
도 시 읍(면)
군

가구 번호	대 상 가 구			통장 또는 이장	
	주 소	가구주성명	가구원수	주소(전화번호)	성 명

31310-01011일
95.8.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기재요령

1. 조사구번호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조사구번호를 기재함
2. 행 정 구 역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조사구의 행정구역을 기재함
3. 가 구 번 호 : 선정된 조사가구의 일련번호를 (1, 2, 3… 19, 20) 기재함
4. 주 소 : 시지역은 통·반 또는 리(마을)와 번지수, 군지역은 리(마을)와 번지수를 기재함
5. 성 명 :가구주명을 한글로 기재함
6. 가 구 원 수 :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수를 기재함
7. 통장·이장의 주소·성명 : 해당 가구를 관할하는 통장·이장의 주소(전화번호)·성명을 기재함

[서식 7] 삭제 <1998.11.6>

[별지 제8호서식]

위촉(임명)장

성 명

주 소(소속)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영양조사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 지 사

31310-01211일
95.8.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판 (2×3cm)
국민영양조사원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위 사람은 국민영양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 지 사

31310-01311일 64mm×91mm
95.8.30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m²)

[별지 제10호서식]

임 명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영양지도원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 지 사

31310-03311일
95.8.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3.19>

□담 배 제 조 업 자
□담배수입판매업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월분)

제출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및전화번호			

자 료 제 출 내 용

㉮품 명	㉯수 량 (20개비 1갑기준)	㉰납부금액 (단위 : 원)	㉱과오납금 (단위 : 원)	㉲부담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2.3.4> (1면)

발행번호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납부자	성 명·상 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국고계좌 : 189617

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직인

140mm×1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면)

발행번호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용)	납부기한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납부자	성 명·상 호		(세입징수관명)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국고계좌 : 189617
	납입자번호		
	주 소		
과 목			
납기내금액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 금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납기후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 직인 |

(3면)

발행번호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납부자	성 명·상 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국고계좌 : 189617

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영수인
( )우체국 |
( )출납공무원 |

(4면)

발행번호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기한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납부자	성 명·상 호 납입자번호 주 소		국고계좌 : 189617

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영수인 |
( )우체국 |
( )출납공무원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19> (앞 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관리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주소(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납부담보현황	납부담보총액 ⓐ	미납부산출금액 ⓑ	납부보증신청액 ⓒ	과 부 족 ⓐ-(ⓑ+ⓒ)	

납 부 담 보 보 증 신 청 내 용						
통 관 세 관 명						
구 분	⑥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판 매 가 격	⑩부담율	⑪부담금
⑫총 수 입	계					
⑬부과대상이 되는 담배의 수 입	계					
⑭ 부담금 면제대상 담배	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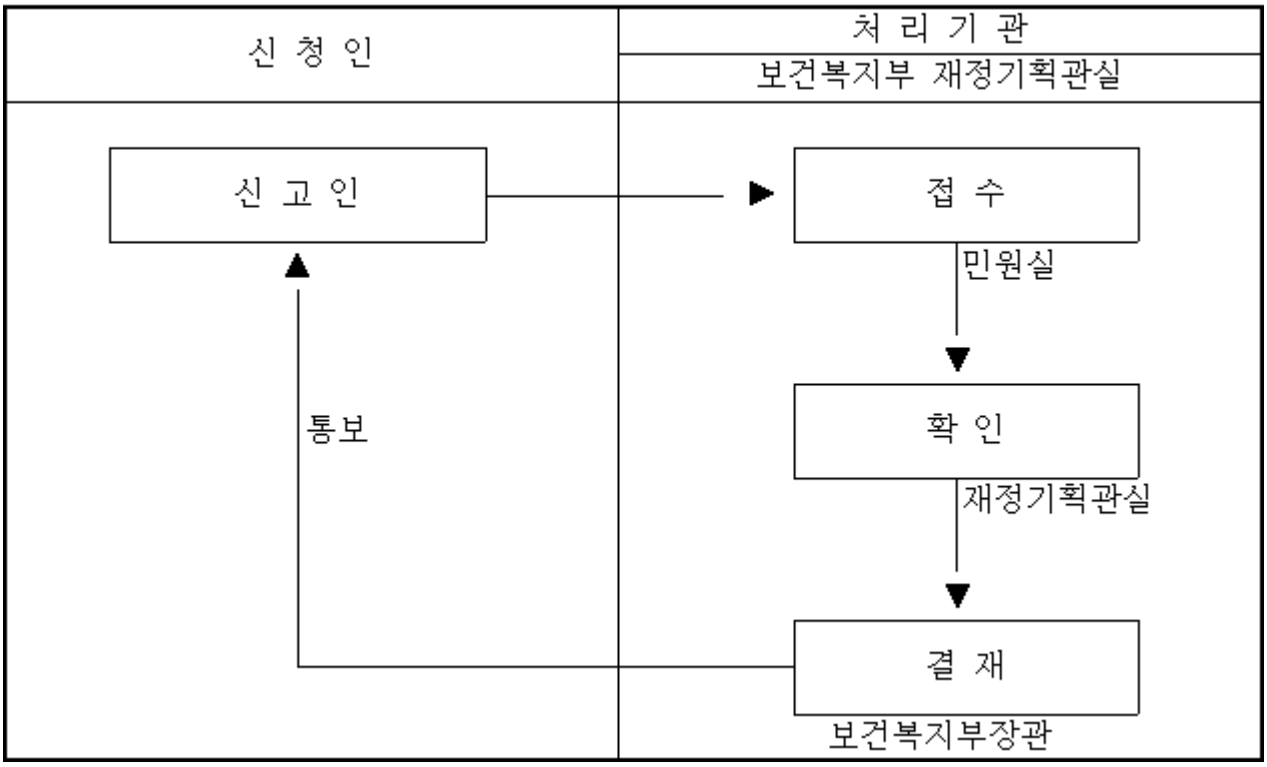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3.1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관리자)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 관 세 관 명				

⑦품 명	⑧규 격	⑨수 량	⑩판매가격	⑪부담율	⑫부담금액
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함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2. 지역보건법시행령
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0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①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삭제<1999.2.8>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2010.3.26>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조직) 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1>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4.12.30, 2008.2.29, 2010.1.18>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4.12.30]

제16조 삭제 <2004.12.30>

제17조(보건소등의 회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1999.2.8]

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04.12.30>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1999.2.8>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7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제5852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등에 관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건강진단등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와 승인신청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66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3호,2007.5.11>(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2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2> 까지 생략
<49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8조 전단, 제20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전단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91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④ 생략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개정 1999.8.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3.15>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소의 조직기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08.12.31, 2010.3.15>

②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2조(보건지소장) ①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3조(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전문인력등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전문인력등(이하 이 조에서 "임용희망자"라 한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희망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용희망자의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희망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

제17조(교육훈련의 대상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3주이상으로 한다.
2. 전문교육훈련은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8.7 >

제20조 삭제 <1999.8.7 >

제21조 삭제 <1999.8.7 >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

1.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진료
2.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법 제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5119호,1996.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외한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997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역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31>생략

부칙 <제16526호,1999.8.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6호,2007.10.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79호,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12.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3.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6.30>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그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9.8.9>

제5조(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조와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소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전문인력등의 배치)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보직후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시·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8조(전문인력등의 교류권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전문인력등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등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 전문인력등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희망자명부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이력서 1부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5.6.30]

제9조의3(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10조 삭제 <1999.8.9>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12조(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건소설치운영현황에 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부칙 <제45호,1997.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인력등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등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호,1999.8.9>

이 규칙은 199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69호,201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된 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4>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0.3.19>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제5조제1항관련)

구 분	업 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가. 국민건강증진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금연 및 절주운동(교육·홍보) (3) 담배자판기 설치 단속 (4)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5)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6)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7) 혼인전 건강확인의료기관의 지정 (8)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9) 건강상담 및 건강교실의 운영 (10) 보건소 이용주민의 개인별 건강상태 기록·유지
나. 보건교육	(1)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가)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나)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라)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자료요청
다. 구강건강	(1) 구강건강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3)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4)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6) 불소용액 양치사업
라. 영양개선사업	(1) 영양교육사업
	(가)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나)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영양교육
	(다)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유아·임산부·수유부·노인·환자 및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국민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가)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 실시
	(나)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5)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가. 법정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예방·관리	(1)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2) 법정전염병의 신고수리
	(3)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한 환자명부의 작성비치 및 상황보고
	(4)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에 관한 정기·임시 예방접종 실시
	(5) 예방접종의 공고
	(6) 예방접종의 유예 및 예방접종유예신고필증의 교부
	(7)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8)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9) 예방접종의 보고접수 및 보관
	(10) 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격리병사·격리소 설치
	(11) 제1종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소독소 설치
	(12) 제3종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진료소 설치
	(13) 제1종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장소의 지정

	(14) 제3종전염병환자중 격리수용환자의 범위지정
	(15) 제1종전염병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16)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17) 방역기동반의 편성·운영
	(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
	(나)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예측조사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
	(3)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발급
	(4) 감염자관리명부 작성·관리
다. 결핵관리	(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2) 결핵진료소와 결핵요양소의 설치
	(3) 정기건강진단 날짜 또는 기간의 지정
	(4) 예방접종의 공고
	(5)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6)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나.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1) 임산부의 산전관리·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산부의 사망·사산 및 신생아의 사망보고 접수
	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마.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예방접종 및 의료지원
4. 노인보건사업	가.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조치
	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라. 건강진단의 공고
	마.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1)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
	(2) 식품접객영업시설의 설치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6)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나. 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위생개선 지도	(1)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2) 위생접객업의 신고수리
	(3)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수리
	(4) 위생접객업의 휴업·폐업신고수리
	(5) 영업장소의 출입·검사
	(6)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명령
	(7) 시설·설비의 개수명령 및 폐기처분
	(8)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2) 공중이용시설의 검사 및 시정지시
	(3) 위생관리담당자의 지정·해제신고수리
	(4)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수리
	(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

	(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나.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3)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4)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다.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바.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사.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수리
	아.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 구급차의 운용
	나. 구급차의 운용신고수리
	다. 대량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라. 대량환자발생 및 활동상황보고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변경
	나.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다. 공중조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허가
	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보고
	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평가보고
	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사.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아. 보건진료원의 임용 및 근무지역 지정
	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의 선발
	차. 보건진료원의 면직
	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허가
	타.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보고

	파. 보건진료소의 업무지도·감독
	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지도·감독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약사에 관한 사항	(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수리 및 신고증교부
	(5)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6)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7) 의약품생산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8) 의약품의 폐기 또는 처치명령
	(9) 시설의 개수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
	(10) 약국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11) 약사감시원의 임명
나. 대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의 재배·생산·폐기 및 연구의 관리
	(3)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신고증교부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수리
	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마. 정신과의원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명령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아. 정신질환자의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입원조치의 해제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방문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진료 나. 치과진료 다. 한방진료 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장애인의 파악·관리 나.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

[별표 2]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1. 보건소 (단위 : 명)

구분 /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3	3	2	2	1	6
치과의사	1	1	1	1	1	1
한의사	-	-	-	1	1	1
조산사	(1)	(1)	(1)	(1)	(1)	(1)
간호사	18	14	10	14	10	23
약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양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의무기록사	-	-	-	-	-	1
위생사·위생시험사	(3)	(3)	(2)	(2)	(2)	(2)
정신보건 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비 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안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지소 (단위 : 명)

구 분	의 사	치과의사	간 호 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 건 지 소	1	1	3	1
통합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비 고 : 1.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의 인력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05.6.30>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제9조의3관련)

Ⅰ.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및 금연클리닉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2. 장비기준

가. 진료실 : 청진기, 청력 측정기, 진찰대, 혈압계, 심전도계, 내시경 및 방사선사진판독기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나. 진료지원실 :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수 제조기 및 자동현상기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장비

다. 보건사업실 : 방문진료세트, 시력측정기 및 색맹검사표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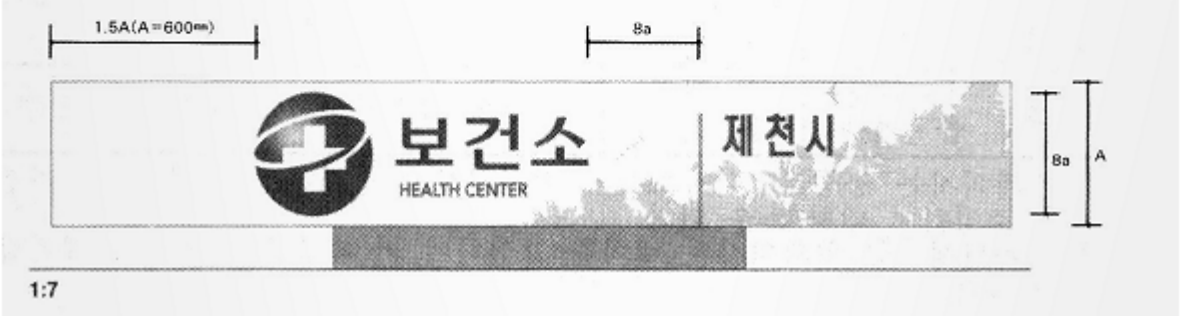
Ⅱ. 표시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표시는 심볼마크와 함께 해당 지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기관 심볼마크>



<표시 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6">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한글)
(한자)</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별</td><td></td><td>연 령</td><td></td><td>혼인
여부</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번호:)</td></tr>
<tr><td>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td><td></td><td>희망근무지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문인력 등의 임용희망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5">1. 이력서 1부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삭제 <1999.8.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16>

<table>
<tr><td colspan="7">건 강 진 단 등 신 고 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목적</td><td colspan="7"></td></tr>
<tr><td>일시</td><td colspan="2"></td><td>장 소</td><td colspan="3"></td></tr>
<tr><td>대상</td><td colspan="7"></td></tr>
<tr><td>내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기관(명칭)</td><td colspan="2"></td><td colspan="2">요양기관 기호</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6">(전화번호)</td></tr>
<tr><td>성 명
(대 표 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d>면허번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td></tr>
<tr><td>사용예정 인 원 수</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삭제 <1999.8.9>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3.16>

보건소설치운영현황

1. 인력현황

가. 보건소

(단위: 명)

<table>
<tr><td colspan="2">보 건 소 명</td><td colspan="2"></td><td colspan="2">보 건 소 장</td><td>성 명</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2"></td><td>직렬 및 직급</td><td></td></tr>
<tr><td colspan="2">구 분</td><td>정원</td><td>현원</td><td colspan="2">구 분</td><td>정원</td><td>현원</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 rowspan="3">물리치료사</td><td>의 료 기 술 직</td><td rowspan="3"></td><td></td></tr>
<tr><td colspan="2">(1) 면허·자격종별인력</td><td colspan="2"></td><td>보 건 직</td><td></td></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d>기 타</td><td></td></tr>
<tr><td rowspan="3">의사</td><td>의무직</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치과위생사</td><td>의료기술직</td><td rowspan="3"></td><td></td></tr>
<tr><td>공중보건의사</td><td></td><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치과의사</td><td>의무직</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영양사</td><td>식품위생직</td><td rowspan="3"></td><td></td></tr>
<tr><td>공중보건의사</td><td></td><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한의사</td><td>의무직</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간호조무사</td><td>보건직</td><td rowspan="3"></td><td></td></tr>
<tr><td>공중보건의사</td><td></td><td rowspan="2">기타</td><td></td></tr>
<tr><td>기타</td><td></td><td></td></tr>
<tr><td rowspan="3">조산사</td><td>간호직</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의무기록사</td><td>의료기술직</td><td rowspan="3"></td><td></td></tr>
<tr><td>보건직</td><td></td><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간호사</td><td>간호직</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위생사·위생시험사</td><td>식품위생직</td><td rowspan="3"></td><td></td></tr>
<tr><td>보건직</td><td></td><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약사</td><td>약무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정신보건전문요원</td><td rowspan="3"></td><td></td></tr>
<tr><td>보건직</td><td></td><td colspan="2">정보처리기(능)사</td><td></td></tr>
<tr><td>기타</td><td></td><td colspan="2">응급구조사</td><td></td></tr>
<tr><td rowspan="3">임상병리사</td><td>의료기술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4" rowspan="2">(2) 면허·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td></tr>
<tr><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 colspan="2">소계</td><td></td><td></td></tr>
<tr><td rowspan="3">방사선사</td><td>의료기술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보건직</td><td rowspan="3"></td><td></td></tr>
<tr><td>보건직</td><td></td><td colspan="2">행정직</td><td></td></tr>
<tr><td>기타</td><td></td><td colspan="2">기타</td><td></td></tr>
</table>

비고: 1. 기타는 별정직·전문직·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지소

(단위: 명)

<table>
<tr><td colspan="2">보 건 지 소 명</td><td colspan="2"></td><td colspan="2">보 건 지 소 장</td><td>성 명</td><td></td></tr>
<tr><td colspan="6"></td><td>직렬 및 직급</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구 분</td><td>정원</td><td>현원</td><td colspan="2">구 분</td><td>정원</td><td>현원</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1) 면허·자격종별 인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r>
<tr><td rowspan="3">의사</td><td>의무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공중보건의사</td><td></td></tr>
<tr><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치과의사</td><td>의무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공중보건의사</td><td></td></tr>
<tr><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간호사</td><td>간호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r>
<tr><td rowspan="3">치과 위생사</td><td>의료기술직</td><td rowspan="3"></td><td></td><td colspan="4" rowspan="3">(2) 면허·자격종별 인력 외의 인력</td></tr>
<tr><td>보건직</td><td></td></tr>
<tr><td>기타</td><td></td></tr>
<tr><td rowspan="2">간호 조무사</td><td>보건직</td><td rowspan="2"></td><td></td><td colspan="2">소계</td><td></td><td></td></tr>
<tr><td>기타</td><td></td><td colspan="2">보건직</td><td></td><td></td></tr>
<tr><td rowspan="3"></td><td></td><td rowspan="3"></td><td></td><td colspan="2">행정직</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rowspan="2">기타</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td></tr>
</table>

비 고: 1. 기타는 별정직·전문직·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등 면허·자격종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에는 동 인력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건지소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보 건 진 료 원			비 고
	면허종류	직렬 및 직급	성 명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시설현황 및 장비현황

가. 시설현황

(1) 보건소

보건소명	시설현황					모자보건센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건립연도	증·개축 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 규모 (㎡)	건립 연도	건물규모 (㎡)		

(2) 보건지소

보건지소명	시설현황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건립연도	증·개축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규모 (㎡)		

(3) 보건진료소

보건 진료소명	시설현황					설치 연월일	관할인 구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건립연도 (현재 사용중인 건물)	증·개 축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규모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장비현황

(1) 보건소

(보건소명:)

기능별분류	장 비 명	단위	수 량	규 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 고: 1. 기능별분류는 일반진료용·치과진료용·임상병리검사용·보건사업용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장비명은 영문표기도 함께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보건지소

(보건지소명:)

기능별분류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규 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 고: 보건지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기능별분류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규 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 고: 보건진료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진료실적 및 보건사업실적

가. 진료실적

(　　년 전·후반기, 명)

보건기관명 \ 진료실적		외 래	누 계	입 원	누 계	비 고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소 계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 건 지 소					
보건진료소	소 계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보 건 진 료 소					

비 고: 누계란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총 진료실적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사업실적

(　　년 전·후반기, 건)

보건기관명 \ 보건사업명								
계								
보건소								
보건지소	소계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비 고: 보건사업명에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
2.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0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기본 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5조(학교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7조(환경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8조(식품위생·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2조(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제615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고용노동부차관
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7. 국가보훈처차장

[전문개정 2010.5.27]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7]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7]

부칙 <제16925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부칙 <제1708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2001.1.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132>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14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3호,2005.10.2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9513호,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9호,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2008.12.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71호,2010.5.27>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차관

<66> 부터 <136> 까지 생략

혈액관리법

1. 혈액관리법
2. 혈액관리법 시행령
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 2011.4.28] [법률 제10611호, 2011.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0.1.18>

1. "혈액"이라 함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라 함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의2. "혈액원"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헌혈자"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적격혈액"이라 함은 채혈시 또는 채혈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4의2.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정수혈부작용"이라 함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
7. "헌혈환부예치금"이라 함은 헌혈자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채혈"이라 함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채혈부작용"이라 함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08.3.28]

제3조(혈액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헌혈권장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①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②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④혈액원은 헌혈자의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헌혈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⑥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헌혈자가 채혈부작용을 보이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헌혈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의 활용방안
3. 혈액수가의 조정
4.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1.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경험을 겸비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제목개정 2004.1.29]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1.12.29, 2008.2.29, 2010.1.18>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④혈액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7.4.11>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이 법에 의하여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6조의3(혈액제제제조관리자 등) ①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감독·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혈액원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혈액원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4.1.29]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②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2009.12.29, 2010.1.18>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3.28, 2010.1.1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8, 2010.1.18>

[제목개정 2008.3.28]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에 속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 채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30>

[본조신설 2008.3.28]

제8조(혈액의 안전성 확보)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08.3.28, 2010.1.18>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 삭제<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8.2.29, 2008.3.28,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8.3.28, 2010.1.18>

제8조의2(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4.1.29]

제9조(혈액의 관리 등) ①혈액원등은 채혈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②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안전 및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1.12.29]

[제목개정 2004.1.29]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발생원인의 파악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4.1.29]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8]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9, 2010.1.18>

[제목개정 2004.1.29]

제12조(기록의 작성등) ①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은 기록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채혈·검사 등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9>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①혈액원등은 헌혈자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이하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이라 한다)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혈액원등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혈액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혈액원등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제15조(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부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관리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관리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및 대한적십자사총재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1.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으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존업무
2. 헌혈자의 헌혈경력조회업무
3.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업무

[제목개정 2008.3.28]

제17조의2(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혈액원이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4. 혈액원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4.1.29]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8조(벌칙) 제3조,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제19조(벌칙)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면탈한 자

제21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3.28>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83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55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5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혈액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9> 까지 생략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3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87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30>

부칙 <제9387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4의2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7조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3항 후단·제4항, 제8조제2항 본문·제5항·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11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제3조(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1.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5.1.29, 2008.2.29, 2010.3.15>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⑧ 삭제<2005.1.29>

제5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1.30]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5.1.29]

제8조(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2009.1.30>

제9조(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①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0.11.15>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3.15>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의 보고 접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조성·관리업무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16241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2호,2005.1.29>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4>생략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6>내지 <241>생략

부칙 <제20679호,2008.2.2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9> 및 <80> 생략

부칙 <제21284호,2009.1.30>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제1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별 표] <개정 2009.3.15>

과태료부과기준(제11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혈액원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6조의2제2항	150만원
1의2.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8조제5항	150만원
1의3. 수혈부작용 발생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 10조제1항	200만원
2.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법 제 10조제2항	100만원
3.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자	법 제 13조제1항	150만원

비 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9.1] [보건복지부령 제00076호, 2011.8.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9>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1.30]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제4조(혈액관련의약품) 법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련의 약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혈액제제제조업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8.3.3, 2009.1.30, 2010.3.19>

제5조의2(시설·장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2.7.12]

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제제제조관리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의 의사면허증 사본(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원을 제외한다)
3. 혈액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부분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
4. 혈액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혈액사업계획서
6. 제조하고자 하는 혈액제제의 품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업무지침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신청 및 허가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혈액원개설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④법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3.6, 2008.3.3, 2010.3.19>

1. 혈액원의 명칭
2. 혈액원의 소재지
3. 제조관리자
4. 혈액제제 제조품목
5.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

⑤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혈액원개설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6>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혈액의 검사·혈액제제의 제조·보존 등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3.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
4. 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05.1.29]

제5조의5(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혈액원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법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가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미사용한 헌혈증서
3. 헌혈환부예치금 납부 관련 서류

③법 제6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자체 보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혈액원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5.1.29]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31>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혈액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⑥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11.8.31>

1. 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2. 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3. 진단일 또는 처방일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총재는 별표 1의2의 채혈금지대상자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를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혈액원은 별표 1의2 제5호에 따른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채혈금지기간이 지난 후 별표 4의2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로부터 채혈할 수 있다.<개정 2011.8.31>

③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자의 명단 및 검사결과 등을 별지 제1호의9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총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④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⑤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30]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①혈액원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혈액에 대한 에이엘티검사, 비(B)형간염검사, 씨(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한 혈액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3.6, 2008.3.3, 2010.3.19, 2011.8.31>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09.1.30>

③혈액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를 제외한다)를 헌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자가 적격으로 판정된 검사결과의 통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31>

제9조 삭제 <2007.3.6>

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처분 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7.3.6>

1. 부적격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할 것
2. 부적격혈액은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할 것

② 삭제<2005.1.29>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①혈액원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②혈액원등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제11조의2(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①혈액원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혈액정보를 채혈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헌혈자의 인적사항
2. 혈액 및 혈액제제 종류
3. 헌혈일자 및 헌혈증서번호
4. 혈액검사 결과

②혈액원은 제1항에 따라 혈액정보를 통보한 혈액을 공급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일 또는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혈액을 혈액제제로 제조하여 공급한 경우 : 혈액제제의 공급일자 및 공급처(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혈액이 부적격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처분한 경우 : 혈액제제의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전문개정 2007.3.6]

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 채혈업무
   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전에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을 제외한다)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
   라. 채혈은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백 또는 성분채혈키트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혈액제제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바. 삭제<2005.1.29>
2. 혈액제제의 보존업무
   가. 혈액제제의 보존온도·보존방법 및 보존기간등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보존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혈액제제의 부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이상이 없는 혈액제제를 보존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3. 혈액제제의 공급업무
   가. 혈액제제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공급하여야 한다.
   나.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업무: 혈액원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절차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5.1.29]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시·도지사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9.1.30>

1. 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2. 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3. 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4.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5.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등) ① 혈액원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소득
6. 위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1.30]

제14조(서류의 작성등) ①혈액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
2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록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
4. 삭제<2005.1.29>
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개정 2005.1.29, 2008.3.3, 2010.3.19>

제15조(헌혈증서의 교부) ①혈액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교부함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용지를 미리 혈액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 <개정 2005.1.29>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혈비용청구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혈자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은 수혈을 받은 자의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④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비용의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치금의 수납) ①대한적십자사총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당해혈액원이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을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받은 혈액원은 그 고지 금액을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예치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는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치금납부의 면제) ①혈액원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혈액(별표 1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에 한한다)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

자 하는 때에는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헌혈환부예치금납부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납부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혈액원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치금납부면제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0조 삭제 <2009.1.30>

부칙 <제116호,1999.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0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05.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문서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문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7호,2007.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혈액원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혈액제제의 제조품목 또는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혈액원이 최초로 채혈하는 헌혈자부터 적용한다.

④(혈액원 개설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5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부적격혈액의 폐기전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적격혈액을 보관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및 <94> 생략

부칙 <제90호,2009.1.3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2, 별표 1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76호,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8.31>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제2조 관련)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부적격기준
비(B)형간염검사	HBsAg 검사	양 성
씨(C)형간염검사	Anti-HCV 검사	양 성
	HCV 핵산증폭검사	양 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Anti-HIV 검사	양 성
	HIV 핵산증폭검사	양 성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Anti-HTLV-Ⅰ/Ⅱ	양 성
매독검사		양 성
간기능검사(ALT검사)		65 IU/L 이상
※ HBsAg, Anti-HCV, Anti-HIV, Anti-HTLV-Ⅰ/Ⅱ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의하여야 함		

비고: 위 검사항목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의 부적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제7조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6. 제12조제2호 가목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7.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별표 1의2] <개정 2011.8.31>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관련 요인

가. 전염병

1)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나. 그 밖의 질병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는 영구 금지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투여 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그 밖의 요인

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Ⅱ.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	기 준
320밀리리터 전혈채혈	1. 16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밀리리터 전혈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3.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한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4.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25만개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혈소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단위 적혈구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70킬로그램 미만인자 3.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4.0그램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4회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 또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비고: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별표 2] <개정 2007.3.6>

혈액관련의약품(제4조 관련)

1. 백혈구제거적혈구	10. 동결혈장
2.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11. 동결침전제제
3. 세척적혈구	12. 동결침전물제거혈장
4. 동결해동적혈구	13. 성분채혈적혈구
5. 농축백혈구	14. 성분채혈백혈구
6. 혈소판풍부혈장	15.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
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16. 성분채혈혈소판
8. 세척혈소판	17.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9. 신선액상혈장	18. 성분채혈혈장

[별표 2의2] <개정 2009.1.30>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

제제종류	보존온도	보존기간	비고
1. 전혈	1~6℃	CPDA 보존액 : 채혈 후 21일 CPDA-1 보존액 : 채혈 후 35일 ADD/M(SAG/M) 보존액 : 채혈 후 35일	
2. 농축적혈구	1~6℃	전혈과 동일	
3. 신선동결혈장	-18℃이하	채혈 후 1년	온탕융해후 3시간이내사용
4. 농축혈소판	20~24℃	제조 후 120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5. 백혈구제거적혈구	1~6℃	제조 후 24시간 폐쇄형은 전혈과 동일	
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1~6℃	폐쇄형여과는 전혈과 동일, 개방형여과는 제조 후 24시간	
7. 세척적혈구	1~6℃	제조 후 24시간	
8. 동결해동적혈구	-65℃ 이하 동결, 해동 후 1~6℃	제조 후 10년, 개방형은 세척 후 24시간, 폐쇄형은 세척 후 10일	
9. 농축백혈구	20~24℃	제조 후 24시간	
10. 혈소판풍부혈장	20~24℃	제조 후 120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1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20~24℃	폐쇄용 여과는 농축혈소판과 동일 개방형 여과는 제조 후 24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12. 세척혈소판	20~24℃	제조 후 4시간	
13. 신선액상혈장	1~6℃	제조 후 12시간	
14. 동결혈장	-18℃이하	채혈 후 1년	온탕융해후 3시간이내 사용
15. 동결침전제제	-18℃이하	채혈 후 1년	해동후 1시간이내 사용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18℃이하	채혈 후 1년	1~6℃인 경우 제조 후 24시간
17. 성분채혈적혈구	1~6℃	채혈 후 35일	혈액첨가제 사용시
18. 성분채혈백혈구	20~24℃	채혈 후 24시간	
19. 성분채혈혈소판백혈구	20~24℃	채혈 후 24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20. 성분채혈혈소판	20~24℃	제조 후 120시간	
21.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20~24℃	제조 후 120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22. 성분채혈혈장	-18℃이하	채혈 후 1년	

비고: 성분채혈혈장 등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보존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삭제 <2009.1.30>

[별표 4] <개정 2009.1.30>

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

1. 채혈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혈액원외의 장소에서 채혈하는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시 설	장 비	비 고
대기실 또는 휴식실	의자 또는 침대	채혈실, 건강진단실과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실	가. 청진기(자동혈압계 사용시 제외) 나. 체중계 다. 혈압계 라. 체온계 마. 빈혈검사용기구 또는 기기(유산등법에 의한 혈액비중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바. 혈소판수검사용기기(혈소판성분헌혈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과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조회장비	1. 채혈실과 겸용할 수 있다. 2. 문진 시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혈소판수검사용기기는 혈액원 건물 내(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채 혈 실	가. 침대 나. 봉합기 다. 혈액성분채혈기(성분헌혈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전혈혼합기(전혈채혈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혈액전용 냉장고 바. 혈액전용 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혈액중량측정용저울(제제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차량에서의 채혈 또는 방문채혈 시 혈액제제별 보존온도유지 용기와 냉매재를 사용하는 경우 혈액전용냉장고 또는 혈액전용냉동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혈액제제 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시 설	장 비	비 고
검 사 실	가. 검체용원심분리기 나. 생화학검사기기(ALT검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혈장성분채혈을 하는 혈액원은 총단백 검사도 가능하여야 한다.) 다. B형간염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검사기기 라. C형간염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 핵산증폭검사장비 마.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 핵산증폭검사장비	가. 핵산증폭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핵산증폭검사장비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단의학검사실을 검사실로 겸용할 수 있다. 다. 핵산증폭검사만을 수행하는 혈액원의 경우 해당 장비만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 매독검사기기 또는 기구 사. 혈액형검사기구(현청형혈액검사를 포함한다) 및 현미경 아. 시약전용냉장고	라.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는 이와 동등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시 설	장 비	비 고
제 제 실	가. 혈액중량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나. 혈액전용냉장고 다.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라.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및 혈장추출기(전혈로부터 성분분리하여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마. 급속동결기(신선동결혈장, 동결해동적혈구등을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바.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	1. 공급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실을 제제실로 겸용할 수 있다. 2. 혈액전용냉장고 및 혈액전용냉동고는 채혈실 또는 공급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경우 급속동결기는 혈액전용냉동고를 겸용할 수 있다.

4. 혈액제제 보존·공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시 설	장 비	비 고
보존·공급실	가. 혈액전용냉장고 나.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다. 혈소판교반기(혈소판이 포함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라. 현미경 및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검사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으며, 교차적합성검사를 하지 않는 혈액원은 해당하지 않음) 마. 전기항온수조기(신선동결혈장을 해동하여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바. 보존온도 유지장치 사. 유지온도 기록장치	제제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제실을 공급실로 겸용할 수 있다. 혈액전용냉장고 및 혈액전용냉동고는 채혈실 또는 제제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별표 4의2] <개정 2011.8.31>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

<table>
<tr><th>부적격 요인</th><th>안전성 검사 방법</th><th>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th></tr>
<tr><td rowspan="3">비(B)형간염</td><td>HBsAg</td><td rowspan="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모두 음성일 것
2. Anti-HBc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완치 후 6개월 경과
나. HBsAg 검사 결과 및 HBV 핵산증폭검사(PCR 포함) 결과가 음성일 것
다. Anti-HBs의 추가 검사결과 100mIU/mL 이상일 것</td></tr>
<tr><td>Anti-HBc</td></tr>
<tr><td>HB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td></tr>
<tr><td rowspan="3">씨(C)형간염</td><td>Anti-HCV</td><td rowspan="6">모두 음성일 것</td></tr>
<tr><td>RIBA</td></tr>
<tr><td>HC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td></tr>
<tr><td>인체티(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감염증(혈장성 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td><td>Anti-HTLV-Ⅰ/Ⅱ</td></tr>
<tr><td rowspan="3">후천성면역결핍증</td><td>Anti-HIV</td></tr>
<tr><td>Western Blot</td></tr>
<tr><td>HI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td></tr>
</table>

비고

1. HBsAg, Anti-HBc, Anti-HCV, Anti-HIV 및 Anti-HTLV-Ⅰ/Ⅱ의 검사는 효소면역

측정법(EIA)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위 검사 방법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5] <개정 2009.1.30>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2009.1.30>

나.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와 냉매제를 갖출 것

다. 혈액제제 보존용기 내의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

3. 그 밖의 기준

혈액공급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9>

혈액원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개설자)	명 칭			
	소 재 지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개설자	성 명:	(생년월일	
혈액원	명 칭			
	소 재 지	(전화:		
	혈액원장	성 명:	(생년월일	
제조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개설 예정일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수수료 없음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혈액제제제조관리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혈액관리법」 제17조의3에 따라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혈액원을 제외합니다)
다. 혈액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
라. 혈액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마. 혈액사업계획서 1부
바. 제조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혈액제제 품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사. 업무지침서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혈액원 명칭·소재지 또는 혈액제제제조관리자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부속 채혈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평면도와 구조설명서, 부속 채혈시설의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부속채혈시설 운영계획서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5.1.29>

혈액원개설신청 및 허가대장

허가번호	혈액원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개 설 자 (생년월일)	제 조 관 리 자 (의사면허번호)	소재지	구 분			처 리 현 황		비고
						신규	재교부	재교부 사 유	신청일	교부일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3.19>

(앞 쪽)

제 호

혈액원 개설허가증

혈액원 명칭		
소 재 지		
개설자	성 명	
	생 년 월 일	
혈액원장	성 명	
	생 년 월 일	
제조관리자	성 명	
	생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혈액제제 제조품목		
혈액제제 공급품목		
부속 채혈시설 현황 ※명칭, 소재지는 뒤쪽 기재	( )개소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부속채혈시설(헌혈의집, 헌혈카페 등) 현황			
명 칭	소재지		
변경사항 등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4">혈액원개설허가증 재교부신청서</td><td>처리기간
5일</td></tr>
<tr><td rowspan="4">혈액원</td><td>허 가 번 호</td><td></td><td>허 가 일</td><td></td></tr>
<tr><td>명 칭</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3">(성 명)
(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재 교 부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개설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_____(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혈액원개설허가증(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4">□휴 업
혈액원 □폐 업 신고서
□재개업</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7">혈
액
원</td><td colspan="2">허 가 번 호</td><td>개 설 일</td><td></td></tr>
<tr><td colspan="2">명 칭</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휴 업 기 간</td><td colspan="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폐 업 일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재 개 업 일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휴·폐 업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혈액관리법」 제6조의4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_____(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혈액원개설허가증(휴·폐업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10.3.19>

<table>
<tr><td colspan="5">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td></tr>
<tr><td>개설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혈액원</td><td>명 칭</td><td></td><td>허 가 일</td><td></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기 록
보 관</td><td>보 관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보 관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보관책임자</td><td colspan="3"></td></tr>
</table>

「혈액관리법」 제6조의4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관리업무기록 보관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_____(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혈액관리업무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07.3.6>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 혈액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혈액원장 성명				
헌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의 조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_____혈액원장 (인)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조회결과 통보서

1. 과거 헌혈경력조회결과	□유 □무				
	최근 헌혈일자 : 년 월 일	최근 헌혈종류 :			
2. 과거 헌혈당시 혈액검사결과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검사결과	□ 적격 □ 부적격 □ 판정불가				
3. 최근 헌혈당시 혈액검사결과 ※필요시 제공할 수 있다	ALT	말라리아항체	비예기항체(ABS)	ABO아형	총단백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인)

_____혈액원장 귀 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8서식] <신설 2009.1.30>

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채혈금지사유	채혈금지기간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개정 2011.8.31>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및 헌혈유보군 해제 요청서

(앞 쪽)

요청 혈액원	혈액원 명칭			
	소재지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연락처	(전화)	(팩스)	
헌혈자	성 명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	
	주 소			

안전성 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검사일	해제가능 여부 (※대한적십자사 기재)
HBV	HBsAg			
	Anti-HBc			
	HB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			
HCV	Anti-HCV			
	RIBA			
	HC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			
HIV	Anti-HIV			
	Western Blot			
	HIV 핵산증폭검사 (PCR 포함)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Anti-HTLV-Ⅰ/Ⅱ			

「혈액관리법」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하고, 헌혈유보군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혈 액 원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검사결과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11.8.31>

헌혈유보사유 조회 신청서

신청인 (헌혈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헌혈유보 사유 등의 조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통보기관 :

문서번호 :

헌혈유보사유 안내문

1. 채혈금지 사유	□ 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부적격 ( ) □ 문진 부적격 [□ 감염병 경력 □ 약물 복용력 □ 기타 ( )] □ 건강진단 부적격 ( )
2. 채혈금지 기간	□ 영구 □ 일정기간 (년 월 일까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 헌혈자의 헌혈유보 사유 조회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안내문 통보
신청인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삭제 <2005.1.29>

[서식 3] 삭제 <2005.1.29>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부적격혈액처리현황

제출기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부적격혈액처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혈액제제별 부적격 혈액건수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혈장	농축 혈소판	…	…	계
응고, 오염							
혈액선별검사결과 이상							
혼탁, 변색, 용혈							
채혈금지대상자 채혈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 파손							
보존기간 경과							
기타(사유기재)							
계							

부적격 혈액 처리현황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혈장	농축 혈소판	…	…	계
폐기							
예방접종약 및 진단시약 원료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품질관리시험							
계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7.3.6>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

혈액원	명 칭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헌혈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혈액형		
전화번호	휴대폰 :	직장 :	자택 :		
헌혈종류		헌혈일시		헌혈증서번호	
헌혈혈액검사결과					
Anti-HIV 검사			HIV 핵산증폭검사		
Anti-HCV 검사			HCV 핵산증폭검사		
HBsAg 검사			매독 검사		
간기능검사(ALT)			기 타		

혈액제제 제조·공급·폐기 현황

혈액제제명	제조일자	공급일자	공급처	폐기일자	폐기사유

※ 자체소비를 위한 공급현황 포함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헌혈자의 혈액정보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 혈액원장 인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1.30>

[서식 6] 삭제 <2005.1.29>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3.6>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공급혈액원	명 칭			
	주 소			
	혈액원장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운송방법	□혈액원 직접운송		□위탁운송(버스, 택배)	
	□의료기관 직접수령		□기타( )	
운송기관(업체)	명 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령의료기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혈액제제 공급내역

일련번호	혈액번호	혈액제제명	혈액용량	혈액형	공급가격(원)	비고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혈액제제의 운송·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출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수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혈액원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운송자 :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30>

※ 칸 부족 또는 추가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

신고 의료기관	명 칭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및 소속							
	연락처	전화)			팩스)			
수혈자 정보	성 명			혈액형(ABO/Rh)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내원당시 질환명			수혈의료기관명				
수혈전 검사결과 (ALT 값, 음성, 양성 또는 미실시 기재)	검사항목	ALT	HBsAg	anti-HBc	anti-HCV	HCV-RNA	anti-HIV	매독(VDRL)
	검사년월일							
	검사결과							
수혈 혈액제제 총( )개	혈액번호							
	혈액제제명							
	수혈년월일							
특정 수혈 부작용	부작용명			진단일자				
	비 고							

수혈부작용 진단검사결과 (항체, 항원 및 유전자 검사 등 해당 질환 진단검사 실시항목)	검사항목	검사결과 (음성 또는 양성)	검사일자 (년월일)	진단(검사) 의료기관명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료기관장 인

보건소장 귀하

※ 첨부 서류: 수혈전 검사기록지 사본, 특정수혈부작용 진단 검사기록지 사본, 치료력 의무기록 사본, 수혈 혈액번호 의무기록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1.29>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을 보고합니다.

일련 번호	수혈부작용 접수일시 (연·월·일)	부작용종류	의료기관명	발 생 일 시 (연·월·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각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사본 1부. 끝.

보고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30>

(앞쪽)

헌 혈 증 서

증서번호	

성 명 :　　헌혈종류 :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귀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헌혈일자 :

혈액원명 :

대한적십자사총재 직인

54mm×86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헌혈 증서 활용 안내

1. 수혈받은 사람이 진료비 계산 시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 「혈액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이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헌혈하신 혈액이 수혈자에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혈액원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원 전화번호 :

54mm×86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수 혈 비 용 청 구 서

의료기관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무상수혈인원		무상수혈량(ml)	수혈비용	청구금액	헌혈증서매수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 소지자에 대한 수혈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부 : 1. 헌혈증서 매
2. 수혈자내역서 부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31312-06311일
99.4.13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30>

수 혈 자 내 역 서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수혈일자 (연월일)	혈액명	무상수혈량	헌혈증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31312-29511일

99.4.13 개정승인

297㎜×210㎜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원 부

제 호 년도			
혈액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헌혈환부예치금 년 월분			
헌혈환부 예치금 내역	예치금 총 액	납 부 면제액	납 입 고지액
	원	원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총재 ㊞			

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			
혈액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헌혈환부예치금 년 월분			
헌혈환부 예치금 내역	예치금 총 액	납 부 면제액	납 입 고지액
	원	원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총재 ㊞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혈액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헌혈환부예치금 년 월분			
헌혈환부 예치금 내역	예치금 총 액	납 부 면제액	납 입 고지액
	원	원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혈액원	명 칭		
	주 소		
	대표자		
헌혈환부예치금 년 월분			
헌혈환부 예치금 내역	예치금 총 액	납 부 면제액	납 입 고지액
	원	원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의 장 ㊞			

31312-06411일
99.4.13 개정승인

95㎜×190㎜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4호서식]

헌혈환부예치금납부면제신청서

면제신청금액 : 금 원정(₩)

헌혈증서번호 헌 혈 번 호	헌혈연월일	헌혈자의 성명	부적격혈액 이송연월일	부적격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헌혈환부예치금의 납부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혈액원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총재 귀하

31312-06611일

99.4.13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보건의료관계법규   (2011.10.28)

제 작 자 : 조인준
기관/부서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메일주소 : bradho@naver.com
제작일자 : 2013.1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